

월간  
**재정포럼** 4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7년 4월호 제130호

**현안분석** ·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 비교/ 김진수  
소득이동성과 빈곤의 관계/ 성명재

**정책토론티포트** · **한·중 국제심포지엄**  
금융제도 및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제도

**정책연구** ·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외

**정책흐름** ·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b>권두칼럼</b>	02 예산과정과 예산정치 · 신해룡
<b>현안분석</b>	06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 비교 · 김진수 28 소득이동성과 빈곤의 관계 · 성명재
<b>정책토론티포트</b>	43 금융제도 및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제도
<b>정책연구</b>	67 기업인수 · 합병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 · 이준규 72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김현숙 · 성명재 76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수 · 류덕현 79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김완석
<b>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b>	82 영국, 소득 · 법인세 2%p 인하 외
<b>정책흐름</b>	99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 107 한 · 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115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b>재정통계</b>	120 OECD 국가의 소비세 비중 II
<b>이런의견 저런생각</b>	124 시장실패적 현상과 정부정책의 색깔 외

# 예산과정과 예산정치



**신해룡**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일찍이 골드사이드(R. Goldscheid)는 “국가 기능은 재정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적 장식을 견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라고 갈파한 있으며, 콤(B. Colm)은 예산을 일컬어 “공공경제의 중추신경(nerve center)”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예산은 일관되고 포괄적이며 명료하게 국가정책의 방향을 반영하여야 하고,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으로 표현되는 ‘정책형성’에서부터 집행과 사후평가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그 속에서 예산과 정책은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정치는 예산과정 속에서 재정규모의 적절성 등 예산논쟁과 재정개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실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산과정은 그 같은 예산정치가 논의되고 구체화되는 장(場)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적지않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기업부문은 국제기준의 도입과 경영방식의 일대 전환으로 재무구조가 상당 수준 개선되었다. 그러나 가계부문은 양극화의 진행 속에 일자리 부족과 금리상승 등으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성장잠재력의 저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되는 여건 속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

정지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인해 사회지출이 급격히 증대하는 등 재정운용의 경직성은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예산은 남용·오용 요인을 제거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 비해서도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고히 견지되어야 하고, 예산정치는 재정운용의 목표들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그 진가가 마땅히 발휘되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각되는 예산논쟁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정도가 나라살림의 규모로서 적정한가 하는 규모에 관한 논쟁이다. 둘째, 작은 규모의 예산을 실현하는 작은 정부인지 예산확대를 추진하는 큰 정부인지, 즉 정부 형태에 관한 논쟁이다. 셋째, 지출 구성이 제대로 짜임새가 있는지, 특히 방위비와 경직성 경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의 예산구조에 관한 논쟁이다. 넷째, 예산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인지 공약 위주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지의 정치성 예산에 관한 논쟁이다. 다섯째, 과도한 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킬 소지는 없는지 또는 자원조달을 위한 세입 확보에는 차질이 없는지의 세수에 관한 논쟁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재 소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예산사업으

.....

정부예산은 남용·오용 요인을 제거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 비해서도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고히 견지되어야 하고, 예산정치는 재정 운용의 목표들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그 진가가 마땅히 발휘되어야만 한다.

.....

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만 받으려고 하는지의 무임승차(권리의식·비용의식)에 관한 논쟁이다.

이는 결국 재정규모·운용방향과 예산의 성격 및 세수의 적정성에 관련된 것으로서 국가경제 여건에 상응한 효율적인 예산인지 등에 관한 논쟁을 통해 예산과정 및 예산정치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최근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4대 재정개혁을 추진했고, 이어 「국가재정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재정운용시스템을 재정립하였다. 「국가재정법」은 종전의 「예산회계법」에 비해 중기재정운용계획의 구체적 수립,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재정사업 성과관리, 프로그램예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결산의 조기 국회 제출, 국가채무관리계획 및 국가채무관리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 주요 특징적 사안을 새롭게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국가재정법」은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효율성·투명성·건전성을 전제로 엄격한 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정치의 대상을 확대하고 동시에 이를 구체화 시키고 있다.

그 결과 예상되는 예산과정과 예산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안 편성지침의 국회 보고’이다. 이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명시를 포함하여 예산총량 및 자원배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연계가 된다. 둘째, ‘총액계상 예산사업 세부시행계획 및

실적의 국회 제출’이다. 종전에는 동 사업이 예산집행에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받는 대신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고 내역이 구체화되지 않아 시행에 제약을 받았으나 「국가재정법」은 이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의 단계별 편성’이다. 이는 사업 시행을 위한 연도별 예산편성을 의미하는바, 예산심의시에도 그에 상응한 단계별 검토와 집행조사 등이 필요하다. 넷째, ‘독립기관의 예산편성시 기관장 의견의 최대한 존중’이다. 이는 예산심의시 재정상황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독립기관의 업무수행 특성도 함께 고려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7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여러 제도에 대해 예·결산심사 차원에서의 사전 숙지작업 등 철저한 대비이다.

아울러 제도 측면을 중심으로 한 ‘바람직한 예산정치의 구현 차원’에서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재정운용계획 심의와 관련된 사전예산(pre-budget)제도이다. 향후 중기재정운용의 기초가 되는 분야별 지출의 우선순위 및 지출한도 등에 대해 공개적인 국회 논의를 통해 계획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정개혁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기준선 추계와 ‘정책의 예산효과 측정기

.....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예산과정에서의 예산안 및 결산심사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춰 사후평가·점검을 중심으로 충실히 이행되고 제도개혁이 예산과정의 운영방식과 틀 형성에 근간으로 작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수행될 때 기대할 수 있다.

.....

법’(scorekeeping)이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매년 상정되는 모든 세출·세입 법안을 검토하여 예산결의안이 설정한 한도 내에서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법률과 정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연방예산의 수입·지출에 대한 추정치를 산정하고 여러 정책대안들을 비교하여 선정하기 위해 기준선(baselines)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프로그램예산과 포트폴리오 예산편성이 다. 이는 프로그램 수준에서의 성과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성과목표와 단위사업의 기대성과·위험을 동시에 반영하는 전략체계도(strategy map)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단위사업들의 연관관계

를 파악하여 성과목표 달성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는 단위사업의 조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칸스키(I. Sharkansky)는 “만약 돈이 정부를 움직이는 혈액이라면, 예산과정은 사람 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고 주창한 바 있다. 결국 예산 정치의 바람직한 결과는 예산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예산과정에서의 예산안 및 결산심사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춰 사후평가·점검을 중심으로 충실히 이행되고 제도개혁이 예산과정의 운영방식과 틀 형성에 근간으로 작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수행될 때 기대할 수 있다. KIP

# | 현안분석 |

-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 비교  
김진수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소득이동성과 빈곤의 관계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자 주)



#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 비교 :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중심으로<sup>1)</sup>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jinskim@kipf.re.kr)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은 다양한 방법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I. 서론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를 차감하고 남은 순이익은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미래성장을 위한 사내유보금으로 나누는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이 경영활동의 결과로부터 얻은 순이익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게 되면 그 배당금이 주주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즉, 법인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 단계에서 과세를 하고 나머지 소득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자에게 배당이 된 후 그 소득에 대해서 출자자 단계에서 또 다시 과세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와 출자자 단계에서 두 번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되고 있다<sup>2)</sup>. 첫째, 개인 투자자로 하여금 기업 이외의 부문에 투자하게 한다. 둘째,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주지만 배당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주지 않으므로 기업이 자기자본보다 부채에 의존하게 한다. 셋째, 기업이 이익을 배당하기보다는 사내유보하는 것을 선호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은 다양한 방법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 이 원고는 김진수(2004)의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2) Warren(2005).

우리나라의 세법은 법인실제설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조정해 주려는 입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임퓨테이션(imputation) 방식의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는 익금불산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법인의 출자자 개인의 입장에서 본 이중과세 문제이다. 출자자가 분배받은 배당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이미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소득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인 것이다. 둘째, 기업 전체의 입장에서 본 이중과세 문제이다. 기업의 출자자는 동일한 사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는 한번 과세되지만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는 두 번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만일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업 형태 선택의 왜곡, 과다한 타인자본조달, 배당정책의 왜곡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세제하에서 동일한 사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와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 차이를 추정해 봄으로써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법인원천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배당을 받은 출자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법인의 본질에 대한 민법상의 견해로서의 법인의제설과 경제적 관점에 따른 통합과세론에 논거를 두고 있다.

## II.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 1.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에 관한 이론

법인원천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배당을 받은 출자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법인의 본질에 대한 민법상의 견해로서의 법인의제설과 경제적 관점에 따른 통합과세론에 논거를 두고 있다. 법인의제설은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하며, 자연인 이외의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힘에 의하여 법인을 자연인에 의제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sup>3)</sup>. 법인의 본질은 주주의 집합체이므로 법인의 소득은 각각 주주의 귀속이익이 되며, 따라서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는 법인세는 개인 단계에서 납부해야 할 주주의 소득세를 법인 단계에서 선납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세법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조세채무자

3) 최명근(1998).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는 법인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는 법학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기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인 것은 분명하나, 경제적으로는 조세의 부담자는 주주인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단계에서 과세하고 나머지 소득이 주주에게 분배된 때에 그 배당에 대하여 다시 과세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중과세되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 따른 통합과세론은 이중과세의 조정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통합과세론의 기본이 되는 이론은 법인의 도관이론(conduit theory)이다. 법인은 도관에 불과하므로 모든 소득은 개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법인원천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배당을 받은 출자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주장은 법인의 본질에 대한 민법상 견해로서의 법인실재설과 경제적 관점에 따른 독립과세론에 논거를 두고 있다.

법인실재설은 법인이 그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로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라는 시각이다<sup>4)</sup>.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인 이상 법인의 소득은 주주와는 관계없는 법인 자체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독자적인 담세력을 인정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 차감 후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자금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배당은 법인과 별개의 인격체인 주주의 소득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 따른 독립과세론은 법인원천에 대한 독립과세를 정당하다고 보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sup>5)</sup>.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법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특권, 특히 유한 책임의 이익은 법인 기업에 부가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둘째, 법인세 세율이 개인소득세 세율보다 낮고 법인의 유보이익을 개인소득세 과세를 위해 주주 등 개인들에게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과세상의 공평을 위해 법인의 이윤에 부가적인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셋째, 개인소득에 대해서 보다 법인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 등으로 세부담을 높게 과세하는 것은 세수를 증가시키는 편리한 방법이다.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는 법인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는 법학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기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로 인해 기업 형태 선택의 왜곡, 과도한 타인자본조달, 배당정책의 왜곡 등이 발생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

4) 최명근(1998).

5) Meade(1987).

## 2.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완전통합방법(full integration)과 부분통합방법(partial integration)으로 대별된다. 완전통합방법은 법인단계에서 부담하는 법인세와 주주단계에서 부담하는 소득세를 완전히 통합하는 방법으로서 배당소득뿐 아니라 사내유보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며, 부분통합방법은 법인단계 또는 출자자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만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은 <표 1>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완전통합방법과 부분통합방법으로 대별된다.

<표 1> 이중과세 조정방법

		조정방법	장점	단점
완전 통합 방법	조합과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의 구성원인 출자자를 공동사업의 조합원으로 봄</li> <li>각 출자자에게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법인유보이율을 포함한 법인의 총소득을 귀속·할당시켜 출자자 단계에서 소득세만을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 완전 해결</li> <li>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상이한 소득원천 간 조세부담의 불공평 해소</li> <li>법인원천소득 중 배당뿐 아니라 사내유보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세부담을 부과함으로써 배당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자자에게 배당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li> <li>대규모 기업에 적용하기가 어려우며, 엄청난 행정비용이 따름</li> <li>배당이 촉진됨에 따라 민간의 저축을 감소시키고 자본축적을 저하시킬 수 있음</li> </ul>
	자본이득 과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소득 중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개별출자자 단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미분배 소득인 법인유보에 대해서는 주기상승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전액 출자자 단계에서 소득세를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소득 중 배당분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li> <li>유보이익에 대해 어떤 단계에서든 한번의 과세로써 이중과세문제 완전 해결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이득을 발생 단계에서 과세하기 어려움</li> <li>자본이득을 발생 단계에서 과세해야 이론적으로는 완전통합의 방법이 되지만 실제로는 자본이득을 매각 단계에서 과세하게 됨.</li> </ul>
부분 통합 방법	지급배당 공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당을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이라고 간주하여 법인원천소득 중 배당분은 법인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처럼 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매우 간편하게 해결</li> <li>타인자본의 이자와 자기자본의 배당에 대해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타인자본 의존경쟁에서 탈피하도록 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이 이 제도를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편으로 활용할 가능성</li> <li>배당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상법과 기업회계에 정면으로 배치</li> </ul>

〈표 1〉의 계속

		조정방법	장점	단점
부분 통합 방법	지급배당 경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원천소득 중 사내유보분에 대해서는 높은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배당분에 대해서는 낮은 법인세 세율을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보분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법인이 과도하게 유보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li> <li>배당분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당소득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되지 않음</li> <li>만일 높은 세율로 과세된 유보소득이 나중에 실제로 배당되는 경우 과세문제가 복잡하게 됨.</li> </ul>
	입류 테이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자자가 수령한 배당과 그 배당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부과된 법인세액을 개인의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후 산출세액으로부터 법인단계에서 그 배당분에 대해 지불한 귀속세액을 세액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중과세의 조정이 출자자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편으로 이중과세의 조정제도를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li> <li>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로 출자자의 배당에 대한 법인세부담의 과중감을 제거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음</li> <li>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주주의 소득세를 예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보이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정도 없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야기할 수 있음</li> <li>기업에 직접적인 세제상의 이익이 귀속되지 않으므로 배당성향을 높히려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타인자본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없음.</li> <li>법인세율보다 높은 한계소득세율에 적용되는 출자자의 경우에는 수입배당 미신고에 의한 조세부담 회피의 유인이 생길 수 있음.</li> </ul>
	수입배당 공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원천소득에서 배당된 금액이 출자자의 개인과 과세소득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 출자자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수입배당금의 전액을 공제하거나 수입배당금의 일부를 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당소득의 이중과세문제가 매우 간편하게 해결됨</li> <li>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배당금의 일정비율을 정함으로써 이중과세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당분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때문에 사내유보분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있음</li> <li>기업에 직접적인 세제상의 이익이 귀속되지 않으므로 배당성향을 높히려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타인자본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없음</li> </ul>
	수입배당 세액공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원천소득에서 배당된 금액이 출자자의 개인과 과세소득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 출자자의 소득세액에서 과세소득에 합산된 배당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세액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당소득의 이중과세문제가 매우 간편하게 해결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당분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때문에 사내유보분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있음</li> <li>배당세액공제율이 출자자의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은 때에는 출자자가 받는 배당을 신고하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생김</li> </ul>

자료: 김진수(2004)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작성.

### 3.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 가.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제도

현행 소득세법상의 배당세액공제제도는 임퓨테이션방법으로서 이중과세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 배당금과 관련하여 이미 법인단계에서 부담하였다고 보는 법인세액을 배당가산액(gross-up금액)이라고 하며, 법인세율(고세율 25%, 저세율 13%) 중 저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구한 15%의 gross-up비율을 소득금액에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배당세액공제제도에 의하면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소득세액} = (\text{배당소득} + \text{배당소득} \times 15\% + \text{다른종합소득}) \times \text{소득세율} - \text{배당소득} \times 15\%$$

이에 따라 저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반면, 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개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1998년 이후 시행이 유보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면서 그 동안 종합과세에서 누락되었던 배당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도금융권의 배당, 소액주주의 상장법인 배당 및 기타의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된다.

#### 나.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익금산입함으로써 당해연도의 타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즉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타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완료된다.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경우 역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인세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소득분부터 배당소득의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저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반면, 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현행 배당세액 공제제도하에서는 저세율을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를 함에 따라 동일한 기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와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액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금액에 지분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하여 익금불산입대 상금액을 산출한다<sup>6)</sup>.

$$\text{익금불산입대상액} = \text{수입배당금액} \times \text{익금불산입비율}(50\% \text{ 또는 } 30\%)$$

한편 지주회사의 주된 수입원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임을 감안하여 법 인세법 제18조의 2에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 반법인의 경우보다 더 많은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주 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은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 율 30%~5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sup>7)</sup>.

〈표 2〉 지주회사 및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 비율

출자대상법인	지주회사		일반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 비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 비율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40% 초과	90%	30% 초과	50%
	30%~40% 이하	60%	30% 이하	30%
비상장법인	100%	100%	100%	100%
	80% 초과	90%	50% 초과	50%
	50%~80% 이하	60%	50% 이하	30%

주: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비율임.

2) 지분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함.

6) 다만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과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지급이자 중에서 출자이자 등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함.

7) 2006년말 세법개정시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 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됨.

출자대상법인	지주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 비율		
		2007년	2008년	2009년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40% 초과	90%	90%	100%
	30%~40% 이하	70%	80%	80%
비상장법인	100%	100%	100%	100%
	80% 초과	90%	90%	100%
	50%~80% 이하	70%	80%	80%

### Ⅲ.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분석

#### 1. 사업 형태에 따른 세부담 비교

현행 배당세액공제제도하에서는 저세율을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를 함에 따라 동일한 기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와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만일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세부담이 크다면 이는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여 경제적 비효율

성을 초래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법인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이 과소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기업 소득에 대한 세부담과 법인기업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비교해 보아 법인기업 소득이 어느 정도 이중과세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출자자가 1인인 경우를 가정하면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액은 법인단계에서 부담하는 법인세액과 배당 과정에서 출자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액의 합계액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배당 과정에서 출자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출자자가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것으로 계산되는 귀속법인세액을 배당액에 가산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귀속법인세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소득세 산출액에서 차감한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T_{ci} = I_i \times (t_{ci} + t_{di}) + I_i \times \{1 - (t_{ci} + t_{di})\} \times r_i \times (t_{pi1} + t_{qi1}) + I_i \times \{1 - (t_{ci} + t_{di})\} \times r_i \times d \times (t_{pi1} + t_{qi1}) - I_i \times \{1 - (t_{ci} + t_{di})\} \times r_i \times d \quad (1)$$

다음으로 동일한 기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를 검토해 보자. 이 경우에는 법인세가 독립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기업의 출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부담액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9)</sup>.

$$T_{pi} = I_i \times (t_{pi2} + t_{qi2}) \quad (2)$$

여기서  $t_{pi2}$ 는 소득세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제도하에서  $t_{pi1}$ 와 그 크기가 다를 수 있다.

법인  $i$ 의 원천소득에 대해 법인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의 세부담과 개인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의 세부담의 차이가 법인  $i$ 의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액이 된다.

$$DT_i = T_{ci} - T_{pi} \quad (3)$$

따라서 법인  $i$ 의 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율의 차이는 식 (3)을  $I_i$ 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sup>10)</sup>.

**출자자가 1인인 경우를 가정하면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액은 법인단계에서 부담하는 법인세액과 배당 과정에서 출자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액의 합계액이라고 볼 수 있다.**

8) 여기서  $T_{ci}$  :  $i$  법인기업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액,  $I_i$  :  $i$ 기업의 과세소득,  $t_{ci}$  :  $i$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t_{di}$  :  $i$ 기업에 대한 주민세 법인세할,  $t_{pi}$  :  $i$ 기업 출자자의 수취배당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t_{qi}$  :  $i$ 기업 출자자의 수취배당에 적용되는 주민세 소득세할,  $d$  : 임putedation 방식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율,  $r_i$  :  $i$ 기업의 배당률,  $t_{pi1}$  :  $i$ 기업 출자자의 수취배당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9) 여기서  $T_{pi}$  :  $i$  개인기업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액,  $t_{pi2}$  :  $i$  개인기업 출자자에 대한 소득세율,  $t_{qi2}$  :  $i$  개인기업 출자자에 대한 주민세 소득세할

10) 여기서  $e_{ci}$  : 법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  $e_{pi}$  : 개인기업소득에 대한 실효세율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법인 단계와 출자자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과소 과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t_i = \frac{DT_i}{I_i} = \frac{T_{ci}}{I_i} - \frac{T_{pi}}{I_i} = e_{ci} - e_{pi} \quad (4)$$

그런데 식 (3)에서 구한 이중과세액은 기업단위(기업  $i$ )의 이중과세액이므로 기업 전체( $i=1, \dots, n$ )의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액을 총괄적으로 계산하면 식 (3)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sum_{i=1}^n DT_i = \sum_{i=1}^n [T_{ci} - T_{pi}] \quad (5)$$

여기서는 우리나라 기업 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고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와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계산에 필요한 연도별 법인세율, 소득세율, 배당성향, 배당세액공제율 등은 <표 3>에 요약되어 있으며,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가정한다.

<표 3> 연도별 법인세율, 소득세율, 배당성향, 배당세액공제율

(단위 : %)

	법인세 등			소득세 등			배당성향	배당세액 공제율
	법인세율	주민세 법인세할	합계	소득세율	주민세 소득세할	합계		
1994	0.32	0.024	0.344	0.45	0.03375	0.48375	19.4	0.22
1995	0.30	0.025	0.325	0.45	0.03375	0.48375	17.0	0.22
1996	0.28	0.028	0.308	0.40	0.04	0.44	29.7	0.22
1997	0.28	0.028	0.308	0.40	0.04	0.44	24.4	0.19
1998	0.28	0.028	0.308	0.40	0.04	0.44	19.7	0.19~0.38
1999	0.28	0.028	0.308	0.40	0.04	0.44	19.4	0.19~0.38
2000	0.28	0.028	0.308	0.40	0.04	0.44	19.1	0.19
2001	0.28	0.028	0.308	0.40	0.04	0.44	21.6	0.19
2002	0.27	0.027	0.297	0.36	0.036	0.396	19.1	0.19
2003	0.27	0.027	0.297	0.36	0.036	0.396	24.6	0.19
2004	0.27	0.027	0.297	0.36	0.036	0.396	20.6	0.19
2005	0.25	0.025	0.275	0.35	0.035	0.385	20.3	0.19

주: 1. 주민세 법인세할과 주민세 소득세할은 1995년까지 법인세액과 소득세액의 각각 7.5%가 부과되었으며, 1996년 이후에는 법인세액과 소득세액의 각각 10%가 부과되고 있음.

2. 2000년 이전의 배당성향은 김진수(2003)를 사용하였으며, 2001년 이후의 배당성향은 증권선물거래소(2006)를 사용하였음.

<표 3>의 수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세부

담률의 차이가 모두 음(-)의 값을 가지므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법인 단계와 출자자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과소 과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소득세의 최고세율에 비해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낮고 유보소득에 대해 따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제도하에서 배당을 적게 하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오히려 총조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sup>11)</sup>.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소득세의 최고세율에 비해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낮고 유보소득에 대해 따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5〉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률 차이 및 이중과세비율

	세부담률 차이			이중과세비율
	$e_{ci}$	$e_{pi}$	$dt_i$	$\frac{e_{ci} - e_{pi}}{e_{pi}} \times 100$
1994	0.39111	0.48375	-0.09264	-19.2
1995	0.36205	0.48375	-0.12170	-25.2
1996	0.37311	0.44000	-0.06689	-15.2
1997	0.36433	0.44000	-0.07567	-17.2
	0.35348		-0.08652	-19.7
1998	0.33897	0.44000	-0.10103	-23.0
	0.35279		-0.08721	-19.8
1999	0.33850	0.44000	-0.10150	-23.1
2000	0.34681	0.44000	-0.09319	-21.2
2001	0.35786	0.44000	-0.08214	-18.7
2002	0.33476	0.39600	-0.06124	-15.5
2003	0.34563	0.39600	-0.05037	-12.7
2004	0.33773	0.39600	-0.05827	-14.7
2005	0.31446	0.38500	-0.07054	-18.3

## 2. 출자자 간의 세부담 비교

여기서는 출자자가 다수인 경우를 가정하고 출자자가 받는 배당금액에 따른 누진세율을 고려함으로써 기업 형태에 따른 세부담률을 비교해 볼 뿐 아니라 소득계층별로 각 출자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중과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계층이 다른 출자자 간에 세부담이 공평한지를 검토해 본다.

11) 그러나 이러한 조세제도하에서도 만일 높은 수준의 배당을 하게 되면(예: 배당성향 60%) 개인기업의 형태로 경영하는 경우에 비해 법인기업의 형태로 경영하는 경우가 조세부담이 더 높음.



12) 여기서  $DT_j$  :  $j$  출자자가 부담하는 이중과세액,  $T_{cj}$  :  $j$  출자자가 부담하는 조세부담액,  $T_{pj}$  : 동일한 기업을 개인기업 형태로 운용할 경우  $j$  출자자가 부담하는 조세부담액,  $I$  : 법인기업의 과세소득,  $t_c$  : 법인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t_d$  : 법인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한 주민세 법인세율,  $t_{qj1}$  : 법인기업  $j$  출자자의 수취배당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t_{qj1}$  : 법인기업  $j$  출자자의 수취배당에 적용되는 주민세 소득세율,  $t_{pj2}$  : 동일한 기업을 개인기업 형태로 운용할 경우  $j$  출자자의 수취배당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t_{qj2}$  : 동일한 기업을 개인기업 형태로 운용할 경우  $j$  출자자의 수취배당에 적용되는 주민세 소득세율,  $d$  : 임puted 방식에 의한 배당세액 공제율,  $r$  : 법인기업의 배당률,  $q_j$  :  $j$  출자자의 지분비율

13) 여기서  $dt_j$  :  $j$  출자자가 부담하는 이중과세비율,  $e_{cj}$  :  $j$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  $e_{pj}$  : 동일한 기업을 개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j$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

14) 여기서 동일한 기업을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와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가정함.

- (1)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
- ① 기업구분: 법인기업, ② 법인소득금액은 기본적으로 20억원을 가정함, ③ 현행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주민세법 인할이 부과됨, ④ 각 출자자의 소득으로는 배당소득만 있는 것으로 가정함, ⑤ 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출자자별 주식분포 현황은 A: 50%, B: 30%, C: 15%, D: 5%임.
  - (2)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
    - ① 기업구분: 개인기업, ② 소득금액은 기본적으로 20억원을 가정함, ③ 현행 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소득할이 부과됨, ④ 각 출자자의 소득으로는 배당소득만 있는 것으로 가정함, ⑤ 출자자별 지분 분포 현황은 A: 50%, B: 30%, C: 15%, D: 5%임.

### 가. 출자자가 다수의 개인인 경우

출자자는 개인출자자와 법인출자자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출자자가 모두 개인이라고 가정하여 법인기업 형태로 경영되는 경우의 특정 출자자의 세부담과 개인기업의 형태로 경영되는 경우의 특정 출자자의 세부담을 비교해 본다. 배당금은 개인 출자자의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분배되는 것이므로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하에서는 출자자의 소득에 따라 그 적용받는 소득세 세율이 다르게 된다. 각 출자자가 배당금의 분배에 대하여 갖는 지분 비율을  $q_j$  라고 하면 출자자  $j$ 의 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액은 식 (3)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sup>12)</sup>.

$$\begin{aligned}
 DT_j &= T_{cj} - T_{pj} \\
 &= I \times (t_c + t_d) \times q_j + I \times \{1 - (t_c + t_d)\} \times r \times q_j \times (t_{pj1} + t_{qj1}) \\
 &\quad + I \times \{1 - (t_c + t_d)\} \times d \times r \times q_j \times (t_{pj1} + t_{qj1}) - I \times \{1 - (t_c + t_d)\} \times d \times r \times q_j \\
 &\quad - I \times q_j \times (t_{pj2} + t_{qj2})
 \end{aligned} \tag{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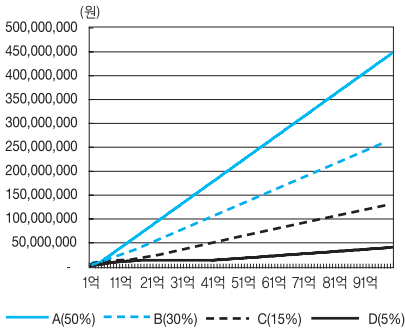
또한 각 출자자가 부담하는 법인소득에 대한 세부담률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sup>13)</sup>.

$$\begin{aligned}
 dt_j &= \frac{DT_j}{I} \\
 &= e_{cj} - e_{pj}
 \end{aligned} \tag{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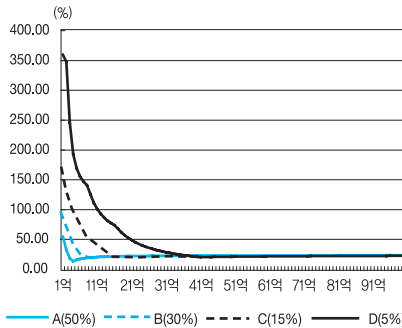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와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이중과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한 후 나머지 소득을 전부 출자자에게 배당(100% 배당)하는 경우를 가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14)</sup>.

소득의 전부를 출자자에게 배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또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배당세액공제제도에도 불구하고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B, C, D 출자자 모두 이중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소득이 6억원 이하에서는 소득이 낮은 출자자 순서(D, C, B, A)로 이중과세 비율이 높았으나, 법인소득이 6억원을 초과하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법인소득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금액(배당비율 100%)



[그림 2] 법인소득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비율(배당비율 100%)



현행 조세제도하에서 배당을 적게 하고 사내유보를 많이 하면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오히려 총조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3]과 [그림 4]는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한 후 나머지 소득 중 21%를 출자자에게 배당한 경우의 이중과세금액과 이중과세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배당비율을 21%로 가정한 것은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12년 동안의 우리나라 배당기업의 배당성향 평균이 21.2%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배당비율을 21%로 가정하면 배당비율을 100%로 가정하는 경우와는 반대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이중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이유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퓨테이션방식에 의한 배당세액공제 제도가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득세의 최고세율에 비해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낮고 유보소득에 대해 따로 과세하지 않는 현행 조세제도하에서 배당을 적게 하고 사내유보를 많이 하면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오히려 총조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중과세의 비율은 법인소득이 낮은 수준(26억원 이하)에서는 소득이 낮은 출자자일수록 높아지는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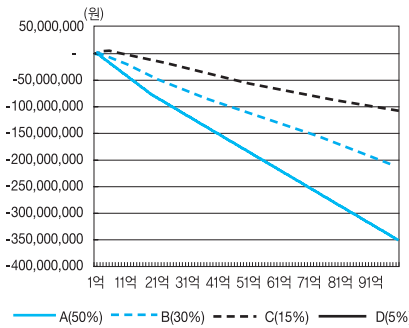
15)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법인 단계와 출자자 단계에서 부담하는 총 세부담액은 8조 7,884 억원이었으며, 개인기업의 출자자가 부담하는 총 세부담액은 7조 1,606억원이었음.

16)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 단계와 출자자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부담액은 5억 8,470만 원이었으며, 개인기업의 출자자가 부담하는 세부담액은 7억 1,606만 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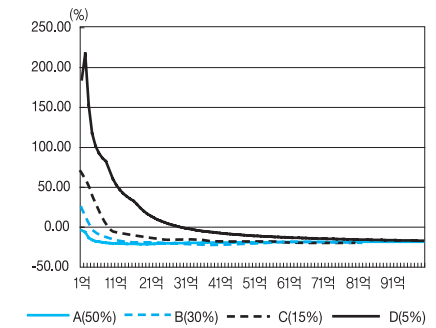


배당비율이 5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세부담이 더 큰 것이다.

[그림 3] 법인소득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금액(배당비율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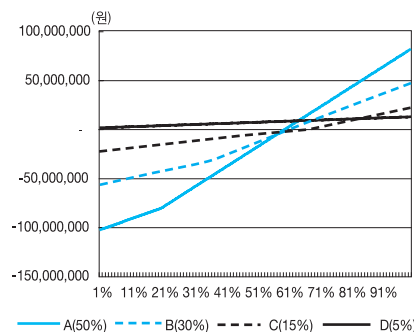
[그림 4] 법인소득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비율(배당비율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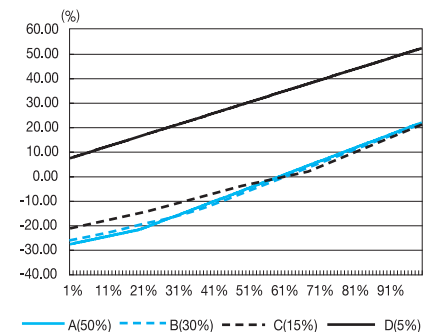
[그림 5]와 [그림 6]에서는 법인의 소득이 20억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배당비율이 1%에서 100%로 변할 때 이중과세 금액과 이중과세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출자자 A, B, C, D의 이중과세 금액의 합계는 배당비율이 58%가 될 때까지는 음(-)이므로 과소과세가 되고 배당비율이 58%를 초과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시작한다. 즉, 배당비율이 5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세부담이 더 큰 것이다.

배당비율이 1%에서 100%로 증가하는 동안 소득이 가장 낮은 출자자인 D의 이중과세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출자자 A, B, C는 배당비율이 각각 59%, 61%, 63%를 초과하면 이중과세되고 배당비율이 그 이하일 때는 오히려 과소과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출자자 D는 배당비율이 1%에서 100%로 증가할 때까지 모든 구간에서 이중과세되고 있다.

[그림 5] 배당비율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금액(소득 20억)



[그림 6] 배당비율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비율(소득 2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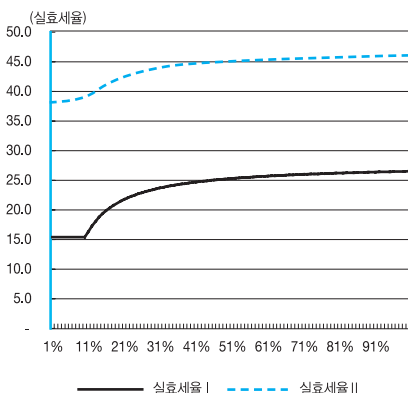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을 [그림 7]과 [그림 8]에서 살펴보면 배당 비율이 100%인 경우와 배당비율이 21%인 경우 지분비율이 일정 구간을 초과 하여야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세부담률의 누진성을 보여 주고 있다. 배당비율이 100%인 경우 지분비율 10% 이하에서, 배당비율이 21%인 경우 지분 48% 이하에서 출자자 단계에서 부담하는 실효세율(실효세율 I)이 15.4%로 일정하다. 또한 배당비율이 100%인 경우 지분비율 10% 이하에서 법인 단계와 출자자 단계를 합친 실효세율(실효세율 II)이 38.1%로 일정하며, 배당비율이 21%인 경우에는 지분비율이 49% 이하에서 실효세율 II가 29.2%로 일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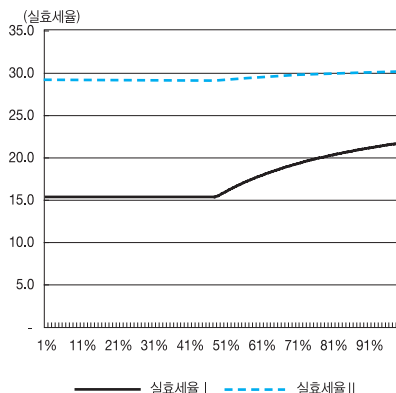
일정한 구간을 초과할 때까지 실효세율이 같은 이유는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따른 결과이다. 이 제도에 의해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인 4,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를 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를 한다. 원천징수세율이 14%이고 소득세의 최저세율이 8%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더라도 배당세액공제를 받고 난 실효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아서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함에 따라 세부담의 역진성은 방지할 수 있으나 여전히 기준금액인 4,000만원을 초과하고서도 한동안 세부담이 누진적이지 못한 구간이 있게 된다.

원천징수세율이 14%이고 소득세의 최저세율이 8%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더라도 배당세액공제를 받고 난 실효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아서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림 7] 출자지분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 (소득 20억, 배당비율 100%)



[그림 8] 출자지분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 (소득 20억, 배당비율 21%)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의 경우 이종과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에 의해 배당금을 일정부분 투자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나. 출자자가 다수의 법인인 경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는 먼저 피투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피투자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다시 투자회사에 분배된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원천소득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고 있다. 다만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의 경우 이종과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에 의해 배당금을 일정부분 투자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법인원천소득이 어느 정도 이중과세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법인기업 소득에 대한 세부담과 개인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비교해 본다. 출자자가 모두 법인이라고 가정하고 지분 비율을  $q_j$  라고 한다. 법인의 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액 중에서 법인의 몫을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7)</sup>.

$$T_{cj} = I \times (t_{ci} + t_{di}) \times q_j + [I \times \{1 - (t_{ci} + t_{di})\} \times r \times q_j] - E_j \times (t_{ej} + t_{dj}) \quad (8)$$

$E_j$ 는 다음의 값을 갖는다.

〈표 6〉 지분비율에 따른  $E_j$  값

		$q_j$	$E_j$
일반법인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	$q_j > 0.3$	$Y_j \times 0.5$
		$q_j \leq 0.3$	$Y_j \times 0.3$
	비상장법인	$q_j = 1$	$Y_j$
		$0.5 < q_j < 1$	$Y_j \times 0.5$
		$q_j \leq 0.5$	$Y_j \times 0.3$
지주회사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	$q_j > 0.4$	$Y_j \times 0.9$
		$0.3 \leq q_j \leq 0.4$	$Y_j \times 0.6$
	비상장법인	$q_j = 1$	$Y_j$
		$0.8 < q_j < 1$	$Y_j \times 0.9$
		$0.5 \leq q_j \leq 0.8$	$Y_j \times 0.6$

주:  $Y_j = I \times (1 - (t_{ci} + t_{di})) \times r \times q_j$

17) 여기서  $t_{ci}$  피투자회사의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t_{di}$  피투자회사의 법인소득에 대한 주민세 법인세할,  $t_{cj}$ :  $j$  투자회사의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t_{dj}$ :  $j$  투자회사의 법인소득에 대한 주민세 법인세할,  $E_j$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에 의한  $j$  기업(투자회사)의 익금불산입액

18) 여기서  $t_{dj2}$ : 주민세 소득할

다음으로 동일한 기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경영하는 경우 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총부담액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8)</sup>.

$$T_{pj} = I \times (t_{pj2} + t_{aj2}) \quad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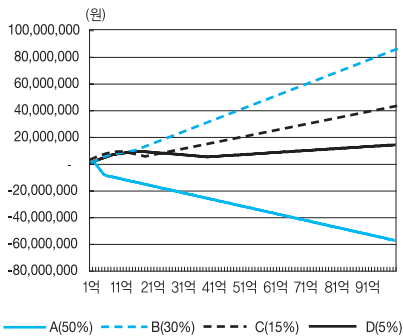
각 출자자의 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액을 식 (8)에서 식 (9)를 차감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DT_j = T_{cj} - T_{pj} \quad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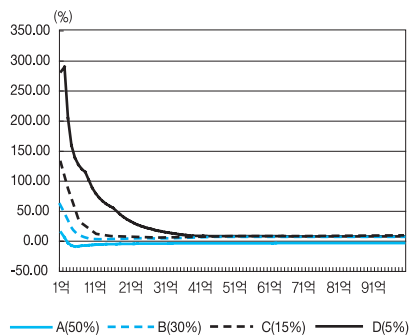
출자자가 다수인 경우 현행 세법 규정에 의한 이중과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몇 가지 가정하에서 각 법인출자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중과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과표가 다른 출자자 간에 세부담의 공평한지를 살펴본다<sup>19)</sup>. 소득의 전부를 출자자에게 배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sup>20)</sup>. 그러나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자자 A를 제외하고 출자자 B, C, D 모두 이중과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과세의 비율은 소득이 적은 출자자 순(D, C, B)으로 높았으나, 소득이 높아질수록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배당비율을 21%로 가정하면 배당비율이 100%인 경우와 달리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1)</sup>. 출자자 A는 전구간에서, 출자자 B는 소득 4억원 이상에서, 출자자 C는 소득 9억원 이상에서, 출자자 D는 소득 28억원 이상에서 과소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이 낮은 출자자일수록 이중과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법인소득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금액(배당비율 100%)



[그림 10] 법인소득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비율(배당비율 100%)



19) 여기서 동일한 기업을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와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가정함

(1)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 ① 기업구분: 법인기업, ② 법인소득금액은 기본적으로 20억원을 가정함. ③ 현행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주민세법인할이 부과됨. ④ 피출자회사는 상장회사이며, 각 출자자의 소득으로는 배당소득만 있는 것으로 가정함. ⑤ 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출자자별 주식분포 현황은 A: 50%, B: 30%, C: 15%, D: 5%임.

(2)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 ① 기업구분: 개인기업. ② 소득금액은 기본적으로 20억원을 가정함. ③ 현행 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소득할이 부과됨. ④ 각 출자자의 소득으로는 배당소득만 있는 것으로 가정함. ⑤ 출자자별 지분 분포 현황은 A: 50%, B: 30%, C: 15%, D: 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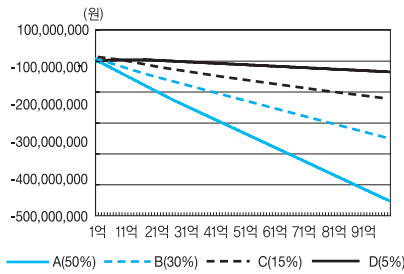
20)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법인단계와 출자자 단계에서 부담하는 총 세부담액은 7조 3,187억원이었으며, 개인기업의 출자자가 부담하는 총 세부담액은 7조 1,606억원이었음.

21)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피투자회사)단계와 출자자(투자회사)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부담액은 5억 6,316만원이었으며, 개인기업의 출자자가 부담하는 세부담액은 7억 1,606만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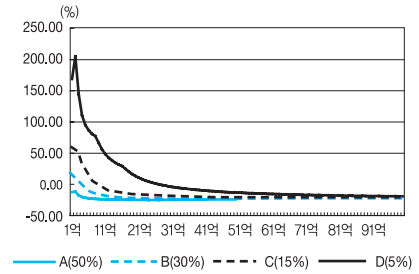


배당비율이 82%를 초과하면  
법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세부담이  
더 큰 반면, 배당비율이 82%  
이하에서는 법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세부담이 더 작다.

[그림 11] 법인소득의 변화에 따른 이증과  
세 금액(배당비율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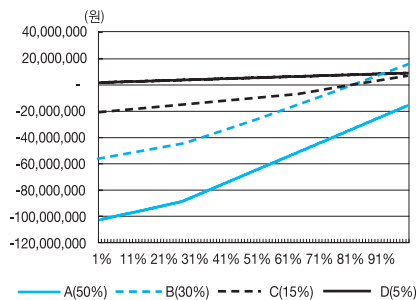


[그림 12] 법인소득의 변화에 따른 이증과  
세 비율(배당비율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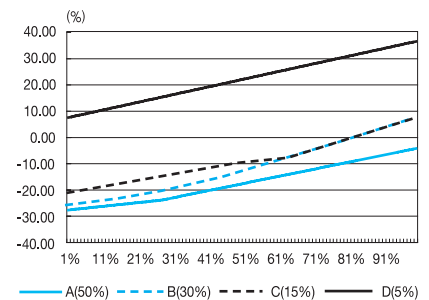


[그림 13]과 [그림 14]에서는 법인의 소득이 20억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배당비율이 1%에서 100%로 변할 때 이증과세 금액과 이증과세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소득이 가장 높은 출자자 A의 이증과세 금액은 전구간 과소과세가 되고 소득이 가장 낮은 출자자 D는 전구간 이증과세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자자 B와 출자자 C는 배당비율이 82%까지는 이증과세 비율이 음(-)이므로 과소과세가 되고 배당비율이 82%를 초과하면 이증과세가 되기 시작한다. 즉, 배당비율이 82%를 초과하면 법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세부담이 더 큰 반면, 배당비율이 82% 이하에서는 법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세부담이 더 작다.

[그림 13] 배당비율의 변화에 따른  
이증과세 금액(소득 20억)



[그림 14] 배당비율의 변화에 따른  
이증과세 비율(소득 2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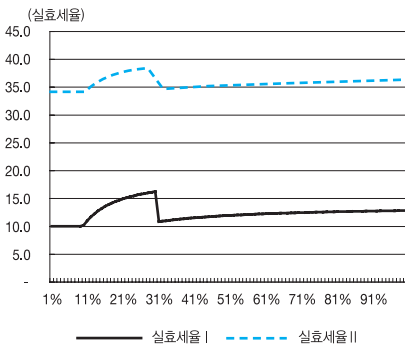
[그림 15]는 소득이 20억원이고 배당비율이 100%일 때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을 보여주고 있다. 출자자 단계에서 부담하는 실효세율(실효세율

I)은 지분비율 9% 이하에서는 10%로 동일하였고 지분비율이 30%될 때까지 실효세율은 16.2%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분비율이 30%를 초과하면서 실효세율은 10.8%로 낮아졌다가 다시 조금씩 높아져서 지분비율이 100%가 될 때 실효세율은 12.8%로 나타났다. 법인 단계와 출자자 단계를 합친 실효세율(실효세율 II)은 지분비율 9%까지는 34.2%로 동일하였으며 지분비율이 30%될 때까지 실효세율은 38.7%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분비율이 30%를 초과하면서 실효세율은 34.8%로 낮아졌다가 다시 조금씩 높아져서 지분비율이 100%가 될 때 실효세율은 36.2%로 나타났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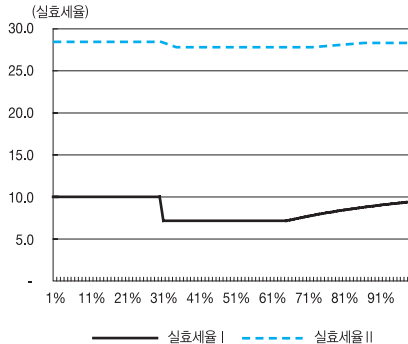
법인 출자자의 경우 개인 출자자와 달리 세부담의 역진성이 있더라도 역진성 문제는 심각한 것이 아니지만 배당소득만을 고려할 때 배당비율 100%의 경우와 배당비율 21%의 경우 모두 약간의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법인 출자자의 경우 개인 출자자와 달리 세부담의 역진성이 있더라도 역진성 문제는 심각한 것이 아니지만 배당소득만을 고려할 때 배당비율 100%의 경우와 배당비율 21%의 경우 모두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조금 발생함을 볼 수 있다.

[그림 15] 출자지분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 (소득 20억, 배당비율 100%)



[그림 16] 출자지분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 (소득 20억, 배당비율 21%)



## IV. 시사점

### 1. 이중과세의 조정이 불충분한가?

배당세액공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법인 단계에서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액을 출자자 단계에서 완전히 공제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까지 법인세 저세율인 15%를 기준으로 계산한 19%의 gross-up 비율이 사용되었다. 2005년부터 법인세율 저세율이 13%로 인하됨

22) [그림 16]도 이와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임.



고세율의 법인세를 적용받는  
출자자에게도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출자자 단계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15%의 gross-up 비율이 2006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세율의 법인세를 적용받는 법인의 출자자는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고세율의 법인세를 적용받는 법인의 출자자가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의 전부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33%의 gross-up 비율이 사용되어야 하나, 15%의 gross-up 비율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의 15/33 정도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 단계에서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액을 출자자 단계에서 완전히 공제해 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고세율의 법인세를 적용받는 출자자에게도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출자자 단계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는 출자자 단계에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법인 전체의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평균 배당성향이 21% 정도인 상황에서 gross-up 비율을 높이면 출자자 입장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오히려 법인기업을 개인기업에 비해 더욱 유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소득이 높은 출자자의 경우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과소과세되고 있는데, 고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gross-up 비율을 적용하면 저소득 출자자는 고소득 출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중과세의 조정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출자자 단계에서의 이중과세는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행 세제하에서는 소득을 전부 배당하면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서 더 높다. 반면 법인이 소득의 전부를 배당하지 않고 일부를 배당하면 어느 한계점부터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서 더 낮아진다. 즉,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소득 중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의 상대적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법인의 출자자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나서 받은 배당에 대해서 출자자 단계에서 또 다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당연히 배당소득공제가 완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적인 의미의 이중과세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을 비교해 볼 때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차이가 나고 사내유보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과세제도하에서 법인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유보를 하기 때문에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기업의 조세부담이 개인기업의 조세부담보다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오히려 과소과세되고 있다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하거나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법인 이익의 사내유보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시행함으로써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과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비슷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소득 중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의 상대적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 2. 수직적 공평성에 문제는 없는가?

우리나라의 배당소득과세제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와 함께 운용됨으로써 배당소득의 실효세율이 누진적이 아닌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법인기업으로 운영할 때 출자자가 법인일 때 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두 단계의 세율여서 누진적인 세율구조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음은 사실이다. 더구나 앞의 분석에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때의 세부담이 출자자가 개인이거나 법인이거나를 불문하고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때의 세부담에 비해 저소득 출자자일수록 불리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같이 고소득계층의 조세부담률이 저소득계층의 조세부담률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은 누진세율구조를 통해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려는 현행 소득세제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배당소득과세제도 하에서는 소득재분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중단기적으로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한편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배당소득의 실효세율이 누진적이 아니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기준금액이 낮아질수록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대상이 많아질 것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과세되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원래



현재와 같은  
배당소득과세제도하에서는  
소득재분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취지대로 고소득 금융소득자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배당 이외에 이자 등을 포함하더라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에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각종 소득감면 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에 비해 배당소득은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가능성이 많다<sup>23)</sup>. 저소득 출자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인해 종합과세를 받는 경우에 비해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납세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종합과세를 선택한 납세자는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의 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으로써 분리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납세자들이 배당소득 등의 자본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누진과세함으로써 세제의 공평을 확보하자는 것이 포괄적 소득과세의 입장인 반면, 자본소득은 노동공급의 대가인 근로소득과는 다른 경제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노동소득과는 별개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의 입장이다.

### 3. 지주회사와 일반회사간 익금불산입 비율의 차별적 조정은 타당한가?

현행 배당소득과세제도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익금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는 앞의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와 지주회사인 경우를 구분하여 익금불산입 비율을 차별적으로 조정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이중과세의 조정은 지주회사에 대해 일반법인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제도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주회사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과세문제에 국한시키면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자회사와 모회사를 경제적으로는 동일한 회사로 간주하여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23) 성명재·전영준(1998)은 1995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의 실효세율은 15.3%이고 근로소득의 실효세율은 4.9%로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불평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주회사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더 높여줌으로써 일반법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을 허용한다면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 한도를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한도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한도를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 한도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방안 중에서는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 한도를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한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한도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지주회사에 대해 이미 주어지고 있는 익금불산입 한도의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므로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더 간편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작은 상황에서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 한도를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한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과소과세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하거나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일치시키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채택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KIF**

지주회사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더 높여줌으로써 일반법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김진수,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4.  
 성명재 · 전영준,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이준규 · 이은상, 「이중과세와 조세의 중립성」, 『세무학연구』, 제7호, 한국세무학회, 1996.  
 최명근, 『세무학의 이해』, 세학사, 1998.  
 McLure, Charles E. Jr., *Must Corporate Income be Taxed Twice?*,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87.  
 Meade, J. E., *The Structure of Reform of Direct Taxation*,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1987.  
 Warren, A., *Integration of Corporate and Individual Income Taxes*, Harvard Law School, 2005.

# 소득이동성과 빈곤의 관계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sung@kipf.re.kr)

기간에 따라 빈곤정책의 대상가구의 범위가 달라지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득의 상대순위 및 절대수준이 가변적이라는 점이다.

## I. 서론

빈곤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단기적 관점에서만 빈곤의 유형과 특성을 분류·분석하고 빈곤대응 정책의 주요 대상자(또는 가구)를 선정하곤 한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소득흐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매기간마다의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대응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빈곤정책도 각 시점에서의 가구소득 등을 기준으로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금전적·비금전적인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속성 차이에 따라 빈곤은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으로 구분된다. 장기빈곤가구가 함은 일반적으로 2기간 이상 빈곤가구에 잔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 시점에서 해당기의 소득과 최저생계비(또는 기초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 및 빈곤가구를 판정하는 경우와, 생애소득의 관점 또는 최소한 중기적 관점에서 빈곤 및 빈곤가구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빈곤 또는 빈곤가구가 반드시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단기빈곤가구와 장기빈곤가구는 서로 다른 경우도 많다.

기간에 따라 빈곤정책의 대상가구의 범위가 달라지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득의 상대순위 및 절대수준이 가변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특성을 흔히 소득이동성이라고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빈곤가구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해당 가구가 반드시 次期 또는 次次期에도 계속 빈곤가구로 잔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한 기간 동안 빈곤가구로 관측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구가 반드시 장기에서도 빈곤가구일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두 기간 사이에 소득이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관찰된 빈곤가구(단기빈곤) 중에서는 장기빈곤가구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물론 어떤 시점에서 가구소득 수준이 빈곤선보다 높아 빈곤하지 않은 가구 가운데 일부가 빈곤가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가구의 경우에도 일부만이 장기빈곤가구이다. 그러므로 소득이동성이 0이 아닌 한 단기빈곤과 장기빈곤은 서로 구분된다.

전체 가구 가운데 빈곤가구의 비율을 빈곤율이라고 한다. 기간에 따라 장기·단기빈곤율로 구분하기도 한다. 장기빈곤율이 단기빈곤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단기빈곤가구가 장기빈곤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단기빈곤가구가 장기빈곤으로 떨어지는 경우보다 빈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일생을 두고 가구소득의 상대순위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빈곤가구로 분류된 가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도 가구소득이 계속 빈곤선 아래에 머물게 되는 확률은 대상기간이 증가할수록 작아지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장기빈곤율이 단기빈곤율보다 낮다.

단기빈곤가구 중 최소한 일부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이상 빈곤가구가 아니라면 단기빈곤가구 중 일부는 실질적인 보호가 덜 필요한 가구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빈곤문제는 단순히 매시점마다 관찰되는 단기빈곤의 경우뿐만 아니라 장기빈곤의 관점으로 확대해서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소득이동성에 기초하여 빈곤율의 현황과 소득이동성의 변화에 기초하여 빈곤의 장기화·고착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자들의 이해증진을 위해 소득이동성의 변화 여부는 통계적 가설검정을 통해 분석한다.

단기빈곤가구 중 최소한 일부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이상 빈곤가구가 아니라면 단기빈곤가구 중 일부는 실질적인 보호가 덜 필요한 가구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빈곤문제는 단순히 매시점마다 관찰되는 단기빈곤의 경우뿐만 아니라 장기빈곤의 관점으로 확대해서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 II. 빈곤율과 빈곤탈출

### 1. 빈곤문제를 보는 시각

#### 가. 개요

빈곤은 (가구)소득이 빈곤선(poverty line)에 미달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학문적·정책적 관점에서 빈곤선이란 기초생계비 또는 중위수소득(median



경쟁시장에서 빈곤을 자체를 낮추기 위한 시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된다. 하나는 단기빈곤을 저하를 목적으로 소득분산을 낮추려는 시도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빈곤을 저하를 목적으로 소득이동성을 제고하려는 시도이다.

income)의 일정비율(일반적으로 40~60%)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흔히 기초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하는 경우의 빈곤을 절대빈곤, 중위수소득의 일정비율을 빈곤선으로 하는 경우의 빈곤을 상대빈곤이라고 한다.

빈곤이란 단순히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다, 작다'는 문제를 떠나 빈곤 가구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라는 심각한 상황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소득분배 문제의 일부분이면서도 이를 별도의 문제로 독립시켜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빈곤 정책은 빈곤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지를 위한 소득보조정책과 아울러 시장소득 단계에서 빈곤을 자체를 낮추고자 하는 정책이 시도되기도 한다. 경쟁시장에서 빈곤을 자체를 낮추기 위한 시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된다. 하나는 단기빈곤을 저하를 목적으로 소득분산을 낮추려는 시도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빈곤을 저하를 목적으로 소득이동성을 제고하려는 시도이다. 즉, 빈곤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크게 상대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법, 즉 소득분산을 줄이는 방법과 소득이동성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sup>1)</sup>.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 각각에 대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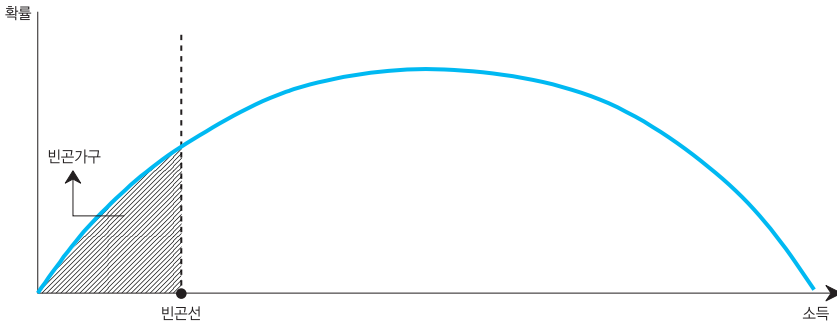
### 나. 소득분산의 축소와 단기빈곤율

[그림 1]에서 보듯이 소득이 일정한 확률분포를 지닐 때 빈곤 여부를 판가름 해주는 기준, 즉 빈곤선이 주어지면, 가구소득이 빈곤선에 미달하는 경우 빈곤 가구로 분류된다.

이 경우 소득분포의 분산을 줄일 수 있다면 매기간마다 관찰되는 (단기)빈곤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소득분포 곡선 '가'와 '나'는 소득 평균이 같지만 소득분산은 '가'가 '나'보다 더 크다. 따라서 소득분포 곡선이 '가'인 경우에는 '나'의 경우보다 가구소득이 빈곤선에 미달하는 빈곤가구의 비율, 즉 빈곤율이 더 크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득분산이 작을 수록 빈곤율이 낮아진다. 극단적으로 모든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을 상회하도록 할 수 있다면 이론상 빈곤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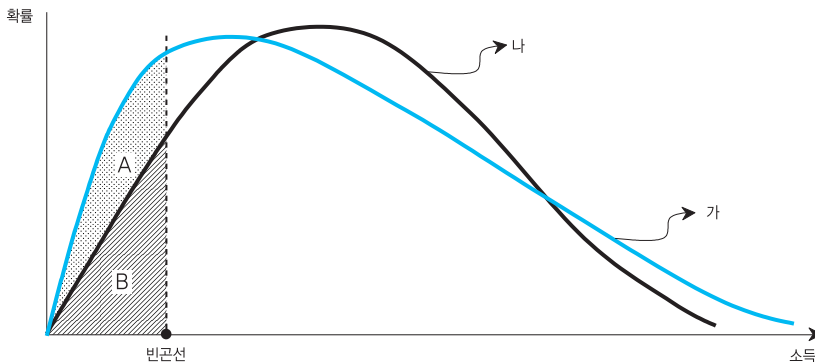
1) 빈곤율을 축소하는 두 가지 방안은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그림 1] 소득분포와 빈곤가구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득분산이 작을수록 빈곤율이 낮아진다. 극단적으로 모든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을 상회하도록 할 수 있다면 이론상 빈곤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그림 2] 소득분산의 차이와 빈곤가구



김종면·성명재(2003 A·B)의 연구에서 보듯이 가구소득이 특정한 분포(자연대수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의 평균과 분산만으로 소득분포의 통계적 특성이 모두 규정된다. 이런 경우에는 평균소득이 일정하다고 할 때 소득분산이 작을수록 (단기)빈곤율이 작아진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처럼 관찰되지 않는다. 김종면·성명재(2003 A·B)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소득분포를 볼 때 다소의 부침이 있기는 하였지만 소득분산이 결코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소득분산이 서서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소득단계에서 임금피크제 실시, 재교육 및 정보력 격차 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소득분산을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고



빈곤정책의 기본방향을  
논하자면, 단순히 빈곤가구에  
생활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소득단계에서의  
소득이동성을 높이는 정책도  
장기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빈곤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용을 달성하고 생산성 격차 등을 축소시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분포가 균등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소득격차를 일정한 범위 내에 묶어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에서 소득분산 축소를 통해 빈곤율 0%를 목표로 하는 빈곤정책은 자칫 비용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제약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협의의 빈곤정책이라 함은 관찰된 빈곤가구에 최저생계비 또는 일정한 기준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을 떠올릴 수 있다.

#### 다. 소득이동성의 변동과 장기빈곤율

시각을 조금 넓혀서 단순히 매시점마다 관찰되는 소득에만 국한하지 말고 시간대별 소득흐름을 고려하여 빈곤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고안하고자 한다면 빈곤정책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소득분포는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시장소득의 분산을 축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렇지만 소득이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면, 비록 매기간 관찰되는 소득분포의 분산을 줄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기빈곤가구 가운데 상당수를 장기빈곤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빈곤의 고착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sup>2)</sup>.

이런 의미에서 빈곤정책의 기본방향을 논하자면, 단순히 빈곤가구에 생활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소득단계에서의 소득이동성을 높이는 정책도 장기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빈곤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sup>3)</sup>.

소득분포의 분산을 줄이는 정책은 한 시점에서 주어진 현상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단기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소득이동성을 확대하는 문제는 장기적 소득흐름에 기초한 빈곤정책이라는 점에서 장기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소득분산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과 소득이동성을 높이는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

## 2. 빈곤율

본절에서는 빈곤탈출률을 추정하기에 앞서 빈곤율 추이에 대해 살펴본다. 빈곤탈출률은 패널자료로부터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경우의 빈곤율을 살펴보자.

2) 이런 경우에는 빈곤정책에 소요되는 재원규모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3) 성명재(2005)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이동성은 소득이행변수( $I$ )의 분산( $\sigma_I^2$ )으로 측정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sigma_I^2$ 이 클수록 소득이동성이 커진다고 한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절대빈곤율은 1998~2004년 기간 동안 약 21~26%로 추정되었다<sup>4)</sup>.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빈곤율이 매우 높게 추정되어 추정 결과의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노동패널자료는 소득이 과소보고된 경향이 있다. 자료의 원천이 서로 상이하고 표본의 대상범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한국노동패널자료를 가계조사자료와 비교해보면, 전자의 가처분소득 평균은 후자의 약 80% 중반대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차이는 서베이자료의 한계성,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의 차이와 함께, 조사내용의 상당부분이 피조사자들의 기억에 의존함에 따른 오차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응답자의 기억력이 비교적 정확하였다고 하더라도 응답자들의 보수적인 응답태도 등이 소득의 과소보고 경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동패널에 보고된 소득이 실제보다 과소하다면 절대빈곤율은 이와 반대로 실제보다 과다하게 추정된다. 이에 따른 편의(bias)를 회피하기 위해 빈곤선을 최저생계비의 일정비율로 축소조정하여 절대빈곤율을 추정해 보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교대상기간 중 빈곤율이 가장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1998년도 빈곤율의 추정결과가 일반적인 상식과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는 상대빈곤율을 추정한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한국노동패널자료의 소득 과소보고율이 계층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가계조사자료와 비교해보면, 전자의 가처분소득 평균은 후자의 약 80% 중반대 수준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절대·상대빈곤율(한국노동패널자료·가계조사자료 기준)

(단위: %)

절대빈곤율	조정계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0.1	0.57	1.35	1.2	1.55	1.16	1.15	1.5
	0.2	1.66	2.61	2.42	3.32	2.29	2.59	2.63
	0.3	3.35	3.87	3.74	5.36	3.65	4.02	4.12
	0.4	5.16	6.49	5.7	7.48	5.44	5.74	6.28
	0.5	7.61	8.72	7.33	9.97	8.06	8.31	9.01
	0.6	10.12	11.83	10.6	12.16	9.99	11.01	11.69
	0.7	13.89	15.18	13.43	14.86	12.25	14.13	15.02
	0.8	15.85	17.72	16.15	19.21	15.64	16.23	17.81
	0.9	18.97	21.64	21.86	21.94	18.51	19.55	20.6
	1	21.74	26.04	23.38	26.72	21.68	21.9	22.95

4) 연구 또는 정책의 목적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신 시장소득이나 총소득 또는 기타의 소득개념을 이용하여 빈곤가구를 정의하기도 한다.

기간에 따라 빈곤율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경제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의 계속

(단위: %)

상대빈곤율	조정계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0.3	7.64	7.67	6.63	8.4	7.2	8	8.04
	0.4	11.02	11.68	11.93	12.1	11.79	12.05	12.7
	0.5	16.9	16.81	16.47	16.69	17.07	17.32	19.08
	0.6	22.46	22.55	20.88	23.2	23.14	23.31	24.19
	0.7	29.9	30.91	30.15	29.96	30.64	29.76	30.82

주 : 한국노동패널자료의 경우 소득 관련 사항이 과소보고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어, 소득 과소보고 경향을 감안하여 빈곤선도 조정계수를 이용하여 하향조정하였을 경우를 상정하여 추정

- 절대빈곤율의 경우 조정계수: 빈곤선 = 최저생계비×조정계수
- 상대빈곤율의 경우 조정계수: 빈곤선 = 중위수 소득×조정계수

〈표 2〉 가구가처분소득의 비교(한국노동패널자료 · 가계조사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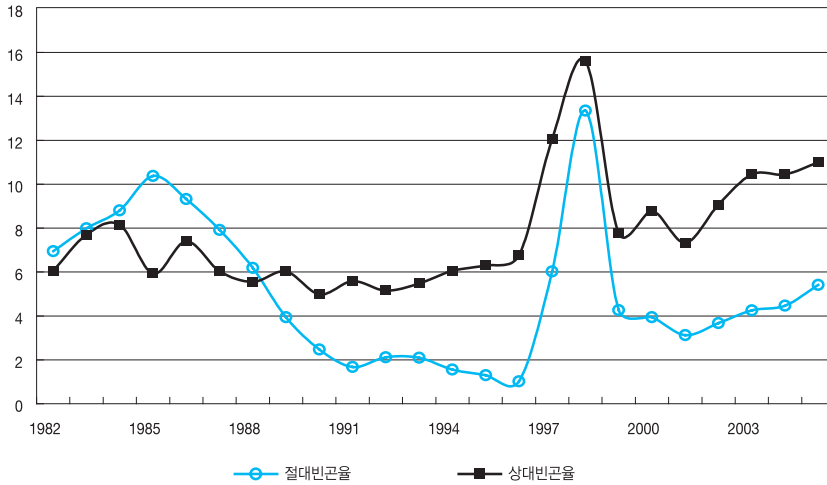
(단위: 만원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한국노동패널자료(A)	1,885	2,306	2,040	2,189	2,672	2,815	2,968
가계조사자료(B)	2,174.6	2,419.5	2,719.1	2,825.7	3,039.9	3,278.4	3,545.2
비율(A/B)	86.7	95.3	75.0	77.5	87.9	85.9	83.7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유형별로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을 추정된 결과는 [그림 3]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간에 따라 빈곤율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경제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빈곤율 정의함에 있어 절대소득과 상대 소득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빈곤율의 절대수준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2005년 현재 절대빈곤율은 5.4%, 상대빈곤율은 11.0%로 추정되었다.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 모두 무직가구와 부분취업근로자가구에서 가장 높으며 완전취업 및 자영업자가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계열적으로는 1998년의 경제위기 기간에 빈곤율이 가장 높았다. 이후 빈곤율이 하락하였다가 최근에는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연령적으로 볼 때 은퇴기 이후의 연령층인 노인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빈곤율 상승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추이(가계조사자료 기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연령적으로 볼 때 은퇴기 이후의 연령층인 노인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빈곤율 상승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3〉 빈곤율(가계조사자료 · 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연도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1982	6.95	6.06
1985	10.38	5.93
1990	2.47	4.98
1995	1.3	6.3
1996	1.02	6.76
1997	6.03	12.05
1998	13.35	15.6
1999	4.26	7.76
2000	3.94	8.78
2001	3.12	7.33
2002	3.67	9.06
2003	4.25	10.45
2004	4.47	10.45
2005	5.41	11

주: 절대빈곤가구수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 상대빈곤가구수는 총위수 소득의 50% 미달가구를 기준으로 산정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빈곤선을 낮게 책정할수록

빈곤탈출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빈곤탈출률이 작아지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 3. 빈곤탈출률

빈곤탈출률이라 함은 ‘어떤 기(期)에 빈곤가구였던 가구가 다음 기에 빈곤가  
구에서 벗어나게 되는 확률’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어떤 기(期)에 비  
(非)빈곤가구였던 가구가 다음 기에는 빈곤가구로 전락하게 되는 확률’은 빈곤  
진입률로 정의할 수 있다.

빈곤탈출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기간 이상 연속한 자료를 대상으로  
구축된 패널자료가 필요하다. 질적 측면에서 자료를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본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빈곤탈출률을 추정하였다.

상대빈곤의 경우를 기준으로 빈곤탈출률을 추정해본 결과, 빈곤선을 중위수  
소득의 50%로 책정한 경우, 빈곤탈출률은 37~50% 정도로 추정되었다. 만약  
빈곤선을 중위수 소득의 40%로 낮추는 경우에는 46~56% 수준으로 추정되었  
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빈곤선을 낮게 책정할수록 빈곤탈출률이 높아진다  
는 점이다. 이는 [그림 4]에서 보듯이 빈곤선을 낮게 설정할수록 빈곤탈출률이  
상방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된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빈곤탈출률이 작아지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시계열적으로 소득이  
동성이 작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에서는 빈곤탈출률 곡선이 우하향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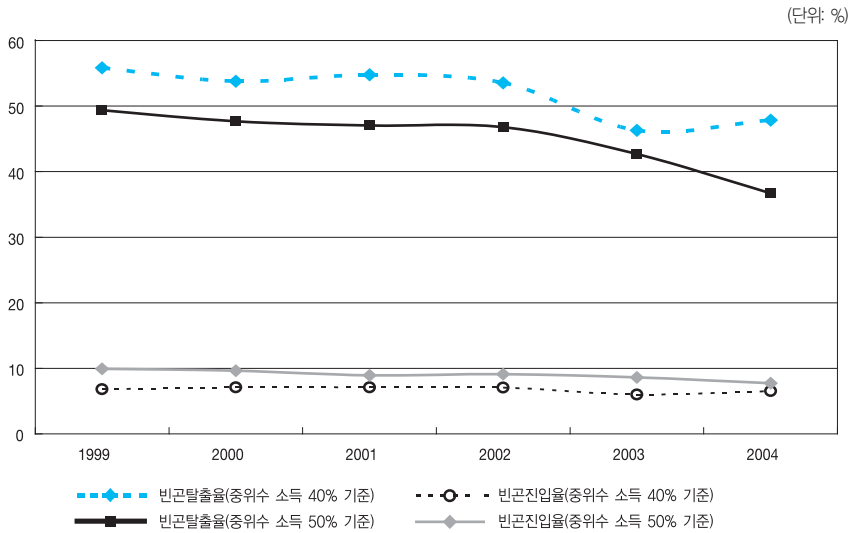
현재 기에서는 빈곤가구가 아니지만 다음 기에 빈곤가구로 전락하는 비율,  
즉 빈곤진입률은 빈곤선을 중위수 소득의 40% 또는 50% 수준으로 하는 경우  
각각 6~7%와 8~10% 정도로 추정된다. 빈곤탈출률에 비해 변화의 정도는 상  
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빈곤진입률도 소폭 하락하는 경향  
을 보인다. 이 역시 소득이동성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빈곤진입률 곡선이 빈곤탈출률 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그 이유는 각각의  
비율을 나타내는 분수 중 분모의 크기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일정한 수  
의 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고 또한 동일한 수만큼의 가구가 빈곤가구로 전락하  
여 전체적으로 빈곤율의 차이가 없다고 하자. 빈곤가구보다는 비빈곤가구의 수  
가 절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비빈곤가구 가운데 빈곤으로 추락하는 가구의 비  
율은, 빈곤가구 가운데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구의 비율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소득이동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최근 들어 노동시장의 경  
직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소득이동성을 작게 만드는 중요  
한 요인 중 하나이다. 노동조합의 강성화 및 유연성 저하 등도 노동시장의 경직

화와 관련이 깊다.

[그림 4] 빈곤탈출률과 빈곤진입률의 추정결과



빈곤탈출률에 비해 변화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빈곤진입률도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역시 소득이동성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빈곤탈출률·빈곤진입률 추정결과(한국노동패널자료·상대빈곤 기준)

(단위: %)

빈곤탈출률	조정계수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0.1	86.88	86.79	87.68	87.51	85.55	78.98
	0.2	75.65	76.12	71.31	77.99	64.27	70.25
	0.3	62.74	66.66	61.08	64.09	53.87	58.75
	0.4	55.84	53.77	54.79	53.54	46.3	47.84
	0.5	49.38	47.69	47.04	46.79	42.68	36.68
	0.6	43.94	44.54	39.52	41.45	37	33.16
	0.7	38.34	36.99	34.74	34.62	34.06	30.37
	0.8	33.86	30.32	31.76	31.82	29.16	28.53
	0.9	30.9	29.44	26.89	28.43	23.22	23.93
	1	27.05	24.4	25.44	25.23	22.13	21.11



노령화가 진전되어 노인인구  
비중이 커지면 그만큼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진전된다.  
다만 노령화와 관련한  
노동시장의 경직화는  
노동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 4〉의 계속

(단위: %)

	조정계수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빈곤 집입률	0.1	1.04	1.62	1.58	2.02	1.61	1.34
	0.2	2.54	3.05	2.73	4.27	2.46	3.07
	0.3	5.03	5.4	4.07	5.69	4.08	5.01
	0.4	6.8	7.1	7.09	7.06	5.99	6.52
	0.5	9.91	9.63	8.94	9.1	8.61	7.72
	0.6	12.66	12.73	10.45	12.28	10.9	10.07
	0.7	16.51	16.24	14.75	14.7	14.56	12.93
	0.8	18.11	17.26	18.8	18.21	16.67	16.23
	0.9	23.3	21.57	19.81	21.06	17.54	18.87
	1	23.85	22.68	24.37	23.82	21.24	20.55

노동시장의 경직화는 인구의 노령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사람들 중 노인들의 경우에는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진입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노령화가 진전되어 노인인구 비중이 커지면 그만큼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진전된다. 다만 노령화와 관련한 노동시장의 경직화는 노동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노동시장의 경직화는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본고에서 노령화와 관련하여 굳이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논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은퇴자 등의 경우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하여도 노화 등에 따라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위적인 경쟁제한 요소가 없더라도 사실상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다. 최근 인구의 노령화가 매우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인구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노화라는 자연법칙에 의해 초래되는 노인들의 경쟁력 상실현상을 포괄적 의미에서의 '노동시장 경직화'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 Ⅲ. 소득이동성의 변화 검정과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본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이동변수의 분산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음을 검정해봄으로써 최근의 소득이동성의 하

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니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지 검증해본다.

소득이행규칙에 의하면  
다음 기의 소득은 p-백분위수  
소득을 중심으로 일정한  
확률분포를 가지면서 실현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 1. 두 기간 사이의 소득이행규칙

먼저 소득이행변수를 이해하기 위해 성명재(2005)의 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소개한다. 그의 연구에서는, 동일 연령층 내에서 금기 가구소득의 상대위계수가 p-백분위수라면 해당 연령층 내에서 다음 기 소득의 상대위계수도 평균적으로 p-백분위수라는 가정하에서 소득이행규칙을 설정하고 그 매개체로서 소득이행변수를 채택하였다. 소득이행규칙에 의하면 다음 기의 소득은 p-백분위수 소득을 중심으로 일정한 확률분포를 가지면서 실현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begin{aligned} \text{소득이행규칙: } Z &= \Gamma + Z^*, \\ \text{단, } Z &= \ln(\text{실현된 소득}), \\ Z^* &= \ln(\text{다음 기의 p-백분위수 소득}), \Gamma = \ln(1+\gamma), \gamma > -1. \end{aligned}$$

여기서 Z와 Z\*는 평균과 분산 등의 통계적 특성이 서로 동일한 분포를 가진다. 성명재(2005)에서는 소득분포가 안정적으로 자연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Z와 Z\*가 각기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Z\*는 현실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가상의 소득으로, 다음 기의 시점에서 소득자가 속한 해당 연령층 내에서의 p-백분위수 소득수준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이다.  $\Gamma$ 는 평균이 0인 일종의 오차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Z\*의 순서(order)를 바꾸어 Z의 분포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소득이동성에 대한 일고: 소득이행변수 분산의 변화 검증

제Ⅱ장에서 보았듯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빈곤탈출률과 빈곤진입률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이는 성명재(2005)의 연구에서 두 기간 사이의 소득이동성을 표시한다고 할 수 있는 소득이행변수( $\Gamma$ )의 분산이 작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위에서 설명한 소득이행규칙에 따르면 가상적인 소득 Z\*와 실현된 소득 Z는 통계적으로 동일한 평균과 분산을 가지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Gamma$ 는 소득분포의 외형적인 모습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소득자별 소득순위만 뒤바꾸는 역할을



통계적 관점에서 볼 때 1990년대 말과 2000년 이후 소득이동성은 하락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소득이동성의 하락은 실업률 상승 및 장기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다.  $Z$ 와  $I$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하고 양자의 합이  $Z^*$ 와 동일한 정규분포를 따를 뿐, 그 이상의 통계적 특성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다. 그런데  $(I, Z^*)$ 의 결합분포를 이변정규분포(bivariate normal distribution)로 가정하면 위의 조건을 그대로 만족시키면서도 통계적 추론이 훨씬 쉬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해지므로 상기의 분포를 가정하였다.

소득이행변수의 분산은 1999년 0.202에서 2004년 0.180으로 약 1/10 정도 감소하였다. 연속한 두 기간을 대상으로 '분산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해본 결과 1999~2000년 사이, 2001~2002년 사이, 2002~2003년 사이에서 유의수준 5%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산의 변화가 누적된 1998년과 2004년의 경우를 검정한다면 당연히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러므로 통계적 관점에서 볼 때 1990년대 말과 2000년 이후 소득이동성은 하락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소득이동성의 하락은 실업률 상승 및 장기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자연대수소득의 분산 추정결과 및 소득이행변수의 분산 변화 여부에 대한 가설검정 (한국노동패널자료 분석결과)

전표본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관측치수	4052	3791	3577	3711	3817	4120
소득이행계수 분산	0.693	0.666	0.662	0.651	0.597	0.566
소득이행계수 표준편차	0.833	0.816	0.814	0.807	0.773	0.752
소득이행계수   > 1.2 제외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관측치수	3651	3442	3227	3353	3474	3777
소득이행계수 분산	0.202	0.193	0.201	0.192	0.177	0.18
소득이행계수 표준편차	0.45	0.44	0.449	0.438	0.421	0.424
H0 : 전기분산과 금기분산의 크기가 같다.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가설검정 검정통계치		1.946	0.09	1.95	1.999	0.508

#### IV. 맺음말

소득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위기 이후의 특징을 들자면, 과거에 비해 상

대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빈곤율도 서서히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소득격차 및 빈곤율의 확대는 소득계층별로 경제활동의 결과가 비대칭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부진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이혼 급증 등과 같이 경제외적인 요인의 변화도 이와 같은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 빈곤율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아울러 시간 경과에 따른 소득이동성도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빈곤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비율도 조금 작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설검정 결과 이런 추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빈곤율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빈곤가구 가운데 향후에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빈곤율을 낮추고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이동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하는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KIPF**

빈곤율을 낮추고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이동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하는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종면·성명재, 「장기인력수급 추이에 따른 소득세원의 변화」, 연구보고서 03-02, 한국조세연구원, 2003(A).
- \_\_\_\_\_. \_\_\_\_\_, 「소득분포의 특성을 사용한 세대별 연령-소득 곡선(Cohort-Income Profile)의 도출」, 『한국경제의 분석』, 제9권 제3호, 한국경제의 분석패널·한국금융연구원, 2003(B).
- 성명재,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2-01, 한국조세연구원, 2002.
- \_\_\_\_\_,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 05-01, 한국조세연구원, 2005.
- 성명재·박기백, 「조세 및 정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내부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5.



# 정책토론회리포트

한·중 국제심포지엄

■ 금융제도 및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제도

\* 본 원고는 2007년 3월 29일~30일 양일간 한국조세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제도 및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제도」에 관한 한·중 공동 국제심포지엄의 주제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금융제도 및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제도

## 개요

2007년 3월 29일(목)

- 09:30~10:00 **개회사 및 축사**
  - **개회사:**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축 사:**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축 사:** 劉 佐 중국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
- 10:00~12:00 **Session 1. 금융제도 및 금융거래 현황, 향후 전망**
  - **사회자:** 이장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발표자:** 瞿 强 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교수  
한재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박기순 산업은행 동북아연구센터 센터장  
鄧遠軍 중국 북경시 국가세무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
- 13:30~15:30 **Session 2. 금융제도 및 금융거래 현황, 향후 전망**
  - **사회자:**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 **발표자:** 劉 佐 중국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  
오 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토론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金愛蘭 중국 흑룡강성 국가세무국 세수과학연구소 주임과원
- 15:30~15:50 **Coffee Break**
- 15:50~17:50 **Session 3. 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 및 과세제도**
  - **사회자:** 이진영 삼일회계법인 전무
  - **발표자:** 周懷世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사 부조연원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안경봉 국민대 교수  
龔輝文 중국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외국세수연구실 연구원

2007년 3월 29일(목)

- 10:00~12:00 **Session 4. 금융서비스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제도**
  - **사회자:** 劉 佐 중국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
  - **발표자:** 肖國富 중국 흑룡강성 국가세무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센터장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한만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張 衛 중국 흑룡강성 국가세무국 부국장
- 12:00~13:30 **폐회**



## Session 1.

금융제도 및 금융거래 현황,  
향후 전망

## 주제발표 요약

## 금융제도 및 금융거래의 현황 및 발전

瞿强 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교수

중국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계를 유지해오다 1978년 경제체제 개혁을 단행하며 시장경제로 흐름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금융부문도 경제적 변화에 따라 점점 시장 친화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중국의 금융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은행의 전문화를 통해 금융체계의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해졌다. 1984년 이전까지 중앙인민은행은 예금 및 대출서비스까지 수행했으나, 이후 상업은행 업무를 중국공상은행에 이관하여 중앙은행 고유 업무만 담당하게 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둘째, 상업은행의 시장화를 단행하여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였다. 2005년 이후 중국의 건설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이 차례로 상장하며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셋째, 금융시장의 규범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1995년에 어음법을 제정하는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넷째, 금융가격을 시장화하였다. 2004년에 중앙은행은 법정 예금 및 대출의 이자율 상한제도를 폐지하여 이자율을 자유화했으며, 2005년에 고정환율제도에서 시장공급 및 주요 무역대상국의 환율에 기초한 관리형 부동환율제도로 전환하여 환율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다.

다섯째, 금융감독 체계의 분화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과거 인민은행이 주식시장까지 관리 감독해 왔으나, 1992년 증권감독위원회, 1998년 보험감독위원회, 2003년 은행감독위원회가 차례로 설립되며 3관 분관 체제를 구축하였다.

여섯째, 금융업을 국제화하였다. 2006년에 WTO의 요구사항에 따라 외자은행의 인민폐 서비스에 대한 차별 등을 폐지함과 동시에 외국 금융기구의 중국 진출 제한제도를 완화했으며, 중국의 금융기구도 해외에 상장하는 등 국제적 금융교류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 현황

이러한 중국정부의 금융시장 개혁 및 개방 정책은 금융시장의 급속한 발전으로 나타났다.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식시장의 경우, 상해와 심천 두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1991년 109억 위안 규모에서 2005년 33,367억 위안 규모로 매년 20% 이상의 엄청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시장규모의 확대는 2005년 주식분치 개혁의 성공으로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화폐시장의 경우, 동종업종 콜거래금액이 1998년 1,978억 위안에서 2005년 13,000억 위안으로 연평균 31% 성장했으며, 은행인수어음의 인수잔액은 1995년 865억 위안에서 2005년 20,000억 위안으로 연평균 40%의 증가율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채권시장은 국제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회사채 발행규모는 매우 작은 상황이다. 2005년 채권시장의 총잔액은 GDP의 3% 수준으로 미국의 채권시장이 GDP의 20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낙후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원인은 정부의 감독이 엄격하다는 점과 법률적 환경 및 금융 기초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험시장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1980년대 이후 매년 30%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며 2005년 연간 보험료수입은 4,927억 위안, 보험 총자산은 15,225억 위안을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생명보험이 전체 보험료 수입의 74%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등 비생명보험 분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 중국 금융체제의 특징

정부의 개혁과 경제성장을 원동력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현재 중국 금융체제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은행 주도형 금융체제라는 점이다. 중국정부의 금융개혁이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옴에 따라 은행은 자금 유통의 중심적인 지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2005년 자금융자 점유율은 은행이 70%, 채권이 24.5%, 주식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은행집중도가 개선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자금 유통의 원천이 은행대출이며, 자본시장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국유기업을 위주로 하는 자금지원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다는 점이다. 금융개혁은 실물경제의 개혁보다 뒤처지고 있어서 비록 은행이 신탁대출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정부의 견제를 받고 있다. 계획경제체제의 색채와 소유권 경시의 영향하에서 대부분의 자금이 비교적 낮은 원가로 국유기업에 할당되고 있다. 2003년에 국유기업은 은행대출과 주식, 채권시장 자금의 60%를 사용하였으나, 국민생산총액에 대한 공헌은 31%에 불과했다. 반면 비국유기업은 40%의 자금으로 대략 70%의 국민생산총액을 담당했다는 측면에서 국유기업으로의 자금 할당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문제점 및 개선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의 금융 개혁과 발전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개선방향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은행의 내부 지배구조 문제이다. 중국의 은행은 국유주식 및 지방정부의 지분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의 행정지배 및 지나친 간섭하에 놓여 있게 되어 저효율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국 정치체제 개혁이 낙후되어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문제 해결에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둘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문제이다. 자본시장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국유기업의 자본조달 장소로 여겨져서 발전이 지체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은행업에서의 비효율적 자원 배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시장도 발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셋째, 정부의 과도한 관리통제가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이다. 중국의 금융시스템 개혁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안정이다. 안정을 위하여 중국은 금융업에 많은 통제를 가하고 있다. 최근 통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리다. 통제 완화의 지연은 표면적으로 안정을 이루어낼 수 있으나 장기적인 효율의 손실 및 금융위험의 집적을 초래하여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 물론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전한 상황이라도 정부의 시장 간섭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간섭이 직접적인 행정규제가 아닌 경제적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 간섭은 합리적 경제 활동에 왜곡을 불러 일으켜 결국 자원 배분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금융업의 문제들이 두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경제의 고도 성장에 기인하므로, 높은 경제성장 기간 동안 금융 개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내부 지배구조 문제가 심각하여 경영실적이 좋지 않고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더라도, 중국의 은행업에 금융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않는 것은 현재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의 빠른 성장은 머지 않은 시점에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그 때에는 금융 개혁을 이루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도 경제성장기가 끝나기 전에 경제성장에 준하는 금융 발전을 이루어내야 한다.

### 토론 요약

##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시장과의 조화로운 발전이 중요

박기순 산업은행 동북아연구센터 센터장

瞿교수의 발표내용에도 언급되었듯이, 시장과 중개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하고 효율적인가보다는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시장과의 조화로운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자에 맞는 금융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금융시스템이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금융중개 위주의 중국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의 빠른 발전은 비교적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하에서는 은행, 채권, 주식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근 자본시장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은 중국의 금융산업에 있어서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은행부문이 부실채권 정리나 외국인 투자자 영입을 통해 대형화와 건전화를 이루면서 체질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그동안 중국의 은행부문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부실채권 처리였지만,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들은 1999년 이후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부실채권 이관과 일부 자체 처리 등을 통해서 부실채권 비율을 상당히 개선시켜 왔다. 둘째, 중국의 은행산업은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통해서 성공적인 증시 상장을

이룩하면서 성장 기반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통해서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선진 금융기법과 리스크 관리기법 등을 전수받고 있으며 IPO 발행가격도 높게 측정되고 있다. 셋째, 중국 은행산업의 특징 중 하나가 인민폐 업무 개방에 따른 외자계 은행의 진입 확대인데, 중국정부는 그 조건으로 현지 법인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법인화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선발 외국계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막대한 중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중국계 은행들과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영업전략을 가지고 진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채권시장은 전체 용자액 가운데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채가 37%, 중앙은행 어음이 31%, 그리고 중국의 개발은행 등 정책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가 27%이다. 따라서 3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에 회사채 비중은 4%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회사채는 기업의 자금조달수단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회사채 시장은 회사채의 순조로운 발행을 위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 중 하나가 감독기관의 감독분할 문제, 발행에 따른 장기간의 소요시간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은 용자총액 가운데서 비중이 10%에 불과하지만, 2006년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2005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43%에 달하였다. 중국의 증시 급등 배경으로 비유통주의 유통주화 등 증권시장 개혁이 완료되고, 상장사의 실적이나 가치가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투자 가치가 상승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2007년 중에는 홍콩 증시보다 중국 증시의 IPO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식시장을 종합하면 중국의 주식시장은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중국경제의

양호한 기초 경제여건, 기업의 직접금융 수요 증가, 중국의 자본시장 육성 의지 그리고 외국계 자본의 유입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기업개혁 등으로 민간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은행대출 활용도는 국유기업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이에 따라 홍콩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대표적 민간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업확장 단계에서 외국계 투자자들 특히 사모투자자들(PEF)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오늘날의 중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왜 성장 전망이 좋은 유망 자국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외국투자자에게 맡기고, 상장까지 외국에서 함으로써 대부분의 자본이득을 외국인에게 내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효율적 자금 배분 구조를 갖추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중국과 한국 모두 우수한 금융인력 배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불량채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은행에는 아직 많은 정부자금이 있다. 부실채권 처리는 은행이 경영을 통해 개선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부문으로 이관한 것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해외 상장문제 또한 중국 내부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 투자자는 국내 기업 경제성장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자는 이성적이고 지분 분치로 인해 여러 테스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국내 시장이 좋지 않아서 해외로 IPO하게 된다는 것은 국내에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의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 주제발표 요약

## 금융제도 및 금융거래의 현황과 과제

### 〈발표자 답변〉

한재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瞿强** 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교수

금융기관 중개와 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많이 연구되어 왔다. 시장과 중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둘 다 핵심적인 도구라 말할 수 있다. 거래비용과 기술에 따라 자본시장은 전체적인 금융시장 개혁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 은행이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심이 크다. 또한 시장은 중개업무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더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중개 주도시장에서 어떻게 자본시장을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 지난 50년간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크게 성장하였다. 우리 금융산업은 1970년 전후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운용에 따라 개발금융체제로 변모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금융자율화와 대외시장 개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97년 이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개혁이 추진되었고, 최근까지 우리의 금융산업은 크게 성장하여 대형화 및 겸업화, 개방화와 인터넷 뱅킹 등 IT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에도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에는 몇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의 지속, 주식과 채

권시장과 같은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상,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확대, 금융규제 완화와 재규제 도입 등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과제

이러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들로는 크게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관련 역량 강화,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유도, 직접 금융수단 육성,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 금융투자회사의 육성과 금융감독 선진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로, 은행의 대출심사 능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은행의 대출 행태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이다. 한편 은행은 대기업의 대출수요 감소와 가계대출 증가세의 둔화 현상으로 새로운 자산 운용처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은행의 대출심사 능력의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인프라의 지속적 개선, 합성CDO(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과 같은 자산유동화 수단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두 번째 과제로는,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유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문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이나 예금 및 현금 등의 안전자산 위주로 상당부분을 보유하여, 투자형 금융상품의 보유 비중이 상당히 낮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가계 자산이 주식 및 펀드 등의 투자형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장기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의 간접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펀드의 대형화와 장기물 비중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다양한 장기투자상품 개발과 펀드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직접금융수단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산업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직접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전통적인 주식 및 채권 등의 거래 활성화 외에도, 주식연계채권, CDO 등 자산유동화증권 등과 같은 직간접 투자상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높은 투자위험이 수반되는 혁신·모험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수단으로 사모투자펀드(PEF: private equity fund)와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등도 고려해 볼 만한 대안으로 보여진다.

넷째,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민간신용보증회사의 도입·육성,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연기금 투자 비중 확대 및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권 딜러에게는 의무에 상응하는 유인책 마련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투기등급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들 상품에 특화 가능한 기관투자자집단 육성, 회사채 관련 정보공시 시스템 구축과 신용평가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MBS 발행·유통 촉진을 위하여 주택금융공사 등이 일정부분 신용을 공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유동화전담기관들은 장기, 고정,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도 이러한 담보대출의 표준화도 필요하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육성과 금융감독 선진화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6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여건 조성 이외에도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은행계열 투자은행의 육성 방안과 독립적인 소형증권사의 특정업무에 대한 특화 방안, 금융거래의 하부인프라 구축의 하나인 금융감독의 개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도 자율화와 상시 감독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절충하여 정립되어 가고 있다.

## 토론 요약

## 한국 금융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鄧遠軍 중국 북경시 국가세무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

세계 각국의 상황으로 볼 때 다양한 금융제도는 공통점과 다양성이 있다. 금융제도의 발전 과정은 차이가 나는데, 다음과 같은 요소에 원인이 있다. 기초적인 요소로 예를 들어 다양한 국가의 정치·경제·문화·법률제도 등에 기인한다. 제도경제학 원리로 볼 때 경로 의존성, 국제환경 경제글로벌, 지역경제 단일화도 그 배경이다.

한국의 금융제도는 지난 50년간 큰 변화가 있었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은 역사적 색채를 아직 지니고 있다. 한국은 규제금융의 색채가 짙다. 그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1980년대 이후 한국정부가 은행의 비국유화 및 경영자율화를 추진했지만, 실제 상황을 볼 때 은행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금융의 자유화와 국제화가 대세이지만,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아직도 자유화 및 국제화가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간접금융자의 우위가 분명하다. 이런 특징도 역사가 오래된 것이다. 1960년대 이후부터 채택하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자본시장의 규모가 작았다. 외환위기 이후 개혁의 핵심이 은행업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자본시장이 좀더 발전해야 할 것이다. 과거 동아시아 국가는 고저축·고투자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간 내에 경제 고도성장을 하는 데는 기여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투자수익률이 저감되고,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저해된다. 고저축·고투

자의 배후를 보면 많은 외채가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투자가 저축보다 크기 때문이다. 외형 성장모델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후발국가는 자본시장·노동시장형 상품으로 치열한 경쟁중이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동아시아의 금융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금융의 자유화·민주화를 이루어 왔고,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한국의 정부주도하의 외환형 전략이 시장의 매커니즘을 부각시키고 모호한 경제전략으로 변형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한국이 수입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제는 수출의존도가 높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도 하나의 딜레마이다.

한국의 금융자원이 여전히 가족형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역사문화적 원인이 있는데, 한국 기업은 대기업이 가족형이 많고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금융자원의 배분에 있어 정부의 유도하에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외환위기 또는 현재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현 정권도 재벌개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다. 지금은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금융하에서 지금까지 금융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여전히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도는 경제 발전에 따라 완급을 결정하여 왔다. 한국에 대한 외자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기도 한다. 외국인의 입장에 보았을 때, 한중 양국의 상황을 보면 동아시아 문화권 그리고 동일한 목표 과정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금융거래가 유사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금융발전이 중국보다 앞서 있고 금융거래가 IMF 이후로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중국도 한국의 귀감이 될 만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발표자 답변>

한재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50년이란 기간은 금융부문이 발달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보니 정부규제가 많았다. 채권시장의 경우도 1990년대 후반부터 PB, 채권딜러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빠른 시일 안에 활성화하려다 보니까 정부 주도로 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도 금융산업 전반이 정부 주도하에 있다는 지적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방향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민간과 정부를 포괄한 시장참가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노출되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논의의 상당 부분 초점이 투자은행(IB) 출현에 맞추어져 있으나 이 또한 정부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실현 가능성은 낙관적이지 않다. 또한 투자은행업이라는 것은 국가의 힘이나 선진국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부분이 많은데, 아직 우리의 실정은 이들 서구 선진국의 금융네트워크에 마찰이 없거나 대등한 수준으로 편입되어 가기에는 미흡한 상태인 것 또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이다.

최근에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질문은 저로서는 답하기 곤란한 문제이다. 짧은 소견으로 그간 한국의 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동반 성장한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품을 수출하는 형태로 성장해 왔고, 예전에 비해서는 이러한 노동집약적 수출행태를 벗어나고는 있으나 최근에도 핵심 기술부품은 수입한 뒤 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00년 이후로 반도체 및 가전회사인 삼성과 자동차회사인 현대와 같은 대기업의 수출품 중에서 국산부품 비율과 수출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기존 중소기업의 가공무역 부분을 상당 폭 대체해 나가고 있다. 이 결과 원재료 관련 수입은 상대적으로 둔화된 반면 수출액은 상대적

으로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Session 2.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주제발표 요약

중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劉 佐 중국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

현행 중국의 금융소득과 관련하여 기업소득세, 외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라는 세 가지 세목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소득과 관련한 과세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조세부담이 너무 높고 둘째, 금융소득과세제도가 과학적이고 규범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기업 및 개인소득의 세제, 투자이익 및 파생상품의 세제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금융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

먼저 중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조세부담을 들 수 있는데,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소득세의 높은 법정세율과 개인소득세에서 적은 공제항목과 낮은 공제기준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내·외자금융기업의 소득세제에서 손금산입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데, 내자기업이 외자기업에 비

해서 엄격한 손금산입규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내·외자금융기업에 대한 적용 세율이 상이한데, 내자금융기업에 적용하는 세율이 외자금융기업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높다. 따라서, 내·외자금융기업을 다르게 처리하는 세법규정으로 인해 조세부담 차이가 야기하고 있다.

셋째, 내자금융기업의 소득세제도와 기업회계제도가 차이가 커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넷째, 세법에 규정한 대손준비금의 적립규정과 은행의 적립규정 차이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이윤결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다섯째, 개인소득세에서 기납부한 기업소득세를 공제해주지 않아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이윤을 배당 또는 이익분배 등의 형식으로 개인에게 분배하는 때에 일반적으로 20%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고, 기납부기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규정의 차이로 인해 불공평한 조세부담을 초래하게 되는데, 기업과 개인의 투자이익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이 다르고(주식의 양도차익), 다른 형식의 투자이익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이 다르고(주식의 양도차익과 예금이자소득), 같은 형식의 투자이익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이 다르고(예금이자소득과 국채이자소득), 내자기업 및 중국인과의 외자기업 및 외국인의 투자이익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일곱째, 원천징수 규정이 국제적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과세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금융소득과세의 과세베이스가 좁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 금융소득 과세 관련 개선방안

이러한 중국의 금융소득 과세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소득세제를 개혁하여 통일된 기업소득세제를 수립하고 세율을 인하해야 하고, 재무회계규정을 반영한 손금산입규정으로 과세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상업은행의 대손준비금 적립방법을 개선하여 은행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내·외자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이 공평하도록 조세우대규정을 통일시켜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따라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개선해야 한다.

둘째, 개인소득세제를 개선하여 종합과세 중심으로 개인소득세제를 운영하고 세율의 인하 및 중복과세를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손금산입항목을 조정하고, 자본손실을 자본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개인의 각종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 및 면세규정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금융과생상품 운용의 세 가지 단계를 감안한 과세제도를 도출해야 한다. 금융시장에서의 운용은 일반적으로 발행, 거래, 이익회득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세법은 이러한 세 가지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소득과세의 공통성과 금융소득과세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 토론 요약

## 세부담의 형평성 확보가 우선순위 높은 당면과제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중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에 관한 연구”는 금융소득과 관련된 중국의 조세제도를 기업과 개인 부문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고 현행 세제가 갖는 문제점

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① 높은 조세부담과 ② 비과학적이고 비규범적인 세제를 문제점으로 규정하였는데, 특히 절대적 세율수준이 야기할 수 있는 국제 조세경쟁의 문제와 내·외자기업 간 차등이 야기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개선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인소득세에 종합과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시급히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들 개선방안을 실행하기에 앞서 먼저 검토해 봐야 할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다. 경제적 충격이나 납세자 적응 등을 감안하면 순차적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외국인 투자 동향이나 정부 세수입의 변동위험 등을 고려할 경우 즉각적인 세율수준 조정보다는 기업형태별, 소득종류별 세부담의 형평성 확보가 좀 더 우선순위가 높은 당면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부문의 세부담 형평성은 신기업소득세법에 의해 내·외자기업 간 소득세를 격차가 해소됨에 따라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내·외자기업을 불문하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평하며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한 세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간 세율 격차로 인해 나타나는 이중과세 문제는 50% 감면규정에 의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보다 적극적인 투자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제도 자체가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다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생각한다.

개인부문의 경우 개혁의 요구가 내부 납세자에 한정되어 있어 기업부문에 비해 약한 편이며 이로 인해

개혁의 속도도 느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부문에서 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임금 및 급여·노무보수·생산경영 소득 등은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차등화되어 있는 현 제도를 통일한 후 종합누진과세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 측정시 사용되는 기간 개념을 월 단위에서 연간 기준으로 시급히 조정하는 한편 과세기간 동안의 소득 및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상당히 많은 비과세·면세를 허용하고 있는데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 소득 등에 대해 누진과세를 시행할 것인지 자본 이동성을 고려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중국 금융시장이 발전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누진과세에 따른 현행 소득세율 수준의 높은 세부담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낮은 수준의 비례세율 부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현물시장에 대한 과세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고려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발표자 답변〉

劉佐 중국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

전병목 박사는 중국의 소득세제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모든 과제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예를 들면, 기업소득세 측면에서 내·외자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통일하고 개인소득세 측면에서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순서로 세제개혁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소득세제 개선에 있어 세율 인하는 그 방향은 맞지만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이룩하여 재정수입에 여유가 있을 때 세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때 함께 고려해야 할 요인이 조세징수 측면에서의 형평성이다.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세부담이 다르다면 불공평한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발표 요약**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오 윤 서울시립대 교수

세계 각국은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세계의 조세개혁 방향이다. 첫째, OECD 국가들은 소득세제 개혁을 위하여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과세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EU 국가들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셋째, EU 국가들의 최근 경향과 최근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르면 금융소득에 대한 거주지국 과세원칙이 확산됨을 알 수 있다. 넷째, 세대간 자산의 무상이전 세제는 완화 내지 폐지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의 과세제도는 다음의 문제점

이 있다. 첫째, 금융소득 종류 간 외형적 과세 형평성과 실질적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즉 자본이득(유가증권 양도차익 등) 중 비과세되는 항목이 많다. 또한, 금융소득은 근본적으로 변형이 쉬우며 구분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세율이 다르다. 채권양도소득의 비과세로 납세자 간 과세 형평성이 저해된다. 금융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자본이득으로 보지 않는다. 인적회사의 주주는 사실상 사업소득자임에도 배당의 형태로 소득을 실현한다.

둘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과세 형평성은 달성하기 어렵다. 하지만, 같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셋째, 현재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기초로 투자사업 간 세후수익률의 우선순위가 세전수익률의 우선순위와 달라지지 않게 조정(자본수출 중립성)되어야 한다. 즉, 자본이 사용된 나라에서는 세부담이 같으나, 각 나라별로는 세부담이 다르지 않게 조정하여 조세가 없는 세상과 비교하여 조세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

넷째,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유형별 포괄주의적인 규정의 해석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복합파생상품거래 등 새로운 금융거래가 과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차익거래나 복합금융포지션을 통한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의 조세 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개혁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의 위치에서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재정 비중의 증대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문화적 전통으로 보아 과세 형평성이 중요하다. 인터넷 등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비중이 증가하는 금융소득과 국제적인 투자거래의 과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의 과세제도는 개선방안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득 종류 간 외형적 과세 형평성과 실질적 과세 형평성 증대를 위해서는 자본이득 중 비과세 항목을 감소시켜야 하고 금융자산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정책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채권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의 양도차익을 과세하며 금융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자본이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적 회사의 경우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거주자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은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주식 이외의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차익 과세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을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자본수입 중립성). 즉, 국외소득 면제방식은 어느 나라 자본이든 자기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과세하여 조세가 없는 세상과 비교하여 조세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나 자본을 사용한 국가 안에서는 자본의 원천이 국외든 국내든 자국 내 사업간 우선순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넷째, 세법의 불확실성은 법규화와 해석론의 발달로 대응해야 한다. 법규화는 법원의 판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국세청이 구속력 있는 예규를 발하는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합파생상품거래 등 새로운 금융거래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세법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납세자권의 보호제도의 개선에 힘써야 한다. 한편,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자본이득과세제도를 개편하며, 파트너십과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외소득면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전예규제도의 도입 및 법 해석 장치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 토론 요약

### 자본이득에 비과세하면 자본시장 왜곡 초래

金愛蘭 중국 흑룡강성 국가세무국 세수과학연구소

오운 교수의 논문을 통해 한국의 금융소득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한국 금융소득세제의 현황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한국의 현행 금융소득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금융소득 유형 간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세부담 격차, 불합리한 비과세·감면, 금융소득 및 근로소득 과세의 불균형, 국외금융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파생금융상품의 조세회피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오운 교수는 유가증권 양도차익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할 것을 주장했는데, 양자 모두 자본이득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자본손실 공제 후 과세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일 과세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지배당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로 인해 자본시장 왜곡이 초래될 것이다.

그 밖에도 오운 교수는 정책상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세율을 설정할 경우 다른 종류의 금융소득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금융소득은 본질상 구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자와 배당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점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며 중국의 개인소득세제 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현행 개인소득세제는 세부담(특히 한계세율)이 너무 높은 데다 조세체계가 아직 규범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조세제도와 재무

회계제도의 연계가 부족하며 개인소득에 대한 중복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금융서비스의 경우 조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의 확대와 더불어 다국적은행들의 중국 진출이 늘어나면서 독자 법인이 아닌 지사 형태로 설립된 외자은행의 과세소득 확정에 있어 세무당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화 시대의 진전으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과 관련하여 매일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세무 분야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의 모든 문제는 향후 중국 세무당국이 부딪치게 될 과제로서 심층 연구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윤 교수의 논문은 향후 금융소득세제를 연구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중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劉佐 소장의 지적대로 현재 45%에 달하는 중국의 높은 개인소득세율을 35~40%로 낮추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단순히 세율만 인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정보의 확보와 세무행정 측면에서의 발전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보기 바란다.

한편 劉佐 소장은 중국에 진출한 외자은행 지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음을 토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OECD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이에 맞추어 국내 조세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Session 3.** 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 및 과세제도

**<발표자 답변>**

오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실질적인 형평성 측면에서 소득종류 간의 형평성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본 논문을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경제 전체 그리고 금융정책을 포함한 다른 정책들과의 조화를 모색해 가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소득세제 개선을 모색할 때는 형평성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세개혁의 방향을 참조하여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세제도의 경

**토론 요약**

**중국의 금융파생 거래 현황 및 조세문제**

周懷世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사 부조연원

현행 중국의 금융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규범적 문건 중 중요한 두 가지 문건은 금융기구의 파생상품 거래업무관리에 관한 잠행방법(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과 기업회계준칙 제22호~24호(재경부)이며, 일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고 있으나,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소득세 처리에 대하여 특별하고 완전한 전

문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업재무회계 규정에 부합되면 일반적으로 세무기관의 인정받을 수 있다.

중국의 금융파생상품 거래는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으나 지속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시킬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금리자유화 개혁의 가속화에 따라 금융파생상품 거래는 은행 간의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근래의 주식분치개혁 이후 개인 투자시장에서 주식옵션은 매우 큰 환영을 받았다. 세계거래소연합회의 주식옵션 거래에 관한 통계자료에는 홍콩이 가장 큰 옵션시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의 주식옵션 거래액을 합칠 경우 중국의 옵션거래 규모는 홍콩을 초과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전문가들은 금융선물거래시장을 건립하여 금융상품 거래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기업회계준칙에서의 금융파생상품 처리

2007년 1월 1일 시행되는 신기업회계준칙은 금융업무(금융파생 거래 포함)를 헤지와 트레이딩 두 부분으로 구별하고 파생상품의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레이딩 거래는 헤지거래가 아닌 모든 거래로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은 당기손익(투자수익)으로 계상한다. 헤지 거래는 헤지회계방법의 5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경우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의 변동은 자본계정으로 계상한다.

첫째, 헤지 거래 시작시 기업은 헤지 관계 및 리스크관리목표와 헤지계획에 대한 정식서면 문건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당해 헤지 거래의 예상 정도가 유효하고, 위험관리계획과 부합되어야 한다.

셋째, 예측 거래에 대한 현금흐름 헤지에 대하여 예측 거래는 반드시 발생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넷째, 헤지 거래의 유효성은 신뢰성 있게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은 반드시 GPT지의 유효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중국의 기업회계준칙에는 대량의 금융 거래(대부분의 파생금융 거래가 포함)는 모두 공정가액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가액이란 공평한 거래 중에 거래의 쌍방이 자원하여 자산을 교환하거나 채무를 청산하는 때의 금액으로 공개시장이 존재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액은 반드시 공개시장 중의 공개가격을 이용해야 한다. 반면 공개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거래 상황과 유사하고 각 거래 상대방이 최근 시장거래에서 사용한 가격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환산법과 선물평가모형 평가방법으로 공정가액을 확정해야 하며, 시장참여자의 보편적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발전과 경제 글로벌화의 심화로 중국기업과 외국과의 해외파생 거래(대부분 스왑거래)에서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국제조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의 소득세원천징수 처리규정을 소개한다.

첫째, 중국의 국가는행이 국경 외로 자금을 차입한 후 외환스왑 거래를 하는 경우 조세우혜정책규정에 따라 우대이자율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면제된다.

둘째, 중국 국경 내의 기업과 외국기업의 용자업무에 대한 스왑 거래시 외국기업이 국경 내에서 취득하는 해외스왑 거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잠정적 면제한다.

중국은 향후 해외파생 거래에 관련 세무처리규정을 개선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파생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토론 요약

## 소득의 성격과 소득 실현시기 결정에 대한 의문

안경봉 국민대 교수

파생상품의 과세와 관련하여 개인소득세가 관련되는데, 제일 먼저 소득의 성격이 문제가 된다. 개인의 경우 금융스왑에서 얻는 소득이 이자인지 배당인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확일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최근에 기초자산과 파생상품을 합성한 제3의 합성 파생금융상품은 구성 요소가 매우 복잡하여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엔화스왑의 경우 선도계약에 따른 수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가 없었기 때문에 예금과 선도계약을 떼놓고 보면 과세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재경부 과세당국에서는 유권해석으로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예금과 선도계약을 하나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합성파생금융상품을 과세하기로 해도 그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금융파생상품으로부터 얻는 원천소득은 과세하지만, 증권거래법이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거래를 하면 거래에 대한 손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받는 이자소득을 다른 소득 유형으로 변경하면 현행 세법상 과세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에 이러한 회피행위에 대해 일반적 원칙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별도의 개별 원칙이 있는지 궁금하다.

중국의 소득세제는 포괄주의방식인데, 자본이득과 경상이득을 특별히 구분해 취급한다면 자본이득과 경상이득의 구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질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소득 실현시기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세법상 규정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재경부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처리하고, 결제액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세무처리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한편 우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매 목적이든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이든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결제일이나 이행일에 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소득의 실현시기를 조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

## 〈발표자 답변〉

周懷世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사 부조연원

소개한 문건에 의하면 국제적인 스왑거래에서 일어난 자금이동의 성격에 대해서 국가세무총국에서 국제법의 문건형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인 스왑거래 방식에서 중국거주자가 지급하는 이자를 이자로 보지 않는다. 즉 자산의 교환으로 본다는 것이다. 만일 조세회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고 또다른 규칙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스왑거래의 거래자의 기초거래와 관련이 있다면 이를 기초자산의 파생거래로 본다. 즉 단독의 거래로 보지 않고 하나의 계약으로 보게 된다.

파생상품의 소득 실현시기와 관련하여 시가에 따른 조정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금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므로 일부 명확하지 않은 규정이 있다. 우선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헤지인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헤지로 본다면 기본적인 준

칙은 일반적인 파생거래로 보아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헤지 거래를 한 파생상품과 트레이딩 상품을 나누어 회계처리한다는 것이다.

현대 회계준칙은 공정가격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경우 정부의 많은 규제를 받는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시가에 따라 조정하면 거래일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한다. 거래일을 확인한 다음, 연도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 상장회사에 대해 반년에 또는 분기에 한번 평가하기도 한다. 이미 거래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액을 기말에 조정하게 된다. 이러한 회계처리준칙은 한국과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자세한 세무처리 규칙은 없다. 회계준칙은 정부에서 공표한 것이고, 세법 규정 전까지는 회계처리기준이 쉽게 그 기준으로 인정받게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을 통해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일부 시가평가기준을 도입하였다.

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방안

첫째, 법인세법에서 법인세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문제점은 위험회피 거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기초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평가한 과세연도에 평가손익을 반영하나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포함되지 않아 거래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거래 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괴리 또한 문제가 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시가기준을 채택하는 등 불일치를 축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세에서 교육세 부과대상을 파생금융상품의 수익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험회피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득세법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성공적인 도입과 활성화라는 정책목표하에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은 비과세라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과세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덧붙여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를 도입할 때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 소득통산, 자본손실, 소득인식시기 등이 고려하여야 한다. 즉, 현물시장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는 현물시장에서의 과세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조세의 중립성이 유지되며 형평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자본손실에 대한 과세취급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위험회피거래와 차익거래는 현물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손실공제를 허용하고 투기거래의 경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 주제발표 요약

### 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 및 과세 문제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6년 주가지수 선물이 장내거래를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된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10여년이 경과된 현재에는 그 활용도와 거래규모에 있어서 주요 금융상품의 하나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문제에 있어서는 유치산업 보호의 차원에서 도입 당시 적용하였던 파생금융상품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치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각 세목별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제

투자손실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손익통산시에 대한 고려시에는 현행 열거주의 소득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손익통산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연계거래의 식별 및 소득의 장단기 성격에 대한 구분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인식시기는 결제기준 또는 현금기준, 시가기준, 발생기준 등이 있는데, 이론적인 관점 뿐 아니라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절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물시장의 양도차익과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단행된다면 오히려 현물시장과의 균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 해결책으로서 거래세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토론 요약

###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필요

龔輝文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외국세수연구실 연구원

중국과 한국은 금융시장과 금융거래에서 파생상품 발전 과정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수제도 특히 소득세가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중국도 개별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원칙에 따라 법인세를 처리한다. 회계준칙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만, 세수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세수정책도 회계기준을 중장기적으로 따라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회계기준은 국제관례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한국은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중국도 그러하다. 주식양도차익은 중국도 과세하지 않고 있다. 거래에

있어 기초자산에 대해 징수하지 않고 부대상품인 파생상품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금융자산 거래에 있어서 개인소득에 대해 징수하기 전에 과도적인 단계로 거래세 도입이 어떠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있고 중국은 주식양도에 대해 인화세를 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처리 배경은 공통점을 가진다.

한국의 파생상품 거래시장은 중국보다 앞서가고 있다. 중국은 많은 시도를 했고 많은 실패 경험이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자본시장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파생상품은 발전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수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국제회계기준의 발전은 현재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헤지와 트레이딩으로 통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데, 회계에서는 이를 구분하며 국제적으로는 모두 공정가액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수정책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거래와 관련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우선 세금을 징수할 때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탈세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하고, 자금유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세수와 관련된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정책을 어떻게 규명하고 확정할 것인가도 문제되는데, 파생금융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서로 모순되는 점과 조화되는 점도 있다. 세수정책을 잘못 책정하면 버블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기관은 리스크 회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발표자 답변〉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였을 경우의 과세문제를 질문하셨는데, 기관으로서 투자하는 것이 아닌 한, 직장에 다니는 여부는 상관없이 개인 자격으로 투자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에는 파생상품 관련소득에서 소득세나 거래세 등 세금을 내는 경우는 없다.

또 한 가지 소득의 성격과 관련된 코멘트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열거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이 현재는 어떠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면 마땅히 이자나 배당으로 과세하여야 하는데, 복합적인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나 배당으로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의 성격문제가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파생상품 거래소득에 대한 소득세제를 도입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에서 그 성격을 자세히 규정하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복합적인 파생상품의 거래 속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실무적으로 반드시 쉬운 작업은 아닐 수 있다.

Session 4.

금융서비스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제도

주제발표 요약

금융서비스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제도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과거에는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금융부문을 직접 통제하였기 때문에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정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현행 금융서비스 소비세 과세의 문제점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세로는 부가가치세, 교육세, 증권거래세의 세 가지가 있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현행 소비세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일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세부담의 집적효과(cascad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세 범위가 상당히 넓다.

둘째, 모든 금융서비스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서비스는 면세하고 다른 서비스는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공제 과정에서 임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셋째, 금융기관이 비과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과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그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제도가 금융기관의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면제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교육세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와 교육세가 모두 면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EU에서 검토 중에 있는 현금흐름에 의한 과세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기업에게 제공하는 금융·보험서비스의 경우 교육세를 과세하는 현행 과세체제가 세부담이 더 큰 반면 가계에게 제공하는 금융·보험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과세체제가 세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기업에게 제공한 서비스와 개인에게 제공한 서비스로 구분하여 차별적인 과세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현행 과세체제를 유지하되 면세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합리적인 공통매입세액안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 간의 형평성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양자간에 과세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현행 과세체제를 살펴보면, 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반면 투자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도관으로 보아 배당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국내투자펀드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반면 해외투자펀드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어 양도차손익의 크기에 따라 국내투자펀드와 해외투자펀드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내국세액의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원천치 세율이 14%를 초과하면 투자자가 지게 되는 최종적인 세부담이 원천치 세부담과 같게 되어 조세가 자본수출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다. 뿐만 아니라 투자펀드가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셋째, 납세자가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외국투자펀드 소득에 대해 국내과세 이연을 통한 조세회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발생 소득의 재투자시 또는 펀드 전환시 소득의 국내 환수 여부에 불문하고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상 현지 발생소득의 재투자 또는 펀드 전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투자자와 해외투자자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자본과세 체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중과세 조정과 관련하여 원천치 세부담을 국내 세부담보다 낮춰 자본수출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OECD의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되,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조약의 제·개정을 통해 펀드가 조세조약 적용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제한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국인이 외국에서 설정한 투자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국내 펀드가 외국에 자회사인 투자펀드를 설립하여 자산을 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과세이연과 관련해서는 FIF(Foreign Investment Fund)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산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자산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자산보유자, 유동화전문회사, 투자자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산보유자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조세포탈 또는 압류를 면할 목적으로 유동화 자산을 양도하는 등 사해행위에 대해 조세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도의 방식)에서 규정하는 양도방식과는 다른 방식에 의해 보유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매매 또는 진정한 양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국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 등에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유동화전문회사를 부분적인 도관으로 인식하여 지급배당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과세제도 대신 유동화전문회사를 완전 도관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한시적인 감면조항을 영구적인 감면으로 전환하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자산유동화회사를 제외하며, 초과배당으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공제금액의 한도[Min(배당결의금액, 배당가능금액)] 신설 또는 청산으로 인한 미수배당금 대손금 부인 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유동화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하거나 저율분리과세할 필요가 있다.

### 토론 요약

## 양국간 조세관련 교류 및 의견교환 활성화 필요

張衛 중국 홍콩강성 국가세무국 부국장

“금융서비스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제도”는 한국의 현행 금융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의 과세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 및 한국에서 시행중인 각종 제도의 실제 운영효과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연구고찰을 통해 금융세계상의 결함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완벽한 금융세제의 구축을 위한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의 금융세제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중국의 향후 금융세제 개혁 및 개선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중국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기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최근 중국은 금융 분야의 많은 영역에 있어 국외에 자본시장을 개방하였으며 금융유통의 글로벌화 추세에 적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금융소득 관련 과세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또한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 간의 조세관련 국제교류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이웃으로서 한국은 경제정책 면에서 중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객관적이고 엄밀하며 공정한 학문연구 이념은 중국이 배워야 할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번 심포지엄과 같은 국제교류를 더욱 강화

하여 두 나라의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음으로써 양국 경제의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한국과 중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지만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비록 연구 체제는 상이하지만 공정하고 평등한 조세제도에 대해 연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각자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중국 국가세무총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흑룡강성과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다음번에 중국을 방문할 때는 흑룡강성에도 꼭 들러서 많은 지도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주제발표 요약**

**중국의 금융서비스 및 금융기구의 조세문제**

肖國富 흑룡강성 국가세무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

중국에서 금융서비스 및 금융기구와 관련된 주요 세목으로는 영업세, 인화세, 교육비부가를 들 수 있다.

**세목별 주요 내용**

영업세란 영리사업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영업세 조세수입이 금융업 조세수입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영업세의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 금융보험업 영업세의 세율은 5%이지만 농촌신용사 개혁시범지역에서는

3%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인화세는 경제활동과 경제거래 중 문서를 작성하거나 증빙을 수취하는 때에 징수하는 세목으로, 납세의무자에 금융업, 보험업 및 증권업이 포함된다. 인화세 세수는 중국 세수 총액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교육진흥사업 목적으로 과세하는 단독 교육세는 없으나, 교육비부가를 징수하고 있다. 각 단위와 개인이 실제납부한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의 세액을 과세대상으로 과세하고 있다. 금융업은 영업세의 납세의무자로 납부한 영업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3%의 부가율로 과세되고 있다.

현행 중국의 금융서비스 및 금융기구 과세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조세부담의 편중, 통일되지 못한 세제규정, 좁은 과세베이스, 중복과세 및 불완전한 법제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의 금융업 영업세 세율은 5%로서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또한 영업세 세액에 따라 도시유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를 부가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5.5% 이상의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증권거래인화세의 세율은 0.1%에 불과하지만 매매 쌍방에 징수하므로 실질 부담은 0.2%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대부분 국가가 금융업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간접세의 방법으로 징수를 면제하는 것에 비해, 중국의 금융업 영업세와 증권거래인화세의 명의세율은 뚜렷이 높게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 내자금융기업은 영업세 이외에 도시유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를 납부하지만 외자금융기업에 대해서는 교육비부가는 납부를 면제하는 등 내자금융기업과 외자금융기업 간에 세제규정이 통일되지 않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구가 중국 국경 내에서 증권발행 및 증권거래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비금융기구와 개인이 유가증권 또는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1차시장의 투자행위, 2차시장의 자본이득, 장외거래, 증권의 상속과 증여, 특히 증권시장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채권시장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베이스가 좁고 금융신탁에 관하여 단지 특수신탁기금의 조세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 금융세제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은 중복과세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영업전액에 대해 영업세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의 중복과세문제가 있고 신탁과세에 있어서도 중복과세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현행 중국의 금융세제 법제화 수준은 비교적 낮고 잦은 조세정책의 조정으로 금융기업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 금융관련세제 개선방안

상술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금융보험업의 영업세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증권거래인화세율은 현행 0.1%에서 조금 더 인하함과 동시에 거래 쌍방에 과세하는 방식에서 일방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부합하여 적절한 시기에 금융과세시스템을 조정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인화세를 취소하고 증권거래에 대하여 영업세를 징수한다. 또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자금 조달을 위해 교육비부가를 교육세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WTO 원칙에 따라 내외자금융업과 금융기구 및 비금융기구에 대한 조세우대정책을 통일하여 금융기업이 평등한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국신탁업의 발전 상황에 따라 신탁업에 대한 국제적인 징수 경험을 바탕으로 신탁업에 대한 징수제도를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수익자 납세원칙에 입각하여야 하며, 신탁당사자의 성질 및 신탁업의 내용과 신탁 각 단계에서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세목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중국은 개인소득세법, 조세관리징수법, 내외자기업소득세법을 제외한 기타 세법은 모두 행정법규에 속하며, 실제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이 지켜지고 사용되는 것이 규범성 문건이나, 이것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입법절차를 가속화하여 조세 법제화 수준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 토론 요약

### 중국 조세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한만수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의 조세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몇 가지 견해를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보험업에 대한 간접세 부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야 한다. 현재 부가가치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금융보험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영업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중국이 금융보험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면 금융보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5%의 영업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교육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부담이 적정인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국은 금융보험업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대신 금융기관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징수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금융보험업에 대해 5%의 영업세를 징수하면서 다시 그 세액의 3%에 상당하는 교육세를 할증세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세부담은 중국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조세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부실채권의 인수와 회수에 이용되는 특수목적 법인(Special Purpose Corporation)의 설립에 관한 제도, 그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그 관리에 관한 제도, 인수한 부실채권의 증권화에 관한 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미 잘 정비되어 있는 서구 각국 또는 한국의 제도를 중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종합적으로 도입하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넷째,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관한 조세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분할, 주식교환, 대출채권의 출자전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문제에서 벗어나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히 정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업소득 과세에 있어 내·외자기업 간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이는 국제거래 과세의 보편적 원칙(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내·외국법인 간 과세상의 무차별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도 양 세제를 통합하여 과세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단, 외자기업에 대한 과세상의 특혜 부여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은 그러한 차별적 취급 금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섯째, 간접투자 관련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 신탁회사(Trust)와 투자회사(Mutual Fund)를 통한 간접투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간접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소득을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시켜 1회만 과세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구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조세법규를 법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은 개인소득세법, 기업소득세법, 조세관리징수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세법규를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의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 내·외자기업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려면 조세법규는 엄격하면서도 예측가능해야 하므로 성문법 형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본다.

### 〈발표자 답변〉

肖國富 중국 홍콩강성 국가세무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

중국의 조세제도를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에 대하여 증치세는 부과하지 않고 5%의 영업세만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세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을 한창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세제개혁이 가속화되면 점차 세율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채권 처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내·외자기업 간 차별 문제는 최근 신기업소득세법에 의해 세율이 단일화됨에 따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과 더불어 조세관련 법규의 입법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KIF



## 정책연구

■ 기업인수·합병(M&A)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이진규

■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김현숙·성명재

■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수·류덕현

■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김완석

# 기업인수 · 합병(M&A)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규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I. 주요 내용

### 가. 배경

우리나라의 M&A 역사는 일천하여, 1980년대 들어 경제성장의 둔화, 산업합리화정책 등에 따라 주로 재벌의 계열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합병이 대부분이었으며, 재벌 계열회사 간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인수·합병(M&A)은 기업 구조조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1998년 말 세법 개정에서 기업의 합병에 관한 과세체계가 대폭 정비되었다. 그동안 합병과세제도는 부분적인 개정에 그쳐 왔으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합병차익, 청산소득, 영업권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게 되었다. 법인세법 제6관에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 세법에도 과세특례합병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1998년 말의 법인세법 개정으로 합병차익, 청산소득, 영업권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으나 여전히 합병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하고 불충분

한 면이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 합병세제는 비과세 합병과 과세합병을 명확히 구분한 논리적으로 일관된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병 관련 과세제도는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합병당 사회사의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실질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인수에 대한 과세제도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1998년 말 세법개정에서 기업 구조조정 세제가 한시적 감면방식에서 과세이연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기업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두게 되었으나 기업인수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업인수에 대해서도 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세특례를 둘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기업인수의 경우에도 만일 인수의 대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교부하고, 기업인수로 인해 회사구조나 소유관계가 재조정될 뿐 사업이 계속된다면 기업합병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그것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어

떠한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적대적 기업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는 거의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대적 기업인수의 경우 우호적 기업인수와 달리 경영권 탈취를 위한 공격과정과 이에 대한 방어과정에서 다양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과세제도의 내용에 따라 적대적 기업인수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억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나. 주요국의 기업인수 · 합병 과세제도

미국과 일본의 기업합병 과세제도 및 기업인수 과세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과 일본 모두 비과세 기업합병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합병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재조직(reorganization)의 하나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업재조직이 법인의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지분을 주식소유의 계속이라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변경은 경제적인 지분의 계속성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없는 통상의 사업조정이므로 이와 같은 재조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조세장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 세법개정에서 조직재편성에 의한 이전자산 등에 대하여 그 양도손익 계상을 연기하는 세제를 마련하였다. 합병을 비롯하여 분할, 현물출자, 사후설립 등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적격사후설립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부여하였다.

둘째, 미국과 일본 모두 비과세 기업인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합병뿐 아니라 기

업인수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하고 있다. 미국 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 제368조에서는 기업의 재조직(reorganization)을 A형부터 G형까지 7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B형(주식인수)과 C형(자산인수)이 기업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2006년 세법개정에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적격주식교환과 적격주식이전 등의 과세특례제도를 정립하였다.

셋째, 미국은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제5차 기업인수 붐(1984~1990년)을 맞이하여 적대적 기업인수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해 세법상 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빈번히 발생하는 적대적 기업인수가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의회를 중심으로 팽배하였다. 이에 따라 1984년 재정적자감소법(Deficit Reduction Act of 1984)에 의해 고액의 임원퇴직금에 대한 세법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후 1986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은 그린메일지급금에 대한 세법규정을 신설하였고 고액의 임원퇴직금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1987년 예산조정법(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7)은 그린메일지급금의 수령에 대한 세법규정을 신설하였으며, 1990년 예산조정법(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은 LBO에 대한 세법규정을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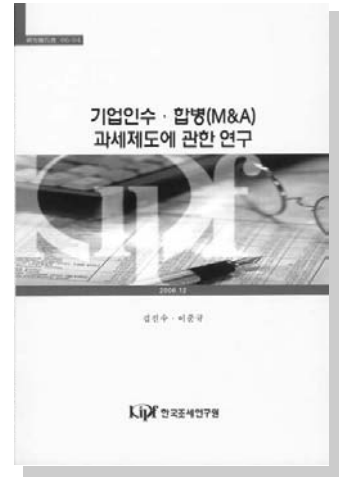
## II. 정책시사점

### 가. 현행 기업합병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우리나라의 기업합병 과세제도에 대한 문

제점과 외국의 제도를 비교해 볼 때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업합병 과세제도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특례합병의 요건을 경제적 실질에 적합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현행 법인세법상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던 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사업상의 목적(business purpose)으로 합병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식교환 비율을 현행 세법에서는 95%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합병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비율을 50% 정도로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95%의 기준은 낮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사업의 계속성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세법에서처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정하지 말고 합병등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예: 2년 정도)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과세특례합병제도처럼 교부주식의 시가를 합병대가로 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함으로써 가급적 과세하지 않도록 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합병 당시에는 과세가 되지 않게 하는 비과세 합병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합병 당시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 청산소득, 의제배당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합병법인은 자산의 장부가액(부채는 차감)을 합병대가로 하여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합병법인은 승계받는 자산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과세합병에 대하여는 모든 세부조정사항 및 조세혜택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도록 하고 비과세합병에 해



B5변형/210면/2006. 12/ 값 9,000원

당하지 아니하는 합병에 대해서는 승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합병 당시의 시가로 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하는 합병법인의 주식도 시가(액면가액은 자본금의 증가,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합병의 결과 발생하는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의 가액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게 된다. 합병차익이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게 측정된다는 문제점은 별도로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에 대한 합병법인의 장부계상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의 차이인데,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합병을 교환거래로 본다면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장부에 계상하고 있던 가액은 자산을 양수하는 합병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합병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말고 당

해 이익을 승계받은 자산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때 익금에 산입(양도차익을 구성)하여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넷째,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거래에 대하여 조세의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서와 같이 합병 전 이월결손금이 없는 상대방 법인의 사업으로부터 합병 후 발생한 소득에서 합병 전의 이월결손금이 공제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합병 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사업으로부터 합병 후 발생한 소득에서는 합병 전의 이월결손금이 공제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다양한 형태의 합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합병 당사법인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이외에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이 추가되는 형태의 삼각합병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입법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 나. 현행 기업인수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우리나라의 기업인수 과세제도에 대한 문세점과 외국의 제도를 비교해 볼 때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업인수 과세제도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일 기업인수의 대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교부하고 기업인수로 인해 회사구조나 소유관계가 재조정될 뿐 사업은 계속되는 것이라면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형의 기업 구조조정이라고 보아 과세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과세인수의 요건은 비과세합병의 요건에 준하여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법인 설립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비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상장법인과 차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투자자가 특정 외국에서 거둔 주식양도차익과 그 특정 외국의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거둔 주식양도차익의 크기를 비교하여 그 크기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조세조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세조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모든 투자자에 대해 거주지국과세를 원천지국과세로 개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그린메일은 인수대상기업이 기업인수를 저지하기 위하여 기업인수 시도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라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① 주식의 이전합의를 맺기 전에 주식의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어야 한다. ② 주식을 보유한 2년의 기간중 어떤 주주 또는 주주와 협력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주주나 주주와 협력하여 행동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 제의를 행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취득에 있어 모든 주주들에게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그린메일지급금의 수령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특별부가세를 다시 부활하여 20% 내지 30%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적정한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근무연수를 고려하여 정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재임연수 1년 기준으로 3개월분 정도를 한도로 하여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단기적으로는 고수익할인채권의 할인발행차금에 대해 어떠한 세제상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정크본드의 발행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기업인수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일반적인 정크본드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인수를 위해 발행되는 고수익할인채권의 할인발행차금에 대한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6-04 『기업인수·합병(M&A)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김현숙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들어 유례 없이 낮은 출산율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평균수명의 급속한 연장으로 인해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해야 할 노년인구 수도 함께 증가하여 경제활동도 함께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노동력 인구비중이 감소해가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여 미래의 노동력 풀(pool)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는 유희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를 활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희노동력은 현재 생산가능연령인구인 15~64세의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집단과 실업상태인 인력을 의미한다. 이 중 가장 큰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은 여성이며 여성 중에서도 가사, 육아, 학업을 이유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기혼여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를 장려하는 정책이 단기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는 주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기혼 여성은 출산 및 육아를 통해 미래의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

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장려가 출산 및 육아부담을 가중시켜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는 대신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면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부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둘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극복한 나라들은 예외없이 기혼여성이 경제활동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정착된 나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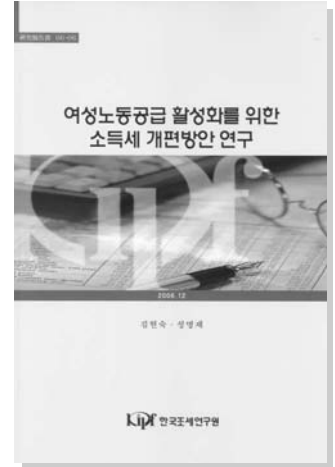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일하는 여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육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하는 기혼여성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소득세체계를 개편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

(Child Tax Credit)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시장에 참가한 영유아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보육 관련 비용의 세액공제를 통해 보육을 지원하게 되면 출산율의 저하도 방지하면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후소득에 근거한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를 효용함수가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함수라는 가정하에 구축하고 2004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여 기혼여성이 소득세 부담에 따라 노동공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하였다. 남성의 노동공급함수와 달리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세후소득에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용 지출을 차감함으로써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때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하였다.

세후소득을 산정할 경우에는 세후소득 자체가 세전소득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것이므로 노동공급 시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변수의 내생성이 문제가 된다.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증분석시 도구변수법을 사용하였다. 세후소득에 대한 도구변수들로 기혼여성의 직장경력, 교육수준, 시간당 보육비용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2SLS 추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세전소득에서 소득세를 차감하고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용을 차감한 세후소득에 대한 기혼여성의 보상임금탄력성은 0.23~0.26으로 세후소득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시 사용한 설명변수는 만2세 이하의 영아 유무, 만3~5세의 유아 유무, 자녀 수, 연령, 표본선택의 편의를 조정하는 항이다.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참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자녀 수나 연령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B5변형/180면/2006.12/  
값 8,000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진적인 소득세체계하에서는 실증분석시 최소자승추정법이나 도구변수법만으로 일치추정치를 구할 수 없고 누진적 소득세로 인해 생기는 비선형 볼록(non-linear convex)의 예산제약식하에서 이용가능한 이중오차모형(dual error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예산제약식상의 굴절점(kinked points)에서 노동공급시간과 여가의 선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도구변수법을 이용한 추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를 반영하여 노동패널상의 개별 기혼여성마다 예산제약식을 만들어 균형점을 확인한 결과 굴절점에서 노동공급시간을 선택하는 기혼여성이 거의 없어 이중오차모형 대신 도구변수법을 이용하여 보상임금탄력성과 비보상임금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보상임금탄력성의 수치는 다른 나라 기혼여성의 보상임금탄력성보다 낮은 편이어서 기혼여성의 세후소득이 증가할 경우 여가 대신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크기는 미국 등의 나라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 노동공급함수 추정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보육비용 지출을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할 때 과연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종의 음(-)의 소득세로서 근로장려세제(ETTC)와 유사한 내용으로 면세점 이하의 기혼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대상과 유사하게 차상위 계층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를 전제로 하여 지급한다는 차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시나리오에 따라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에게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정을 혹은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여성의 노동공급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디자인은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의 30%를 세액공제해주고 근로소득이 500만~700만원인 경우에는 정책으로 150만원을 지원하며 700만~1,000만원인 경우에는 150만원에 근로소득 700만원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급증-평탄-급감구간을 도입하였다. 이 경우 이미 노동시장에 참가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의 확대는 9.5%, 신규 노동시장참가비율은 19.6% 증가하여 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나타나는 소득창출효과는 필요재정규모의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정 소득구간에 한하여 정액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고 가구소득이 2,400만~4,800만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의 정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여성

의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노동공급시간을 약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혼여성의 예산제약식의 기울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근로소득세 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의 45%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세액이 50만~125만원인 경우에는 세액 50만원 초과분의 70%를 세액공제하며 근로소득세액이 125만~275만원인 경우 세액 75만원에서 세액 125만원 초과분의 50%를 공제한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이다.

이는 근로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 이상의 여성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여성노동공급을 활성화하자는 데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이 방안은 지원 혜택을 면세점 이상에 국한함으로써 부분취업(part-time)보다는 전업취업(full-time)을 상대적으로 더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한 방안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노동시장참가는 거의 변화가 없고 노동공급시간은 소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시의 세수감소분에 비해 노동공급 증가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된 기혼여성 노동공급 함수에 의거할 때 기혼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고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는 첫 번째 시나리오인 음(-)의 소득세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시행 예정인 근로장려세제와 다소 유사하므로 두 제도 간의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고려한 후 두 제도를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휴인력의 가장 큰 풀인 25~49세의 전문대졸 이상의 기혼여성에게 정액이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노동시장참가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요인에 근거하는데 하나는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기혼여성의 소득에 비해 제공하는 세액공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세액공제방식이나 금액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기혼여성의 세후순소득에 대한 노동공급의 탄력성을 도출하고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도출된 임금탄력성의 크기가 크지 않은 가운데에도 저소득층의 기혼여성에게 자녀세액공제를 실시할 경우 상당한 노동공급 증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향후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함수의 구성시 자녀 수나 자녀의 연령은 효용함수에 직접적인 요소로 사용되지 않고 가구의 예산제약이나 가구의 노동과 여가 간의 대체와 관련한 선호에 반영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CES 노동공급함수를 이용하여 남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 한 방식을 여성에게 변용하여 사용하는 대신 여성 고유의 노동공급함수를 새롭게 구축하여 이를 이용한 임금탄력성 추정이 필요하다. 임금탄력성이 다소 낮은 이유도 기혼여성 노동공급함수의 형태에 대한 가정에 기인할 수도 있다.

둘째, 노동력의 질이나 추가적인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세 가지의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자녀세액공제제도가 고학력 기혼여성에게 효과가 없는 제도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를 장려하는 정책적인 제도를 고안해 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6-06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수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류덕현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근 선진국뿐 아니라 중진국 이상의 나라들에서도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과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소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미 복지부문의 재정투자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부담은 적지않은 재정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97년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재정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기초가 '양입제출의 원칙' 하에 상당히 보수적인 운용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정책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성장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내주었던 기초적인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소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이다. 즉, 과거에는 경제위기 극복에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해 주었던 재정부문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재정소요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논

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제이지만 최근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감안하면 더욱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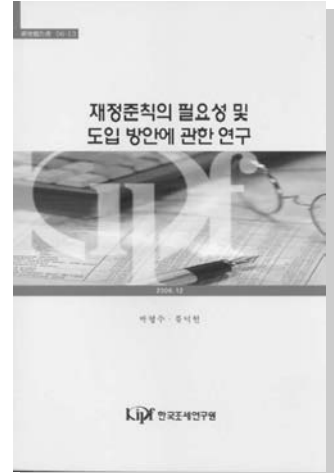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의 총량적인 재정목표를 제약함으로써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정책운용목표로 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s)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나 지출증가를 혹은 국가채무에 대한 제약을 두어 일시적으로 정책운용의 폭을 좁히지만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을 확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에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부문이 여타 다른 경제부문보다 건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인 경기안정화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제약하면서까지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향후 우리에게 다가올 재정건전화에 대한 위협을 고려한다고 하면 재정이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는 구미의 선진국에서는 재정준칙을 둘러싼 이론적·실증적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 한 번도 시행되지도 않는 정책운용의

들에 대한 고찰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하지만 향후에 준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의 운용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구미 각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재정준칙의 이론적·경험적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재정준칙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다. 여기에서는 재정준칙의 정의, 필요성, 형태별 구분 및 재정이슈별 재정준칙의 효과 및 성과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제Ⅲ장은 이미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의 운용경험과 실제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정리하고 있다. 외국의 재정준칙의 운용경험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향후 도입에 따른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나라들의 재정준칙 운용과정에서 도출되는 공통점과 차이점들은 우리나라의 향후의 제도 도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Ⅳ장은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재정운용, 정확하게는 예산편성의 원칙이었던 양입제출 원칙과 최근의 중기재정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통화준칙인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의 시사점을 도출하며, 우리나라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본 보고서를 요약하고 정리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각 장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재정준칙의 정의, 필요성, 형태, 효과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문헌을 통해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먼저, 재정준칙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재정준칙의 구성요소와 갖추어야 할 특징 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다음으로 재정건전화라는



B5변형/230면/2006.12/  
값 9,000원

큰 목표를 위해 단기적인 경기안정화의 기능 등 탄력적인 재정정책 운용을 제약하는 재정준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재정준칙을 목표변수의 선택, 엄격함의 정도, 집행과 점검 여부의 주제, 그리고 회계기준 등에 따라 형태별로 구분한 뒤 실제의 사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재정준칙의 효과 및 성과를 경기안정화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기준에 나누어 이론적인 부분과 실증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제Ⅲ장은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호주·핀란드·독일·일본·네덜란드·뉴질랜드·스페인·스웨덴·영국 등 9개 국가, 재정준칙이 없다고 응답한 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미국 등 4개 국가 및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스위스 등 총 14개 국가와 EU의 재정준칙에 대해 사례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특히 이들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도입하게 된 배경, 재정준칙의 주요 내용, 운용추이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운용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

자 노력하였다.

제Ⅳ장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있어 신뢰성 있는 재정운용정책이 될 수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우선 1980년대 중반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재정정책을 지배했던 양입제출의 원칙에 대해 도입 배경 및 그 내용을 살펴보고 동 재정준칙에 대한 평가도 해 보았다.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준칙인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용 경험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에 감안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제3절에서는 재정준칙의 법적 기반 및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발표되는 중기재정계획의 재정준칙으로서의 역할을 평가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재정준칙의 법적 토대 및 총량적 재정목표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현행 재정관련 법률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평가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IP**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6-13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김완석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I.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의 개편 필요성

현행 세법은 지나치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렵다고 한다. 세법은 납세의무자는 물론이고 과세관청을 위해서도 알기 쉽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알기 쉬운 세법은 납세의무자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준다. 세금은 국민의 모든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의 조세효과를 고려함이 없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기 쉬운 세법은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며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비용과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명확성 및 공평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는 작업이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초석을 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

## II.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의 개편방안

세법은 그 실체적 내용 때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세법의 형식 및 체제의 잘못이나 표현의 어려움 때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세법은 과세에 있어서 형평성 확보, 조세회피행위의 규제 필요성,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의 역할 증대, 경제의 성장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거래의 출현, 세법의 기술성 등과 같은 세법의 내용 그 자체 또는 실체적인 조세제도의 복잡성 때문에 어렵다. 이와 같은 세법의 실체적 내용에서 기인하는 세법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안으로서는 세목을 대폭 줄이면서 flat tax와 같은 단순한 세금을 만드는 방안과 현행의 세금제도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로 복잡하고 어려운 과세요건 및 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최저한세, 세액계산의 특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세액공제 등)을 단순하게 고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법의 형식 및 체제의 잘못이나 어려운 표현을 쓰는 데에서 비롯된 세법의 복잡성과 어



B5변형/442면/2006. 12/ 값 17,000원

려움은 세법체계의 복잡성과 규정의 중복성, 법령의 통일성 및 법령체계의 일관성 결여, 세법편제의 난잡성, 법문 및 표현의 애매성과 난해성, 법문의 지나친 축약성과 추상성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법의 형식 및 체제에서 비롯된 세법의 복잡성과 어려움은 세법의 체계·편제 및 표현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행의 세법을 알기 쉽게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되, 다만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의 개편방안 중 세법의 형식 및 체제에서 비롯된 세법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세법의 형식 및 체제에서 비롯된 세법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세법이 개편되어야 한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현재 20개의 법률로 이루어져 있는 내국세에 관한 법률을 미국의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과 같은 단일 법률체계, 또는 프랑스의 조세실체법 및 조세절차법과 같은 2개의 법률체제로 통합하도록 한다. 중·단기적으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을 독일의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과 같은 단일의 조세통칙법으로 통합·제정하고, 성격이 유사한 개별세법을 통폐합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별세법에서 제각기 규정하고 있는 중복적인 규정(예: 질문검사권에 관한 규정, 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국세통칙법에서 모아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둘째, 국법체계의 유기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유지하도록 한다. 조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 내국세법·관세법 및 지방세법 간의 통일성 및 내국세법령 안에서의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유지하고, 각 법령 간의 용어를 통일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세법에서 정의규정을 확대 규정하여 세법을 간소화함과 동시에 세법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다. 다음으로 행정입법에 있어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조세법의 편제기준을 정립하고 그 정립된 편제기준에 따라 조세법령을 다시 편제한다. 이와 함께 항구적이고 간결한 조항 번호를 부여하는 체계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법률 조항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넷째, 법문의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불확정 개념의 도입을 지양하도록 한다. 압날·장닉·탈루·훼손·첩용·증빙·취집·신립·사료 등과 같은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고쳐 쓰고,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예외의 예외규정을 지양하고, 준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재준용을 피하도록 한다. 그리고 법령의 인용방법을 개선하여 이해도를 높이며, 본칙에서 규정할 사항을 부칙에서 규정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다음으로 법문을 문장의 형태와 어법·어순 등에 맞추어 고치도록 한다. 또한 긴 조문은 분리하여 2개 이상의 조문으로 나누고, 장문은 2개 이상의 항·호 또는 목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거나 2개 이상의 문장으로 나누어야 한다.

다섯째, 내용은 방대하지만 상세하면서도 의미가 분명한 세법으로 개편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미국 연방세법의 시행령과 같이 예시규정이나 사례(examples)를 많이 두도록 한다. 또한 세법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법령에 개관규정, 산식, 표 및 흐름도 등을 많이 활용하도록 한다.

여섯째,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방세조례에의 위임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지방세법에서의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법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특히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한다.

그런데 알기 쉬운 세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식 및 체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과세의 형평성과 조세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법의 내용 및 실제적인 조세제도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방만하고 많은 세목을 통합함과 아울러 목적세를 일반세로 흡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 Ⅲ.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 프로그램의 추진

세법을 알기 쉽게 개편하기 위해서는 알기 쉬운

세법 개편을 전담할 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 아래 장기적인 과제로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세법의 개편작업은 세법 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세법을 알기 쉽게 다시 고쳐 써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책입안 공무원·세무공무원·조세법학자·재정학자·세무회계를 전공하는 학자·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국어학자를 망라하는 방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한 상설기구에서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설기구와는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세법의 개편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법의 개편작업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세법의 개편작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과제로서 최소한 5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여 중단 없이 꾸준히 수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꾸준히 세법 다시 고쳐 쓰기 과제를 수행하여 온 영국의 '세법 다시 고쳐 쓰기 프로젝트(Tax Law Rewrite Project: TLRP)'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세법개혁프로그램(Tax Law Improvement Program: TLIP)'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리라 생각한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조세 정책 ·

### 영국, 소득 · 법인세 2%p 인하

영국이 내년 4월부터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2% 포인트씩 내린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는 세제개편을 추진중이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은 소득세 기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해 7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2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밝혔다.

법인세 기본세율도 기존 30%에서 28%로 2%포인트 낮아진다. 이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경제대국보다 낮은 수치라고 브라운 장관은 덧붙였다. 브라운 장관이 이처럼 깜짝 감세 카드를 빼든 것은 올해 말 노동당 당수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한 경제전문가는 “브라운의 감세책은 기업과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영국의 현대 역사상 최장수 재무장관인 브라운 장관은 ‘세금 재상’이라는 평판이 자자할 정도로 감세 정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다만 브라운 장관은 맥주와 포도주, 담배에 대한 세율을 높였으며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해 휘발유를 많이 소비하는 자동차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립학교에 수십억파운드 재원 지원을 약속했다. 브라운 장관은 “학교와 가정, 저소득자, 기업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되 앞으로 3년 동안 지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의회는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 압박에 나섰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21일 영국 의회가 앞으로 250만파운드(약 46억원)를 웃도는 고가 주택 소유자는 더욱 많은 지방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 2007-03-22]

### 세계 자동차업체들, 반온난화 정책에 반발확산

세계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온난화 전쟁’에 대한 반발 기류가 퍼지고 있다.

이탈리아 최대 자동차 생산회사인 피아트와 최고경영자이자 유럽 최대 자동차제조업체 로비단체를 이끌

고 있는 서지오 마치오네 회장은 최근 “유럽연합이 지난달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조치는 매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현실적인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km당 120g으로 의무감축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현재는 160g 이상이다. 마치오네 회장은 일정상 의무감축 법제화가 2009년 이후에야 이뤄진다면, 법제화와 시행 시기 사이의 3년 과도기는 “터무니 없이 짧다”고 비판했다.

자동차 업계는 유럽연합 감축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1대당 798~3,990달러(75~370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1일 전했다. 이는 현재 유럽산 자동차들의 1대당 평균 영업이익액(62만원 이하)을 웃도는 액수다.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앳퍼어스는 20일 보고서를 내어,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강제감축 조치는 유럽 자동차업체들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에 상당한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도한 투자 부담과 소비자들의 소형차 선호로 지금도 이익률이 낮은 자동차업계의 수지 전망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업체들 사이에서도 베엠베와 메르세데스 등 대형차종을 주력생산하는 독일 업체들의 반발 강도가 더 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반면 연료 효율이 높은 소형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업체들은 다소 느긋한 편이다.

미국에선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연비 기준 개선 정책에 대한 업체 쪽의 반발이 크다. 백악관은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에 한해 연비 기준을 4%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생산업체 최고 경영자들과 미국 자동차노동조합(UAW) 지도자들은 14일 하원 소위원회에 출석해 “일괄적인 연비 기준 높이는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재년에 가까운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겨레 2007-03-23]

## 홍콩, 법인세 인하 서두를 것인가?

### - 싱가포르 감세정책에 대한 홍콩 외투유치 긴장감

#### □ 싱가포르의 법인세, 0.5% 차이로 홍콩 추격

- 싱가포르는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08년부터 법인세를 현재의 20%에서 18%로 낮출 것을 발표함. 이는 홍콩의 17.5%와 단지 0.5% 차이로서 현재 아시아 허브의 자리를 놓고 경쟁관계에 있는 홍콩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음.
- 2006년, 홍콩 정부는 현행 법인세를 5% 인하된 12.5%로 낮추고 GST(Goods and Services Tax, 상품세, 5%)를 도입하려 했으나, 심한 반대로 무효화했음. 그러나 싱가포르의 지속적인 법인세 인하 움직임과 Wall street journal 등의 외신의 민감한 반응에 홍콩 재정부는 다시 한번 법인세 인하와 GST 도입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
- 3월에 있는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썩 현 행정장관은 차기 선거 당선시 5년 안에 법인세 17.5%를 15%로 낮출 것을 공약함.

#### □ 세계는 법인세 인하 붐

- 법인세 인하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 예로는 싱가포르 외에 아일랜드와 폴란드, 헝가리 등의 동구권 국가가 있음.
- 현재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미국 등의 국가는 모두 적극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중임.
- 이들 국가의 법인세율은 일본 40%대를 제외하고는 20~30%대 수준이며 아일랜드는 12.5%로 인하해 많은 해외법인의 투자를 유치했음. 불가리아는 최근 재정난에도 10%로 인하를 강행했음.
- 홍콩의 경우 과거 16%보다 1.5%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갖춰진 기업투자환경을 감안했을 때



17.5%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기업 투자 환경

- 싱가포르는 작년 홍콩이 ‘법인세 17.5%→12.5% 인하 및 GST 도입’ 방안을 검토중일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마련했으나 홍콩은 GST 도입계획을 무산했으며 싱가포르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원을 충당하기 위해 GST를 2% 상향조정해 내국인의 납세부담이 증가했음.

홍콩과 싱가포르 법인세와 상품세율 변화, 2000~06년

구분	법인세율 (%)		상품세율(GST)(%)	
	싱가포르	홍콩	싱가포르	홍콩
2000	26	16	3	0
2007	18	17.5	7	0
변화	8% 인하	1.5% 인상	4% 인상	없음

자료원 : 홍콩 언론 종합

- 홍콩 내 일부 경제인들은 홍콩과 싱가포르 모두 외국자본 유치에 급급할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세금부담을 과중시키며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함.
- 홍콩 재정부는 싱가포르를 모델로 삼아 외국기업 투자를 증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홍콩과 싱가포르는 다른 경제구조와 기업환경을 가졌으므로 일방적인 모방은 지양해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주장 역시 높음.
  - 국내 세원확장을 통한 싱가포르의 법인세 인하는 소매와 관광사업자보다 법인세 투자자를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이며 이를 싱가포르와 산업구조가 다른 홍콩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음.
  - 기업의 투자조건으로는 세금 외에도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 안정된 인프라스트럭처, 고급인력 등이 고려되며 홍콩은 이러한 조건과 함께 중국

을 배경으로 한 튼튼한 투자환경을 갖추어 법인세만으로 경쟁력을 비교할 수는 없음.

- 법인투자 유치 경쟁력과 관련해 대두되는 문제는 홍콩의 대기오염과 영어구사능력, 주택가격임.
  - 기업인의 이주를 위해 싱가포르가 주거, 안전, 교육, 주택, 오락, 여가시설 증대에 힘쓰고 있는 한편, 홍콩의 주택 및 대지 임대료는 매우 높고 최근 대기오염이 점점 심각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환경 저하 요인이 됨.
  - 홍콩인들의 일반적 영어능력은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보다는 우수하나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있어서는 외국기업과의 원활한 교류에 한계를 느낀다는 지적이 있음.

□ 홍콩 법인세 하향조정 전망

- 2006년 홍콩의 재정흑자는 550억홍콩달러였으며 국내총생산(GDP)은 6.8% 증가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정부 재정에 여유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세원의 확대가 없는 실정에서, GST(상품세) 도입 없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인하한다는 계획은 선거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있음.
- 홍콩 City University 정책분석가와 세무인들에 따르면 세원의 확대 없이 홍콩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현재로서는 홍콩은 법인세를 인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결론임.
- 따라서 홍콩은 향후 서서히 법인세 인하를 지향할 것이나, 현재 갖추어진 우수한 투자유치 경쟁력을 고려하고, 홍콩 내 세원확대를 단기간에 결정할 수 없음을 볼 때, 법인세 인하책을 서둘러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음.

[KOTRA, 경제무역 2007-03-19]

## 英, ‘차기’ 화두는 환경문제

### ‘포스트 블레어’의 키워드는 환경이다.

영국에서 토니 블레어 이후 총리를 노리는 유력 주자들의 경쟁이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환경 이슈와 관련해 가장 먼저 선수를 친 당은 보수당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당수와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11일 항공기 여행 제한을 목표로 한 ‘환경세’ 계획안을 발표했다.

캐머런 당수는 초록색깔 끈을 질끈 묶은 재활용 운동화를 신고 나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항공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행 거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마일리지 승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년에 한 차례 단거리 항공여행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추가 비행의 경우에는 마일리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보수당의 계획에 대해 항공사들이 즉각 반발했지만, 오스본 재무장관은 “기후변화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자 과제”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보수당은 이번 주 미국 전 부통령이자 환경운동가인 앨 고어를 초청해 환경과 관련한 그의 연설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보수당보다 한 박자 늦었지만 노동당도 기세를 올리고 있다.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은 12일 기후변화에 대해 연설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이해를 요청할 계획이다. 블레어 총리와 밀리밴드 환경장관이 13일 발표할 ‘이산화탄소 감축 방안’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다음 주 예산 관련 발표를 할 때도 주제를 환경에 맞출 생각이다. 그는 지난 9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합의한 것을 극찬하는 연설문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의 또 다른 차기 총리 후보로 언급되는 밀리

밴드 환경장관도 13일 ‘기후변화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은 이산화탄소 방출을 1990년에 비해 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법안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시한을 제시하고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독립기관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제2야당인 자유민주당 역시 가세했다. 멘지 켈벨 자유민주당 당수는 최근 런던시가 최악의 폭풍·홍수 시나리오에 근간해 증축하는 ‘템스 베리어’를 방문했다. 햄프셔에 있는 친환경 발전소 등의 ‘환경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자유민주당 대변인은 “우리는 오랫동안 환경 문제와 관련한 캠페인을 벌여왔고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일관적 환경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노동당과 보수당은 우리를 좇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책만이 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정치권에선 환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만한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차기 총선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칙대로라면 차기 총리 주자들은 2010년 총선에서나 맞게 되지만, 영국이 의원내각제인 만큼 언제든지 조기 총선이 치러질 수 있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7월쯤 퇴진하고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뒤를 이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지만 연내 조기 총선설도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2007-03-12]

## 獨내각, 법인세 인하 법안 승인

독일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독일의 기업투자 유치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독일 내각은 14일 현행 38.6%인 법인세율을 30% 이하로 감축하는 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법인세 인하안은 올 여름 상·하 양원의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페어 슈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은 법인세 인하로 독일 내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이며 독일 기업의 해외 이전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하로 독일 기업들은 시행 첫해인 2008년 약 65억유로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인하폭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 재계는 유럽 평균인 25% 수준까지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는 기업 소유주에게만 혜택을 주고 중산층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독지역 개발을 관장하는 볼프강 티펜제(사민당) 교통장관은 특히 동독지역 중산층이 세제 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민당 내 좌파 세력은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들어오는 재원이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를 메우는 셈이 됐다고 지적하고 이는 사민주의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법인세는 현재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30% 이하로 내려 가면 현재의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 주요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 된다. 독일 법인세의 구체적인 인하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29.2%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세목 대상을 늘려 재정 손실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07-03-14]

## 中 법인세 25%로 단일화

### 외국계 기업 세부담 늘어날 듯

중국 정부가 국내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단일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낮은 법인세율 납부하며 혜택을 누려온 외국계 기업들의 이점이 사라질 전망이다.

8일 BBC 뉴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내의 기업에 다르게 적용해 왔던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중국 국내기업은 33%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은 반면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은 15~24%에 불과했다.

중국 정부는 또 첨단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법인세율을 15%로 낮출 예정이다. 또 에너지 절약 산업과 환경보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도 세금 우대를 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 단일화가 실현될 경우 중국 국내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재무부는 국내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총 1,340억위안(171억달러)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외국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410억위안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논란을 일으켰던 수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안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상하이로 방문한 폴슨 미 재무장관은 중국에 금융시장 개방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BBC 뉴스는 전했다.

그는 “중국이 투명하고 유연하며,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개혁의 고삐를 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대한 위협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폴슨 장관은 또 중국이 환경오염의 주범인 저비용 제조업으로부터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힘은 고부가가치 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07-03-09]

## 美 연간 미수세금 280조원..재정적자폭 상회

미국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세 축소 신고 등으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미수세금이 연간 3천억 달러(약 280조원)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미 행정부와 의회는 미수세금 징수를 위해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으나 실통한 효과를 보지 못해 고민중이다.

미 국세청(IRS) 조사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내야 할 세금 액수와 실제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뜻하는 텍스 갭(Tax gap)이 지난 2001년 3,450억달러에 이르렀다.

이 중 개인과 기업·자영업자 소득세 축소 신고가 각각 1,970억 달러, 880억달러였고 나머지는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신고 액수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연간 텍스 갭은 IRS의 징세 노력과 납기 후 자진 납세 등에 힘입어 2,900억달러 선으로 좁혀졌으나 2001년 현재 납세율은 86%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미수세금 규모는 연방 정부의 한 해 재정적자나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7년과 2008년 중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하기 위해 추가로 확보하고 싶어하는 예산 등을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다.

또 미 의회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수습을 위해 지출키로 합의한 구호금 1,250억달러를 일거에 확보 하고도 나머지를 3년치 연방 교육 프로그램 예산으로 비축할 수 있는 규모다.

이는 미국민이 가구당 2,680달러 가량의 부가세를 물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것. 납세자 권리 옹호 운동가 니나 올슨(여)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매년 추가 세부담을 지라고 요구하는 셈”이라고 개탄했다.

미 하원 예산위원회의 존 스프렛 위원장(사우스캐롤라이나주, 민주)은 텍스 갭 문제에 대해 “단순히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덕적 공정성이라는 근본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11월 중간선거 승리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미수세금이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교육과 건강 등 주요 분야에 투입할 자금을 확보케 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IRS는 탈세자들에 대한 단속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크 에버슨 IRS 청장은 미납세금 징수 실적이 2002년 340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490억달러로 늘었고 개인 소득세 신고 심사율도 2001년 200명당 1명 풀이던 것이 작년에는 100명당 1명 풀로 높아져 그만큼 백만장자들의 성실 신고 여부를 더욱 꼼꼼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IRS는 또 지난해 민간 징세 대행 회사에 탈세자 추적을 의뢰하는 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10년 간 2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내년 예산에 텍스 갭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비용으로 4억 1천만달러를 배정키로 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하지만 현행 세법이 더욱 간소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텍스 갭 축소는 요원하다는 것이 세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유주의 성향인 케이트 연구소의 크리스 에드워즈 세정 연구팀장은 미국의 납세율은 지난 30여년 간 80% 중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등 서방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세법 간소화가 탈세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에 새로운 허점이 드러날 때마다 탈세 유희과 탈세 능력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03-05]



## 재정정책 ·

## 중국, 초고속 고령화로 벌써부터 연금 걱정

중국에 인구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면서 ‘연금 대란’ 사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노령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들을 먹여 살릴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정스린(鄭斯林) 중국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은 “많은 나라에서 100년에 걸쳐 이뤄지는 고령화가 중국에선 50년 내에 진행될 것”이라며 연금 대란을 우려했다.

20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따르면 중국에서 은퇴하는 인구는 2015년에 이르면 2억명으로, 2005년보다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4억 3,000만명이 은퇴 연령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은퇴 연령은 여자 50~55세, 남자 55~60세다. 유엔의 ‘세계인구전망 2006’ 보고서는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5년이면 19.6%에 이르러 초고령화 사회 문턱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반해 1970~80년대부터 시작된 ‘한 자녀 정책’으로 중국의 가족 구조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노인은 늘어나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이는 줄고 있다. 현재 생산활동인구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연금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은퇴 시점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청년실업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중국의 대학졸업자는 413만명이지만 이 중 30%는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신문은 연금대란이 닥지기 전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부터 경제 개혁을 진행중이지만 이 과정에서 수백만명이 해고됐

다. 중국 인민대의 리샤오광 사회안전연구소장은 “해고자 대부분은 얼마나 험난한 상황이 기다리는지 몰랐을 것”이라며 “중국에서 5억명 정도는 사회안전망을 벗어나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도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중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그러나 급료에서 연금 재원을 떼는 현행 제도로는 기존 근로자들만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문은 결국 각자가 알아서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돼 있다고 전했다.

상하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첸루이(50·여)는 “딸이 하나 있지만 그 부부가 노인 4명을 봉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선진국과 달리 은퇴 이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2007-03-21]

## 日 ‘단카이 세대’ 은퇴러시... 지자체, 퇴직금 마련 비상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 세대’의 정년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지방정부들이 ‘퇴직수당채’라는 채권을 발행하는 등 자원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7일 일본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에서 올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총액이 1조 4,700억엔(약 11조 8,70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런 퇴직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24%나 늘어난 것”이라며 와가야마현 고치현 등은 지방세 수입 20% 이상을 퇴직금으로 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지아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49년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가 올해부터 대거 정년퇴직을 시작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출은 계속 늘어 2009년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본 지자체는 일반 기업과 달리 예산 책정이 1년 단위로만 이뤄져 퇴직금을 충당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단카이 세대의 대거 퇴직을 앞두고 ‘퇴직수당채’라는 지방 채권 발행을 임시방편으로 마련했다. 퇴직수당채는 원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자체의 권고퇴직에 한해서만 발행이 인정됐으나 지난해부터는 10년 시한으로 정년 퇴직에도 확대 허용키로 했다.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37개가 올해 퇴직수당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발행 규모는 지난해 1,856억엔의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홋카이도는 지난해보다 160억엔 늘어난 260억엔을 발행할 예정이고, 효고현의 퇴직수당채도 250억엔이나 된다.

[국민일보 2007-03-18]

### 캐나다 2007년 연방정부 예산안, 환경부담금 도입으로 자동차시장 파란 예상

- 환경보전을 위한 자동차 배기가스 통제를 위해 리베이트 및 세금 도입 추진
- 고연비 차량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리베이트로 구입비용 절감 혜택 및 저연비 차량은 환경세 부과

#### □ 캐나다의 2007~08년 연방정부 예산안

- 캐나다 연방정부는 3월 19일 2007~08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
  - 전년보다 100억캐나다달러 늘어난 총 2,334억 캐나다달러 지출 계획 발표
  - 환경 및 의료시스템 개선, 정부 부채 및 일반가정 세금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인프라 투자를 통한 기업 경쟁우위 향상에 초점
  - 여타 지출 분야보다 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동차 리베이트 및 환경세 부과는 획기적인 안으로 평가되며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양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 자동차 환경세 및 리베이트 부과

- 캐나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환경 운동가들이 끊임 없이 요구했던 자동차 환경세 부과안을 제시함으로써 자동차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보수당 정부 이전의 자유당 정부는 온타리오주 자동차산업계의 반발을 예상해 자동차 환경세 부과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으나 이번 보수당 정부는 2007~08회계연도 예산안에 자동차 환경세 부과를 포함.
  - 고연비 차량 구입시 최대 2,000캐나다달러 리베이트 제공 및 저연비 차량 구입시 최대 4,000캐나다달러까지의 환경세 부과 조치를 담고 있음.
  - 실례로 이번 예산안이 캐나다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주요 자동차 모델별 가격 인상 및 인하 변동은 다음과 같음.

환경세 부과로 인한 가격 인상

주요 자동차 모델	예상 차량가격 인상폭
Hummer	C\$ 4000
Jeep Grand Cherokee	C\$ 4000
GMC Yukon	C\$ 2000



Toyota Sequoia	C\$ 2000
Dodge Durango	C\$ 2000

자료원 : 캐나다 프레스

### 리베이트로 인한 가격 인하

주요 자동차 모델	예상 차량가격 인하폭
Toyota Prius	C\$ 2000
Honda Civic Hybrid	C\$ 2000
Ford Escape HEV 4x4	C\$ 2000
Toyota Corolla	C\$ 1000
Mini Cooper M6	C\$ 1000
Jeep Patriot	C\$ 1000
Chevrolet Impala	C\$ 1000

자료원 : 캐나다 프레스

-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외에도 배기가스 배출이 심한 중고차 폐기시 정부보조를 지원함으로써 고연비 중고차의 단계적 폐기에 따른 환경 개선 역시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자동차

- 캐나다 내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환경세 및 리베이트가 캐나다 연방정부의 2007~08 예산안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예산안이 통과돼 실효에 들어갈 경우 캐나다 내 자동차 시장 판매 구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
- 특히 SUV, 대형차 및 미니밴 등 저연비 차량의 구입 가격이 대당 2,000~4,000캐나다달러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소형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등은 대당 1,000~2,000캐나다달러 인하 효과를 누림으로써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이번 예산안은 아직 캐나다 상하원 통과를 위한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현재 캐나다 내에서는 배기가스 억제를 통한 환경보전에 대한 요구가

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환경세 부과 조치가 쉽게 수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 업체들의 캐나다 현지 마케팅 활동 및 전략 변화가 요구되며 중기적으로는 환경친화적 차량 개발로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

[KOTRA, 경제무역 2007-03-20]

### 美 쌍둥이 적자 1조달러 돌파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2006년말을 기준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쌍둥이 적자란 △수출액을 초과하는 수입액인 무역적자에다 △정부의 세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뜻하는 재정 적자를 합친 것이다. 그 수치가 1조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취약하며 동시에 국제수지의 불균형도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8,567억달러로 이 가운데 무역적자는 7,636억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정적자 2,480억달러와 무역적자 7,636억달러를 합치면 이른바 쌍둥이 적자는 1조 116억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에 비해 8.2% 증가한 것으로 2002년 이래 5년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000년 클린턴 행정부 임기말 2,360억달러 흑자였으나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후 2002년 1,578억달러(국내총생산 대비 1.5%) 적자로 반전됐다.

이후 적자 규모는 2004년 4,120억달러(국내총생산 대비 3.6%)로 늘었다가 2005년 3,140억달러로, 2006년에는 2,480억달러로 줄어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올 초 경제 부문 연두교서 발표 때 재정적자를 2008년 2,390억달러로 줄이고 2012년에는 610억달러의 흑자로 돌려놓겠다고 중장기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9·11 테러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한 대규모 전쟁비용 지출 등으로 재정 지출이 급증했지만 조세감면 정책이 세수를 오히려 늘려 궁극적으로는 재정적자를 감소시킨다고 부시 행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대외거래 상태를 나타내는 경상수지 적자다.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 8,567억달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6.5%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90% 가량이 무역적자에서 비롯된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유 수입 절대액이 급증한 데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지난해 대중국 무역적자는 2,325억달러로 전년의 2,015억달러에 비해 15% 가량 늘었다. 대일본 무역적자도 884억달러로 전년의 825억달러에 비해 증가했다.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는 내부 요인도 만만치 않다. 부시 행정부의 지속적인 조세 감면을 통한 재정 정책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었지만 이것이 저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소비만 자극하면서 끝없는 수입 증가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 5년간 급증 추세를 보여온 경상수지 적자 증가세가 2007년부터는 주춤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AP통신은 글로벌 인사이트의 이코노미스트인 니겔 골트 전망자료를 인용해 2007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8,070억달러 가량으로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했다.

[매일경제 2007-03-15]

## 일본 베이비붐 세대 퇴직의 본격화 및 그 영향

- 2007년부터 일본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생)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본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퇴직금 수령, 시간적 여유 등으로 소비 증가가 기대되는 한편 주거, 보건·의료, 여행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이 커지는 등 소비의 내용 변화도 초래될 전망이다. 또한 노후 생활에 대비한 자산의 효율적 운용 필요성으로 주식 등 수익성 금융자산의 보유 증가가 예상
- 한편 베이비붐 세대 퇴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동 세대 근로자 비율이 높은 제조업 등에서는 노동력 부족, 기능 계승 미흡 등의 우려도 제기
- 다만 그간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이 베이비붐 세대 퇴직에 대비하여 정년 연장, 재고용 제도 도입 등 다각적 대응책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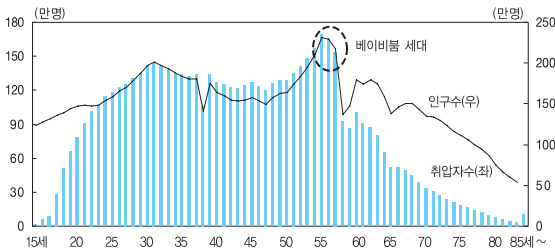
### (2007년부터 베이비붐 세대 퇴직이 본격화)

- 2007년중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인 1947년생이 정년을 맞이함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
  -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생)는 약 678만명으로 총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전 세대(1944~1946년생, 약 463만명)의 약 1.5배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
    - \* 총무성 국제조사(2005년) 기준
- 특히 베이비붐 첫 해인 1947년생(약 218만명)은 1946년생(약 137만명) 보다 약 81만명이나 많은 수준
  - 또한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수는 약 489만명(전 취업자 수에 대한 비율은 8.0%)으로 다른 세대 보다 20~50% 정도 많음



- 도쿄 미츠비시은행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 60~64세 퇴직자 수는 2007년 42만명, 2008년 46만명, 2009년 48만명으로 2006년의 37만명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수



자료: 총무성 국세조사(2005년)

- 한편 일본의 베이비붐(1947~1949년)은 구미(1946~1965년)에 비해 단기간에 종료된 것이 특징으로 베이비붐 세대 퇴직의 영향이 구미보다 빠른 속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재외 일본인이 대규모로 귀국해 결혼·출생붐이 일어났지만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 1948년) 등 인구증가 억제책이 취해져 출생률이 급감

\* 우생학적 관점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하고 여성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임신중절을 합법화

- 미국 등에서도 전후 출생붐이 일어났지만 인위적인 인구 억제책은 없었기 때문에 출생붐은 20여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

(소비 증가와 더불어 소비 내용의 변화가 초래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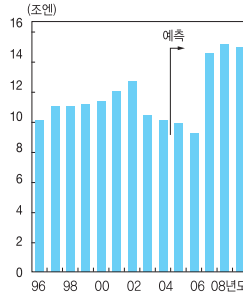
- 약 14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3개년에 걸쳐 정년 후 은퇴 세대로 이행함에 따라 소비 증가와 더불어 소비 내용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

- 베이비붐 세대는 풍부한 금융·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퇴직금까지 더해지면 소비 여력이 한층 더 확대되는 데다 고령층은 평균 소비성향도 높아 동 세대의 고령층으로의 이행은 소비 증가에 기여 가능

- 정년퇴직과 함께 2007~2009년 3년간 최대 약 40조~50조엔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전 세대에 비해 퇴직금 규모가 큰 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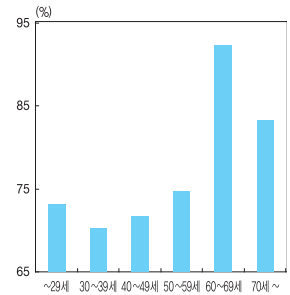
\* 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 약 50조엔, 농림중금총합연구소는 약 38조엔 등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금 수령 예상액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연도별 퇴직금 규모



자료: 富國生命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2005년)

- 퇴직금 중 일부만을 소비하더라도 가계소비지출 및 성장률을 상당폭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

· 富國生命은 2007년도 퇴직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은 약 5.4조엔이며 그 10%인 약 5,400억엔이 소비지출 증가로 나타나고 이는 개인소비를 약 0.2%포인트, GDP 전체를 약 0.1%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

- 한편 은퇴와 더불어 주거, 보건의료 등에 대한 소비 비중이 확대

- 퇴직자 본인의 고령화로 의료나 간호, 건강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소비가 확대되고 거주주택의 교체, 수선 및 유지를 위한 지출이 증가

- 또한 시간적 여유가 풍부해짐에 따라 패키지 여

- 행 등 여가 · 레저 관련 소비도 증가
-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1960년대 고도성장기를 이끌어 왔다는 자부심이 강하며 이전의 고령세대에 비해 생활을 즐길 자격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여가 활동에 적극적
  - 동 세대는 신상품 ·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한 세대로서 기존 고령층과 달리 PC, 휴대전화 등을 잘 다루는 세대로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의 지출 확대도 기대

품목별 1세대당 월간 지출 비율(세대주 연령별)

(단위 : %)

	~ 24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 54	55~ 59	60~ 64	65~ 69	70세 ~
식료품	6.0	6.6	7.6	9.0	10.4	11.1	10.8	10.6	10.0	9.2	8.8
가구 · 가세용	6.0	9.2	8.0	8.7	8.8	10.4	10.3	11.6	9.7	9.5	7.8
피복 및 직물	5.1	8.1	8.7	10.0	10.7	12.0	11.8	10.8	9.3	7.7	5.8
보건의료	5.5	8.9	7.9	8.3	8.4	9.1	9.2	8.9	10.4	10.8	12.7
주거	12.6	14.3	11.2	8.9	6.3	5.5	5.9	6.2	7.8	10.2	11.2
교통 · 통신	6.9	9.1	9.5	11.3	9.9	11.7	11.8	10.5	8.4	6.8	4.1
교육	1.0	3.1	6.5	9.9	18.8	29.9	22.0	6.8	1.2	0.5	0.4
교양오락	3.4	7.8	8.1	11.5	12.1	11.9	9.7	9.7	9.5	8.9	7.4
패키지여행비	1.8	4.3	5.2	7.7	8.5	9.6	7.9	13.4	16.0	16.3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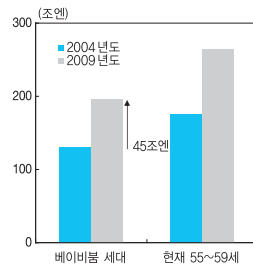
주: 전국 · 근로자세대(능력여가세대 제외)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2005년) (주식 등 수익성 금융자산 보유 증가 예상)

- 베이비붐 세대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노후 생활에 대비하여 주식, 외화자산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
- 베이비붐 세대가 수령하게 될 퇴직금은 이전 세대에 비해 규모가 큰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 소멸에 대응하여 보유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필요성이 증가
- 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 베이비붐 세대는 2004년 현재 129.9조엔의 개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174.9조엔으로 확대되고 증가한 45조엔 중 유가증권, 주식, 외화자산 등으로

총 10조엔에 달하는 자금이 흘러들어갈 것으로 시산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하는 금융자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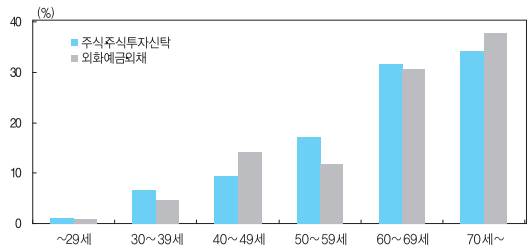


증가액(조엔)	
은행예금	18.6
생명보험	10.3
채권 · 공사채투신	1.6
유가증권	5.8
주식	3.6
외화	0.8
금융자산 증가 총액	45.0

자료: 제일생명경제연구소

- 이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에 의해 수익성이 높은 주식 투자가 확대 및 활성화되고 외화자산 보유 잔액도 증가할 전망
- 일본 금융기관들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금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개발 · 판매에 나서고 있어 수익성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고 베이비붐 세대 스스로도 풍족한 노후생활을 위해 자산의 효율적 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큼
- 또한 최근 높은 이자율 지향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은행 정기예금에서 투자신탁으로 자금이 이동함에 따라 투자신탁을 경유한 가계의 외화자산이 급증하여 엔화 약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

연령별 주식 및 외화자산 보유 비율



주: 순세대 자산 잔액에 대한 세대주 연령별 1세대당 보유 잔액의 비율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2006년 3 · 4분기)

(청년실업은 개선되었으나 기능계승 등이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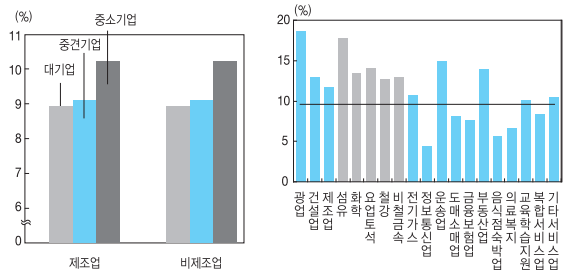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의 신규채용 증가 및 청년실업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최근 기업들의 신규 졸업자 채용 확대로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을 대비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
- 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 2009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중심의 고령 퇴직자 수는 전 산업에서 최대 149만명으로 이로부터 116만명의 새로운 고용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시산
  - 일본 경단련의 '2006년도 신규졸업자 채용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채용실시기업 비율은 94.4%, 그 중 채용인원 수가 증가한 기업은 55.4%로 모두 2005년도(91.2%, 53.9%)에 비해 상승하였고 채용인원 수를 늘린 이유로는 '인재 확보', '전후세대의 퇴직에 대비' 등을 응답

- 노동수요 확대가 기대되지만 기존의 베이비붐 세대가 주로 기여해온 업종에서는 기능 전수 등의 문제 발생 가능
  - 제조업은 베이비붐 세대 근로자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아 노동력 확보뿐 아니라 생산 현장의 기능 계승도 매우 시급한 문제로 인식
- 섬유공업, 철강업 등 제조업에서 비율이 높은 것은 동 세대의 취업 당시 호황이었던 분야로 현재 까지도 당시의 대량 채용의 영향이 남아 있고 이후 정리하고 실시 등으로 신규 채용도 부진했기 때문
-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지식 · 기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령 근로자는 64.4%로 다수가 기능 계승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그 중 '잘 전달되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

자는 4.9%에 불과

- \* 일본 노동정책 연구 · 연수기구가 1947~1951년생 근로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 특히 중소 제조업은 문제가 더 심각하여 고령 기능공 등의 후계자 양성이 여의치 않아 업무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오사카시 신용금고가 거래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후계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로 '적임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영자가 전체의 80.7%로 압도적으로 많음

규모별 베이비붐 세대 비율 업종별 베이비붐 세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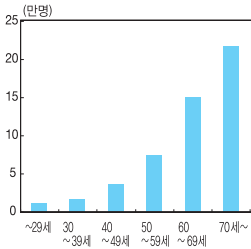
자료: 미즈호종합연구소

자료: 후생노동성 고용동향조사(2004년)

(주택구입 및 보수공사 수요 증가)

- 고령층 퇴직자 수요에 의한 신규주택 착공 및 주택 보수공사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해 교외나 리조트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고령 세대가 증가하면서 맨션(고급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수요가 확대
-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수요가 활발해질 전망이고 주택의 안전을 위한 설비(계단 · 복도 등의 난간, 방범시설 등) 공사 수요도 증가
- 향후 60세 이상 고령 세대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주택 구입 및 개량 수요는 한층 더 확대되어 주택투자의 하향선을 유지하는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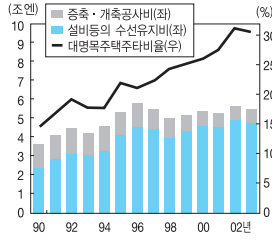
세대주 연령별 설비수선비 지출



주: 전국 · 근로자세대(농림어가세대 제외)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2005년)

주택 개량 시장 규모



자료: 일본총합연구소

- 다만 사무실 수요는 위축될 소지가 있으며 인구 (특히 청년층) 감소에 의한 주택수요 감소를 고려 세대의 수요 창출로 만회하는 데는 한계
  -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에 따른 사무실 근로자 수 감소는 사무실 수요 감소로 연결
- 특히 동경(23區)의 사무실 근로자 수는 2005년부터 2010년에 걸쳐 9만 8천명 감소(연평균 5%씩 감소)하여 2000~2005년중 감소폭 6만명의 1.6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보유비율은 이미 높은 수준이므로 동 세대에 의한 주택수요 창출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가능성

(부정적 영향은 우려만큼 크지 않을 전망)

- 노동력 부족, 기능 계승 불충분 등 베이비붐 세대 퇴직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간 우려에 비해 크지 않으며 그에 따른 위기상황도 없을 전망
  - 그간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은 베이비붐 세대 퇴직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옴
- 정부는 노령후생연금의 지급연령을 상향조정하여 재정 악화를 방지하는 한편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2006. 4월 시행)하여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규정 폐지 등 조치를 의무화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에 따른 무소득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나 베이비붐 세대 퇴직으로 노동력 부족 염려가 강해지면서 노동력 확보의 유력한 수단으로 주목

- 기업들도 노동력 확보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기업 실정에 적합한 재고용 제도를 도입
  - 베이비붐 세대는 노동의욕이 높아 상당수가 정년 후에도 계속 직장에 남아 일하고 기능 계승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
- 노동정책 연구 · 연수기구의 설문조사에서 현 직장에서 60세 이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61.1%, 특히 올해가 정년인 1947년생의 희망률은 71.8%에 달함
- 기능 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능을 전수해 줄 상대가 없기 때문이므로 신규 채용 확대로 청년층 노동력이 보충된다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 가능
  -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퇴직금, 연금 등의 지급 부담은 확대되겠지만 고임금 근로자 감소에 의한 인건비 부담 감소 효과도 상당

[한국은행, 주간해외정보 2007-03-14]

스웨덴 연금제도 배우자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 사회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스웨덴의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벤치마킹해 응용하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5일(현지시간) 스웨덴이 공공연금을 개인의 소득 정도와 전반적인 연령 생존율에 연계시키는 방식을 취해 국민연금의 생산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또 정년도 연장해 재원 부족도 메워나가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은 이 시스템을 10여년 전부터 채택해 왔다.

저널은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버린 뒤 닥쳐온 연금난을 스웨덴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브라질과 러시아도 스웨덴 방식의 일부 요소를 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집트의 경우 내달 연금제도를 스웨덴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저널은 “스웨덴 제도는 임금과 예상 수명에 연계시켜 융통성 있게 운용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가 나쁠 경우 상대적으로 연금이 내려가는 점도 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스웨덴 연금은 특정 연령층의 예상 수명이 길어질수록 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낮아지도록 돼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반면 이런 방식은 경기가 나빠지면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비판도 적지 않다. 세계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연금은 은퇴 전 보수의 40% 이상은 돼야 하는데 스웨덴 방식은 이런 보장이 없다. 또 취업 때의 임금 불균형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따라온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 등에선 이런 연금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부자가 더 많이 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저널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방식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세계은행이 지난 2월 스웨덴 방식을 승인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2007-03-07]

## EU, 기업행정부담 완화 작업 가속

### -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과 고용 개선이 목적

- EU 집행위는 위생안전이나 환경 측면에서의 보호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특히 중소기업)이 겪는 쓸데없는 행정 부담을 완화키 위한 일련의 속성 조치(3개 조치)를 제안했음. 이들 조치는 운송업체와 극소규모(주로 자영업체)의 제과점, 정육점, 식품판매점을 비롯해 기업의 병합 또는 분열에 관한 것임.
- 기업 합병 또는 분열의 경우, 주주들이 관련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는 한 전문가에 의뢰해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어짐. 이 조치는 EU 60만 주식회사들에 적용되는데 대기업보다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 조치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일반적으로 합병 또는 분열 관련 보고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평균 3,500유로).
- 운송업체와 관련 운송업자들은 앞으로 통과국 경이나 노정표 같은 운송서류를 소지해야 할 의무가 폐지됨. 이 조치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30만이 넘는 운송업체들에 적용될 것임(운송업체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업체들임).
- 식품분야에서 활동하는 극소규모 기업들에게(동네 정육점, 제과점, 식품점 등) 슈퍼마켓과 같이 대기업에 요구되는 동일한 수준의 위생 절차와 시행 서류가 요구되지 않을 것임.
- 이 조치는 지난 1월 집행위가 회원국들과 협력하에 2012년까지 기업의 행정부담을 25% 줄임으로써 연간 13억유로의 행정비용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앞으로 추진할 10개 활동의 일환임.
- 기업합병이나 분열의 경우 주주에 관련 정보 제공은 자율적(지금까지는 의무였음)
- 연료생산용 농산물을 수거하거나 공정하는 기

업(주로 농민)이 보조금을 수령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행정 서류(선언서 등) 수 감축 : 지난 2월에 이미 승인돼 다음 주 중에 채택될 예정이다.

- 농산물과 관련 수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수출 증명 서류의 요구사항 완화
- 농산물 관련, 통계 보고 횟수를 연 1회로 감축
- 지금까지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운송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던 것으로 불필요한 행정서류 폐지
- 운송 부문에 전자정보교환시스템 도입(이를 통해 행정부담 경감)
- 해운 부문에서 일련의 행정절차와 정보의무 간소화
- 상업 활동이 한 지역에 국한된 소규모 제과점과 정육점 등 소기업에 대해 식품위생안전 목적으로 요구되는 일련의 검사분석 자료 제공 면제 (그러나 식품안전 및 위생에 대한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에는 변함 없음).
- 일부 어선에 대한 행정적 요구 간소화
- EU는 성장과 고용 창출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중순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법, 제약, 부가가치세 및 조세법, 통계, 농업·농업보조금, 식품안전, 운송, 수산, 금융서비스, 환경, 사회 및 경제 결속정책, 정부조달 등 12개 분야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 행정부담액 조사는 SCM(Standard Cost Model)에 의해 시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각기 구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SCM은 다수의 OECD국가들이 행정부담비용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표준비용계산방법).
- SCM 계산 방법의 예
  - 어떠한 한 양식을 채우기 위해 한 직원(시간당 임금 20유로)이 연간 4회에 걸쳐 2시간을 할당하고 이러한 행정 의무를 10만 업체가 이행해야 한다고 할 때 해당 행정의 총비용은

1,600만유로가 소요

- EU의 행정부담 완화 정책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된다면 우리 업체의 유럽시장 수출 또는 투자진출이 간접적으로 용이하게 될 수 있음. 그러나 규정 및 행정 간소화로 유럽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을 감안해 우리도 유럽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에 노력해야 할 것임.

[KOTRA, 경제무역 2007-03-09]



# | 정책 흐름 |

-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

\* 이 자료는 2007년 4월 4일 재정경제부 재정정보과에서 발표한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완료하고 2007. 4. 3(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 동 결산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 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정부는 2006년 국가경제를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적인 발전기반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였음
  - 이러한 경제운용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는 실질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하여 잠재수준의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하였고
  - 수출도 3,255억달러로 호조세를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2%로 안정되었음
  - 재정에서도 R&D 등 미래성장동력의 확충, 사회안전망 구축 등 양극화 완화 등의 분야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음
-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 통합재정수지는 3.6조원 흑자(GDP 대비 0.4%)이며, 이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와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0.8조원 적자(GDP 대비 -1.3%)로서
    - 이는 국가재정운영계획상 06년 목표(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0.1%, 관리대상수지 -1.7%)보다 다소 개선된 수준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은 총세입 206.2조원, 총세출 200.9조원으로 5.3조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 이 중 차기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4조원임  
(일반회계 1.4조원, 특별회계 1.0조원)
  - 61개 기금의 운용 결과 5.7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 국가채권\*(중앙정부)은 국민주택기금 용자금 등 증가로 2005년보다 6.6조원 증가한 137.5조원이며,
    - \* 금전채권만을 말하며, 외화자산·국고금·물품과 국유재산을 포함하는 국가자산은 474.6조원임
  -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채발행 등으로 2005년보다 34.4조원 증가한 273.2조원(GDP 대비 32.2%)이고
    - \* 지방채무 포함시 282.8조원, GDP 대비 33.4%
  - 국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5.4조원 증가한 269.8조원임

## I.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 주요내용

### 1. 세입세출 결산

#### ■ 총세입 · 총세출 실적

- 총세입 결산액은 206조 2,108억원으로 예산(204조 2,145억원) 대비 1.0% 증수
  - 국세수입 : 예산대비 2조 7,107억원\* 증가
    - \* 소득세(3조 3,266억원), 법인세(2조 4,791억원), 증권거래세(7,232억원), 교통세(△2조 1,281억원) 등
  - 세외수입 : 예산 대비 7,144억원\* 감소
    - \* 국채발행수입(△1조 3,000억원), 유가증권매각대(△1조 2,735억원) 등
- 총세출 결산액은 200조 8,786억원으로 예산현액(207조 881억원) 대비 97.0% 집행

(단위 : 억원)

구분	세입(A)	세출(B)	결산상잉여금(C=A-B)	다음연도 이월액(D)	세계잉여금(E=C-D)	불용액
일반회계	1,478,668	1,448,360	30,307	16,577	13,730	15,267
특별회계	583,441	560,426	23,015	12,577	10,438	17,673
합 계	2,062,108	2,008,786	53,323	29,155	24,168	32,940

#### ■ 이월, 불용, 잉여금 규모

- 이월규모는 2조 9,155억원으로 시설사업의 공사 지연 등으로 전년 2조 4,117억원보다 5,038억원 증가

#### 연도별 이월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일반회계	13,264	12,372	10,148	16,577 <sup>1)</sup>
특별회계	46,868	28,652	13,969	12,577 <sup>2)</sup>
합 계	60,132	41,024	24,117	29,155

주: 1) 시설사업 지연 등(국방부 4,405억원, 건교부 4,279억원, 방위사업청 3,168억원 등)

2) 교통시설 3,236억원, 국유재산관리 2,958억원 등

- 불용규모는 3조 2,9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

조 8,072억원 감소하였으며,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연 등으로 불용이 발생

#### 연도별 불용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일반회계	7,743	20,114	12,584	15,267 <sup>1)</sup>
특별회계	32,512	50,472	38,428	17,673 <sup>2)</sup>
합 계	40,255	70,586	51,012	32,940

주: 1) 예비비 미집행 등 4,932억원, 금리하락에 따른 원리금상환 감소 1,872억원 등

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042억원, 재정용자특별회계 3,942억원 등

-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3조 307억원이 발생하였으며,
  - 이 중 차기 이월액 1조 6,577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조 3,730억원임

#### 연도별 세계잉여금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일반회계	11,262	1,726	12,367	13,730
특별회계	2,063	6,769	17,399	10,438
합 계	13,325	8,495	29,766	24,168

## 2. 기금결산

- 61개 기금의 재정상태는 자산 641조 4,420억원, 부채 487조 4,905억원으로 순자산은 153조 9,515억원임

#### 재정상태

(단위 : 억원, %)

구 분	2005(A)	2006(B)	증 감 (B-A)	
			금 액	비율
자 산	5,721,923	6,414,420	692,497	12.1
부 채	4,463,326	4,874,905	411,579	9.2
순 자 산	1,258,597	1,539,515	280,918	22.3

- 운용결과 '06년도중 총 5조 6,923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 국민연금(9조 4,949억원) · 부실채권정리(4조 2,357억원) 등 36개 기금에서 16조 5,447억원의 당기순이익 발생
  - 공적자금상환기금(11조 2,343억원/공적자금상환원리금 등) · 외국환평형기금(7조 1,822억원/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 등) 등 25개 기금에서 22조 2,370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손익상황

(단위: 억원, %)

구분	2005(A)	2006(B)	증감(B)-(A)	
			금액	비율
수익	850,539	929,369	78,830	9.3
비용	892,218	986,292	94,074	10.5
당기손익	△41,679	△56,923	△15,244	36.6

3. 국가채권 결산

- '06년말 국가채권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37.5조원(GDP 대비 16.2%) 수준
  - \* 국가채권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영하는 회계 및 기금에서 발생한 금전적 청구권(예: 융자금, 예금·예탁금,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등)을 의미

국가채권 규모의 변동 추이

(단위: 조원, %)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p)
국가채권	159.2	130.7	128.4	130.9	137.5
(증가율)	(2.6)	(△17.9)	(△1.7)	(2.0)	(5.0)

\* 구성(%): 융자금 80.2, 예금및예탁금 9.0, 조세 5.5, 기타 5.3

- '06년도 국가채권 주요 증감요인
  -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2.9조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0.8조원), 조세채권(△0.3조원)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5.2조원), 정보통신진

흥기금 경상이전수입(1.3조원)은 크게 증가

- 앞으로 성과평가제 내실화 등 채권관리 강화, 전산화의 지속 추진 등을 통해 국가채권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4. 국가채무 결산

- '06년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말(238.8조, 29.6%)에 비해 34.4조원 증가한 273.2조원(GDP 대비 32.2%)
  - 이는 정부의 일반회계 적자국채 1.3조원 미발행 결정('06. 11월) 등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2.7조원 감소한 것임
  - 중앙정부 채무의 주요 증가요인은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11.5조원), 공적자금 국채전환·이자(10.8조원), 일반회계 적자보전(8.0조원), 국민주택기금(3.6조원) 등임
- 중앙정부 채무(273.2조원)와 지방정부 채무(9.6조원)\*를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는 '06년말 현재 282.8조원(GDP 대비 33.4%)으로 전년말(248.0조원, 30.7%)에 비해 34.8조원 증가
  - \* '06년 현재 지방정부 총채무는 19.4조원이며, 對 중앙정부 채무 9.8조원을 제거한 지방정부 순채무는 9.6조원임
  - 동 국가채무 수준은 정부가 당초에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수치('06년 283.5조원, GDP 대비 33.4%)보다 0.7조원 감소한 것임
- '06년도 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33.4%인 282.8조원이나, 국가채무의 내용면에서 건전성을 유지
  - 자산 또는 융자금 보유가 있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전체의 57.6%인 162.9조원(GDP 대비 19.2%)
  -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채 발행(외평기금)

78.6조원,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자금 지원(국민주택기금) 43.3조원, 농어민·중소기업·지방재정 등에의 융자지원(재정융자특별회계) 22.9조원 등

-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전체의 42.4%인 119.9조원(GDP 대비 14.1%)

\* 일반회계 적자보전 48.9조원, 공적자금 국제전환 53.2조원, 지방정부 순채무 9.6조원 등

- 또한, 국가채무보다 많은 총 474.6조원의 자산을 보유

\* '06년말 정부 보유자산 : 금전채권 137.5조원, 국유재산 269.8조원, 외화자산 53.1조원, 물품 8.9조원, 국고금 5.3조원

- 국가채무 수준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06년말 OECD 평균 76.9%나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규정한 60% 기준보다 양호

### 주요국의 국가채무/GDP 비율

('06년말 기준,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OECD 평균
33.4	60.9	176.2	71.3	75.3	47.9	76.9

\* 외국자료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06, 12월  
(한국은 IMF 기준으로 33.4%이며, OECD 기준으로는 27.9%)

- 한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관리 필요성이 있는 보증채무는 '06년말 현재 전년 대비 18.5조원 감소한 36.5조원(GDP 대비 4.3%)
- '03년 이후 공적자금의 국제전환 및 단계적 회수가 진행되면서 공적자금 관련 보증채권의 규모가 크게 축소

### 공적자금 국제전환 현황과 보증채무 추이

(단위 : 조원)

	'03	'04	'05	'06	계
공적자금상환원금 국제전환	13	12	12	12	49
보증채무	80.6	66.0	55.0	36.5	-

### <참고>

### '06년 국가채무 증감 내역

(단위 : 조원)

구 분	'05(A)	'06(B)	증감(B-A)
□ 국가채무	248.0	282.8	34.8
(GDP 대비, %)	(30.7)	(33.4)	(2.7%p)
① 금융성 채무	147.1	162.9	15.8
(GDP 대비, %)	(18.2)	(19.2)	(1.0%p)
• 외평기금	67.1	78.6	11.5
• 국민주택채권	39.7	43.3	3.6
• 재정융자특별회계	24.5	22.9	△1.6
• 기 타	15.8	18.1	2.3
② 적자성 채무	100.9	119.9	19.0
(GDP 대비, %)	(12.5)	(14.1)	(1.6%p)
• 일반회계 적자국채	40.9	48.9	8.0
• 공적자금 국제전환	42.4	53.2	10.8
• 지방정부 순채무	9.2	9.6	0.4
• 기 타	8.4	8.2	△0.2
□ 보증채무	55.0	36.5	△18.5
(GDP 대비, %)	(6.8)	(4.3)	(△2.5%p)
□ 국가자산	455.9	474.6	18.7
• 국유재산	264.4	269.8	5.4
• 국가채권	130.9	137.5	6.6
• 물 품	8.3	8.9	0.6
• 외화자산	46.9	53.1	6.2
• 국 고 금	5.4	5.3	△0.1

### 5. 국유재산 결산

- 2006년말 국유재산 현재액은 269조 7,575억원으로 전년 말(264조 3,794억원)에 비하여 5조 3,781억원이 증가(2.0%)

- 국유재산 주요 증감 요인
  - 건물이 1조 8,833억원, 토지가 9,489억원 증가하였는바, 이는 군부대 시설, 국립대 등 학교시설 신·증축, 공유수면 매립 등에 주로 기인
  - 출자에 따른 증권·주식취득과 기금의 수익 증권 매입 등으로 유가증권 1조 7,550억원 증가
    - 도로공사(10,844억원), 주택공사(8,076억원) 등 출자
  - 국방부 오수처리시설, 해수부 항만 증가 등으로 공작물 4,253억원 증가

〈'06회계연도 국유재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5년도말(구성비)	'06년도말(구성비)	증감액(증감률)
토 지 (면 적)	1,056,250(40.0) (16,003km <sup>2</sup> )	1,065,739(39.5) (16,166km <sup>2</sup> )	9,489( 0.9) (163km <sup>2</sup> )
건 물	271,526(10.3)	290,359(10.8)	18,833( 6.9)
공 작 물	200,855( 7.6)	205,108( 7.6)	4,253( 2.1)
입 목 축	50,639( 1.9)	52,367( 1.9)	1,728( 3.4)
선박·항공기	9,009( 0.3)	10,534( 0.4)	1,525(16.9)
기계기구	2,408( 0.1)	2,399( 0.1)	△9(△0.4)
유가증권	1,047,310(39.6)	1,064,860(39.5)	17,550( 1.7)
무체재산	5,797( 0.2)	6,209( 0.2)	412( 7.1)
계	2,643,794(100.0)	2,697,575(100.0)	53,781( 2.0)

6. 통합재정수지

- '06년 결산결과(잠정), 중앙정부의 통합재정규모는 GDP의 24.3%인 205.9조원으로 전년 187.9조원에 비해 18.0조원 증가하였음
  - 통합재정수지는 3.6조원 흑자(GDP의 0.4%)로서 전년(3.5조원)보다 0.1조원 증가
  - 관리대상수지는 10.8조원 적자(GDP의 △1.3%)로서 전년(△8.1조)보다 2.6조원 증가

'06년 재정수지 증감 내역

(단위 : 조원)

	2005(a)	2006(b)	증감(b-a)
총수입(A)	191.4	209.6	+ 18.1
총지출(B)	187.9	205.9	+ 18.0
통합재정수지(C=A-B)	3.5	3.6	+ 0.1
관리대상수지*	△8.1	△10.8*	△2.6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26.4조원)와 공적자금상환 원금(12조원)을 제외

- '06년 유가·환율 변동, 수해피해 등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정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한 결과로 평가

II. 국가채무 주요논점 설명

1. 참여정부 4년간 국가채무 증가가 방만한 재정운용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

- 참여정부 기간('03~'06년) 동안 국가채무는 149.2조원 증가
  - 전체 채무의 81%(119.9조원)는 외환위기의 극복, 외환시장 안정, 서민주거안정 등에 사용된 불가피한 지출임

- ① 공적자금 국채전환 : 53.2조원(36%)
  -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했던 구조조정채권을 국채로 전환한 것임
  - '06년으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되므로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예정
- ②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 57.9조원(39%)
  - 환율 하락에 대응하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뒷

받침함

-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금융성 채무로서 재정건전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음

③ 국민주택채권 발행 : 9.3조원(6%)

- 임대주택건설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의 목적으로 발행하여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
-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임
- 한편, 참여정부가 재정수입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행한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22.5조원(15%)에 불과함
- 이는 향후 국민들이 세금 등을 통해 부담하게 될 적자성 채무이나,
-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 역할을 수행함

- 이와 같이 참여정부 기간 동안 증가한 채무는 방만한 재정운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재정부담을 연차적으로 해소하고, 외환시장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 등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임

최근 4년간 국가채무 증감내역

(단위 : 조원)

국가채무의 종류	2002년(A)	2006년(B)	증감분(B-A)
○ 총규모	133.6	282.8	149.2
- 공적자금 국채전환	-	53.2	53.2
- 외환시장안정용국채	20.7	78.6	57.9
- 국민주택채권	34.0	43.3	9.3
- 일반회계 적자국채	26.4	48.9	22.5
- 지방채무 등 기타	52.5	58.8	6.3

2.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닌가?

- 최근 국가채무 속도가 증가한 원인은 구조적·지속적인 것이 아닌 단기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 기인함
  - 즉, 과거 정부에서는 발행규모가 미미했던 공적자금 국채전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이 대부분을 차지함
  -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증가 규모는 총 38조원으로 참여정부 4년 동안 평균적으로 9.5조원 증가함
    - \* '98년~'02년 기간 중 나머지 부분의 국가채무 증가는 연평균 11.3조원으로서 총 56.7조원 증가
-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연도별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06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전년 대비 증가규모는 '05년 44.9조원으로 정점을 보인 후, '06년 34.8조원, '07년 18.3조원으로 점차 감소
  - 또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06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10년에는 GDP 대비 31.3%의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전망

연도별 국가채무 순증규모

(단위 : 조원)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총규모 증분(A+B+C)	20.1	18.2	12.8	10.7	11.5	32.1	37.4	44.9	34.8
• 공적자금국채 전환증분(A)	-	-	-	-	-	14.4	15.0	13.0	10.8
• 외평기금증분(B)	4.8	1.9	2.7	0.6	6.6	12.8	17.8	15.9	11.5
• 기타 증분(C)	15.3	16.3	10.1	10.1	4.9	4.9	4.6	16.0	12.5

### 3.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감당가능한 수준인가? (국가채무의 국제비교)

■ '06년 결산상 국가채무는 282.8조원(GDP 대비 33.4%)이며,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전체의 42.4%인 119.9조원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

- 특히, 정부 보유자산 474.6조원\*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위험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국가채권 137.5조원, 국유재산 269.8조원, 물품 8.9조원, 외화자산 53.1조원, 국고금 5.3조원 등

■ 우리나라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은 '06년 OECD 평균 76.9%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 특히, 우리나라는 OECD 30개 국가 중 4번째 \*로 낮은 국가채무 보유국 ('06.12. OECD Economic outlook)

\* 우리나라보다 채무수준이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6.6%), 호주(15.0%), 아이슬란드(24.5%) 등 3개국에 불과

- 유럽의 재정건전성 판단지표로 통용되는 Maastricht 기준 60%에 비해서도 우리 재정은 건전한 상태임

■ 무디스, S&P 등 국제적인 기관들도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신용등급(전망) 상향 조정의 핵심지표로 고려

- S&P 신용등급 상향조정('05. 7.27) : A- → A
- Fitch 신용등급 상향조정('05.10.24) : A → A+
- 무디스 신용등급전망 상향조정('06.4.25) : A3(안정적) → (긍정적)

### 4. 향후 국가채무 전망과 정부의 국가채무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은 '06년 공적자금 국

채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07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중장기적으로 30%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06	'07	'08	'09	'10
국가채무(조원)	282.8	301.1	320.4	336.9	350.5
(GDP 대비, %)	(33.4)	(33.2)	(32.9)	(32.3)	(31.3)
일반회계 국채(조원)	8.0	8.0	8.5	8.1	7.5

\* 자료 출처 : '06~'10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 단, '06은 결산(잠정) 기준이며, '07년은 예산 기준임

■ 정부는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

- ① 과세기반 확충 및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대한 억제
- ② 국가재정법을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국가채무관리계획 작성 및 국회제출 (제34조, 제91조)
  - 재정부담 수반 법령은 재원조달 방안 첨부 의무화 (제87조)
  - 추경요건 제한 (제89조), 국세감면 제한 (제88조),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우선상환 의무화 (제90조) 등

③ 재경부 국고국 내 “국채과”를 신설하여 국가채무의 93%인 국채의 효율적 관리 및 국채시장 발전 강화

〈참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법  
주요내용**

- ① 과도한 추경편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경편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제89조)
  - 전쟁·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대규모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 법령에 의한 지출 소요에 한정
- ② 세계잉여금 사용순서 신설(제90조)
  - (i) 지방교부금 정산 → (ii) 공적자금 상환 출연((i) 정산 후 남은 금액의 30% 이상) → (iii) 국가채무 상환((ii) 출연 후 남은 금액의 30% 이상) → 추경재원 활용 순으로만 사용 가능
- ③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제34, 91조)
  -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차입·상환 실적 및 전망
- ④ 재정부담 수반 법령에 대해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제87조)
  - 5개 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 및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 법률안에 첨부
- ⑤ 국세감면 비율 제한(제88조)
  - 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각 부처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폐지방안을 반드시 마련
  - \*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일정비율을 「직전 3개연도의 국세감면율의 단순평균 + 0.5%p」로 규정(제41조)

〈참고〉

**중장기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 추진 배경
  - 장기·구조적 재정환경(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의 변화에 따라 중장기 視界하의 국가채무관리 필요성 증대
  - 국가재정법 시행에 따라 금년 9월말까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할 의무
- 주요 내용(국가재정법 제91조 1항)
  - ① 국채 및 차입금 관련
    - '05~'06년 국채 및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 '07년 국채 및 차입금의 발행 및 차입계획
    - '08~'11년 국채 및 차입금의 상환계획
  - ② 국가채무 증감전망
    - :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채무전망과 통일성 유지
  - ③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 현황
- 기대 효과
  - 종래 국가채무 규모에만 집중되던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산부채관리(ALM) 차원에서 종합·체계적 분석 및 관리 지향
  - 이를 통해 정부 채무관리의 가이드라인 및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이 자료는 2007년 4월 2일 재정경제부 통상기획과에서 발표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I. 한·미 FTA 타결의 거시경제적 영향

### 1. 거시경제 효과(총괄)

- 한·미 FTA는 대체로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한 소득증대와 물가안정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후생증대에 기여

#### 3大 소득증대 경로

- 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증진
  -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증대 등
- ② 투자 확대
  -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보호 등 투자 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 민간부문 소득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
- ③ 생산성 향상
  -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
  - ※ ①→②→③ 順으로 파급효과는 클 수 있으나,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이 관건

- 소비자 후생증대
  - : 물가안정, 소비의 선택폭(다양성) 확대
- 소득증대 + 소비자 후생증가
  - ⇒ 우리 경제의 성장·후생증대

### 2. 거시경제 부문별 영향

#### 가. 교역

- 對 미국 및 세계 수출 증대
  -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對美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
    - \* 전년 대비 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06)
      - ① 중국 18.2%, ② 일본 7.2%, ③ 대만 9.7%, ④ 인도 16.1%, ⑤ 한국 4.7%
  -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 상품의 對美시장 점유율도 반전 기대
    - \* 주요국의 시장 점유율 변화추이('95→'06년, 점유율 1%는 약 170억달러 규모)
      - ① 한국 3.3 → 2.5 ② 멕시코 8.3 → 10.7
      - ③ 중국 6.1 → 15.5 ④ 일본 16.7 → 8.0
- 주요 기대 수혜품목
  - 자동차·섬유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
  -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전기 등 품목은 낮은 관세이지만 관세철폐시 우리측 경

쟁력이 높아 수출확대 전망

- 가죽·고무·신발 등은 고관세(10~20%) 품목으로 큰 수혜 예상

■ FTA 체결에 따른 가장 큰 가시적 효과는 교역 증대

(단위 : 억달러)

대미 FTA 사례(대미수출액 증가율)	우리나라 FTA 사례(우리 수출액 증가율)
캐나다('94)1,833→('02)3,454 연11%	싱가포르 ('05)74→('06)95 연28%
멕시코('94)519→('05)1,835 연23%	칠레 ('03)5.3→('06)15.8 연66%
칠레 ('03)37→('05)67 연41%	

나. 외국인 투자

■ FTA 타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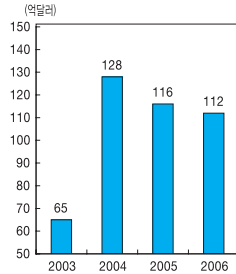
- FTA를 통한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 대외신인도 향상 등에 기인
-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의 직접투자(FDI) 증가도 기대 가능

\*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무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일본, 중국 등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수출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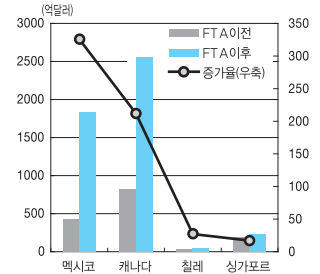
■ 구체적인 외국인투자의 증가규모는 우리의 유치노력에 좌우

-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FTA 체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

국내 FDI 규모 추이



외국의 FTA 체결 전후 FDI 규모



\* 멕시코(03 → 05), 캐나다(88 → 04), 칠레(03 → 04), 싱가포르(03 → 04)

다. 생산성(TFP)

- 우리 경제는 경제의 성숙화에 따라 요소투입의 성장기여가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를 상쇄시켜 주어야 할 생산성 향상도 부진한 모습

\* G7 국가의 연평균 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3% 내외

GDP 성장률과 성장요인 분해(KDI, 06.7)

연도	성장률	성장요인 분해			
		노동	자본	인적자본	생산성
1986~1990	8.5	2.2	3.7	0.5	2.1
1991~1995	7.5	1.6	4.1	0.6	1.2
1996~2000	4.3	0.5	3.2	0.6	0.0
2001~2005	4.4	1.0	1.9	1.0	0.4

- 한·미 FTA 타결로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고 시스템이 선진화되면서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에 기여 예상

-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교류·이동을 통해 선진 기술·경영 Know-how 습득 효과
- 진입장벽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특히,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기대)

\*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생산성 기여도가 마이너스(-)

**업종별 성장 기여도**

(단위 : %, %p)

	75~80		81~90		91~00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 성장률	12.20	7.21	10.58	8.27	7.97	5.34
- 노동·자본 기여도	5.61	8.56	5.62	6.54	3.14	5.47
- 생산성 기여도	6.59	△1.35	4.96	1.73	4.83	△0.13

- 금융·법률·회계 등 기업지원 서비스의 질과 가격 등 이용조건 개선을 통한 기업경영 비용 절감효과

**라. 소비자 후생**

-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수준은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
  - 특히, 개방도가 높은 품목(스낵류, 오렌지 주스 등)에 비해 개방도가 낮은 품목(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
    - \* 쇠고기(국산·수입산) 가격 : 세계 1위, 쌀 : 세계 4위
    - 〈출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07. 3월, 조사대상국가 29개국)
- 한·미 FTA는 단기적으로 (i)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제품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ii) 국내 제품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 \* 소비자물가 수준과 경제 개방도 간에는 역(逆)의 관계
  - 〈출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07. 3월)
  -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직접적 증대 효과는 최대 1,000억원 이상 가능할 전망

**무관세화에 따른 소비자 후생효과(05년 기준)**

대미총수입액	소비재수입	소비재 수입관세	평균 관세율
191,355억원 (188.9억달러)	8,916억원 (8.8억달러)	1424.6억원	16.0%

〈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06. 6월) : 통계청 '가계조사' 대상 소비재 구성을 중심으로 대미수입소비재 품목 중 275개를 추출하여 산정.

- 이와 함께, 종래 제한적 경쟁시장에서 국내의 소수기업이 누리던 이익이 소비자이익으로 환원되는 후생증대효과 기대
- 한편, 한·미 FTA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직접적 가격 인하 외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귀결

**II. 산업별 영향 분석**

**1. 제조업**

**가. 개요**

- 관세인하 및 시장확대를 통한 교역·수출확대 기대
  - 섬유, 가죽, 생활용품 등이 美 고관세 품목이어서 이들 품목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혜택도 클 것으로 전망
- 비관세장벽 완화 등 무역환경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
  - 반덤핑 조사·판정과정에서 우리 제품을 반덤핑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
    - \*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로 미국 현지 통관비용\*과 시간이 절감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

- \* 미측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에 연 4,700만달러 수수료 면제 효과 발생
- 미측의 입찰자격심사 방식 개선 및 입찰대상 확대에 우리기업의 미국 연방조달시장(약 3,400억달러) 진출 기회가 확대

■ 우리 제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활용

- 공동 R&D, R&D센터 유치, 인력개발 등 기술협력역량 확충
- 부품소재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만성적인 대일의존도 완화 예상
- \* 수입전환 가능품목(예시) : 플라스틱, 탄소섬유, 통신키기부품, 전자용 화학원료, 정밀기기 부품 등

나. 업종별 영향

■ 자동차

- 미국 자동차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고 한국산 승용차의 경우 일본차와의 가격차가 3% 내외에 불과하므로 관세(2.5%) 철폐로 상당 수준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능
- \* '06년 對美 완성차 수출액 87억달러(69만대) vs. 對美 완성차 수입액 1억달러(5천대)
- 픽업트럭의 경우 관세(25%) 철폐는 우리 업계에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
- \* 픽업트럭시장: 연간 320만대, 일본산 점유율 15%
- 부품 관세의 즉시 철폐, 현지생산 확대 및 미국시장 판매확대에 따른 부품수출 증가 기대
- \* '06년 對美 부품수출액은 26억달러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의 자동차 부품 수출대상국
- 브랜드 이미지 제고, 소비자 인지도 증대 등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 자동차 관련 세계개편에 따라 우리 업계나 소비자에게도 혜택

■ 섬유

-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대미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를 통한 수출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 발생
- \* 세계시장 점유율 : 4.4%(00) → 2.3%(05), 대미 수출규모 : 32억달러(01) → 20억달러(06), 대미무역수지 흑자규모 : 30억달러(01) → 17억달러(06)
- 폴리에스터·날염 면직물 등의 경쟁력 개선 기대
- 다만, 원산지 기준(Yarn-Forward Rule) 적용의 영향을 받는 업체의 수출증대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

■ 가죽·고무·신발 등 고관세 품목

-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가죽·고무 등의 경우 10~20%의 고관세가 철폐되어 수출확대 기대
- 특히 운동용 신발(48%)은 관세철폐에 따라 큰 폭의 수출신장 가능
- \* 美 평균관세율 : 양말(11.5%), 고무제장갑(14), 가방·핸드백(20), 모자·잡화(11.1) 등

■ 전기/전자 제품

- 미측은 영상 및 생활가전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디지털 TV, 고급가전 제품의 수출증가 기대
- \* 미국은 세계 대형 디지털 TV시장의 32%를 차지
- 非 ITA 협정품목(LCD 모듈, 전지)의 경우에도 對日·對中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전망
- \* 전자산업 對美수출액규모(06) : 가전 21.5억달러, 전자부품 49.2억달러, 산업용 전자 67.9억달러 등 총 145억달러 수준

■ 의약품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既시행(06. 12월)함

으로써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다만, 의약품 지재권 강화로 인해 특허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국산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지연될 가능성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및 국내기업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의약품 대미 수입액 : 3억달러, 대세계 수입액 : 25억달러

〈참고〉

업종별 대미 수출입 통계('06년)

(단위: 백만달러)

	對美			전세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자동차	11,341	583	10,758	43,152	5,811	37,341
- 완성차	8,750	148	8,602	32,922	2,417	30,505
· 승용차	8,610	95	8,515	30,597	1,903	28,694
- 자동차부품	2,591	435	2,156	10,230	3,394	6,836
전자	14,505	10,855	3,650	120,709	69,545	51,164
- 가정용전자	2,150	326	1,824	14,553	4,369	10,184
- 전자부품	4,922	6,153	-1,231	56,128	35,144	20,984
- 산업용전자	6,795	3,377	3,418	44,024	22,059	21,965
일반기계	4,540	5,109	-569	25,313	24,358	955
철강	2,333	586	1,765	18,555	19,415	-860
- 철강재	2,022	230	1,792	16,224	14,593	1,631
- 기타철강재	260	51	209	1,861	710	1,151
- 원부자재	51	306	-255	471	4,112	-3,641
섬유	1,995	219	1,776	13,232	8,037	5,195
- 섬유사	128	36	92	1,322	1,669	-347
- 섬유제품	944	106	838	3,203	4,666	-1,463
- 섬유직물	758	58	700	7,824	1,529	6,295
석유화학	1,042	2,126	-1,004	24,099	10,388	13,711
- 기초유분	472	489	-17	3,069	2,814	255
- 중간원료	2	231	-229	2,945	1,880	1,065

-합섬원료	2	108	-106	3,072	729	2,343
-합성수지	365	610	-245	11,177	2,597	8,580
-합성고무	105	84	21	979	361	618
-기타제품	96	610	-514	2,856	2,637	219
정밀화학	364	2,035	-1,671	5,136	12,093	-6,957
-염료·안료	564	989	-425	41	97	-56
-도료·잉크	447	527	-80	10	50	-40
-접착제	184	191	-7	8	39	-31
-표면활성제	245	311	-66	3	72	-69
-사진영화공재료	177	858	-681	25	119	-94
-농약·의약품	649	2,658	-2,009	47	363	-316
-비누·화장품	319	792	-473	35	192	-157
-정밀화학원료	2,173	4,488	-2,315	168	718	-550
-기타제품	378	1,278	-900	27	385	-358
고무제품	840	71	769	2,982	753	2,228
가족·모피	13	413	-400	848	1,022	-174
신발	512	12	500	467	836	-369

2. 서비스업

가. 개요

-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에 대한 유효수요 증대 및 규제의 투명화·선진화 필요
  - 한·미 FTA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및 시장확대는 유효수요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
  - 투자자-정부 분쟁해결절차(ISD) 도입 등을 통해 규제의 투명성과 선진화 기대
- 한·미 FTA는 우리가 기체결한 다른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으며, Negative List Approach를 통해 WTO/DDA 수준을 초과한 개방수준에 도달
  - 법률, 회계,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적극개방을 통한 시장 확대와 경쟁촉진 가능

- FTA를 통해 우리가 향후 외국인투자를 추가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약속(현재 유보)함으로써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투자유인을 제고

- 다만,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와 공공성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방폭과 속도를 조절
  - 방송, 통신 등의 경우 공공성, 문화정체성 등을 감안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부 개방
  - 교육, 의료 등은 추가적인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

#### 나. 업종별 영향

- 금융·법률 등 기업 지원서비스

##### 【금융】

-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기반 마련
  -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제도의 업그레이드 등으로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진출이 확대되어 고용이 증가
- 우리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영지원
  - 양국간 협의 채널을 마련하여 미국내 우리 금융기관들의 영업상 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미국 진출기회를 확대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기능은 지속 유지

##### 【법률】

- 미국 우수 법률회사의 국내지사 설립·조인트벤처 등으로 국내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 수혜 가능
- 국제 商事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동 분야는 이미 외국로펌과

국내대형 로펌과의 업무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 미국 로펌 진출시 국내변호사의 고용기회 확대도 기대
- 국내 법률회사의 대형화 등을 촉진하여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 방송·통신서비스

- 방송·통신시장 일부 개방에 따라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 및 경쟁촉진 등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 다만, 방송에서의 영화·애니메이션 제작자들에게 일부 영향 가능성

-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체계 도입은 고급인적 자원의 대미진출·교류확대와 함께 전문직 분야별 교육훈련·평가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시스템 선진화에 기여할 전망
  - 우선, 기술사·건축설계사·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향후 Working group에서 인정 범위를 확대할 예정

- 택배·운송 서비스

- 동 분야는 제조업과 직접 관련되어 향후 대미 수출증가에 따라 미국으로의 택배 및 운송서비스가 증가할 전망
  - 택배서비스는 이미 개방되어 있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 한미 FTA에서는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는 추가적인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피해는 없을 전망

### 3. 농·수산업

-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수준 피해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미 개방이 진전된 축산물의 경우 수입대체효과가 예상
  -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
  - 대두 등 곡물류, 쇠고기 등 축산물, 감귤 등 과일류와 같은 대부분의 민감품목에서 장기 이행기간 확보, 계절관세 부과 등 최대한의 민감성을 반영
    - \* 식용대두, 감자, 낙농품, 오렌지(수확기), 천연꿀 등은 현행관세를 유지(일정물량의 쿼터 제공)
  - 수산업 분야에서도 명태, 민어, 고등어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 곡물류
  - (대두·감자) 식용과 가공용으로 분리하여 식용에 대해서는 TRQ 제공 등을 통해 현행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피해 최소화 가능
- 축산물
  - (쇠고기)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차별화, 美 수입쇠고기 상당부분의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 대체 및 장기이행기간 확보 등으로 피해액 완화 기대
  - (돼지고기) 돼지고기 수입은 이미 상당히 다 변화되어 있어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액이 높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냉동삼겹살의 경우, 미국산보다 가격이 높은 칠레나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전망
      - \* 수입국 비중('02~'05 평균%) : EU(42.2), 캐나다(23.8), 미국(16.2), 칠레(10.3)
- 과일류
  - (감귤) 당초 미국 오렌지 수입증가로 피해발생이 예상되었으나, 수확기에는 계절관세를 부과하면서 현행 관세 유지

- (사과) 장기간 이행기간을 확보하여 피해 최소화

#### ■ 기타 농산물

- (채소)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장기이행기간 확보 및 셰이프가드 도입
- (치즈, 꿀) 충분한 보호조치 확보

#### ■ 명태 등 민감수산물

- 명태·민어·고등어 등의 품목도 상당 이행기간 및 TRQ 제공 등을 통해 민감성 반영

### 4. 기타 교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분야

#### ■ 정부조달

- 미측의 입찰자격심사 방식 개선 및 입찰대상 확대로 우리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약 3,400억달러) 진출 기회 확대
  - 중앙정부의 입찰 양허하한선을 인하(2억원 → 1억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입찰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정부조달 작업반(Working Group) 설치를 통해 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 \*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상 미국의 주정부(37개) 및 공기업(10개) 시장은 기개방
- 기타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를 인정

#### ■ 무역구제

- 반덤핑, 셰이프가드 등 각종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교역환경을 개선
  - i) 반덤핑 관련,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덤핑 제소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공식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ii) 조사개시 전 사전합의를 통해 조사개시 남

발을 억제

iii) 조사개시 후 수량제한 및 가격약속을 통해 조사종결 가능

- 글로벌 셰이프가드 적용배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자 셰이프가드 조치 발동시 한국을 제외시킬 여지를 확보

■ 통 관

-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로 미국 현지 통관비용\*과 시간이 절감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
  - \* 미측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에게 연 4,700만달러 수수료 면제 효과 발생
  - 원칙적으로 화물은 48시간 이내, 특급탁송의 경우 4시간 이내에 각각 국내반출 허용
- 원산지 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업계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
  - 원산지 증명서 작성·발급대상이 수출자·생산자에서 수입자까지 확대

■ 기술장벽(TBT)

- 통신기기 상호인증제 도입으로 국내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곧바로 수출이 가능
- 양국간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호 협력을 통해 여타국에 비해 대미수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
  -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TBT 위원회 구성
  - 미 주정부별로 운영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 정보통신, 전기안전분야 등에서 국내 시험 평가능력 제고 및 시험·인증기관의 선진화 기대

#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이 자료는 2007년 3월 27일 재정경제부 근로장려세제 추진기획단에서 발표한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06.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장려세제('08년 시행, '09년 근로장려금 지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집행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07. 2. 28.공포)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
- 근로장려세제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중 재산보유기준(1억원 미만)에 포함되는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규정
    - 유가증권 : 1인당 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주식·채권으로 하여 소액재산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원 입주권
      - 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 분양권 등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 「근로장려금 신청서」,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 등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식 및 증빙자료 규정
  - EITC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 범위 규정

- 자가용 운전자, 가사보조원 등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급 등은 적용 대상 소득에서 제외
- 근로소득 지급액 열람제도
  -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의 편리를 도모

## 근로장려세제 관련 참고 자료

### 1.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① 당해연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 가구
-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③ 무주택이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재산의 종류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평가 방법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부과대상의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금 및 보증금
금융재산	개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투자신탁	금융재산의 잔액
유가증권	개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주식, 채권	상장주식 : 최종시세가액 그 외 주식 및 채권 : 액면가액
골프장 회원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국세청의 기준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합원 입주권 · 분양권 · 토지상환채권 · 주택상환사채	입주권:기존건물평가액±청산금 분양권:소유기준일까지 불입금액 토지상환채권:액면가액 주택상환사채:액면가액

##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기준의 범위 (조특규칙§45의2)

### 〈시행령 개정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인 재산기준(1억원 미만)에 포함되는 재산
  -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증권의 범위(1인당 주식·채권의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상장·비상장주식 등 모든 주식)</li> <li>· 채권(국채·공채·사채 등 모든 채권)</li> </ul> </li> <li>□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원 입주권</li> <li>·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등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li> <li>·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li> </ul> </li> </ul>

### 〈개정이유〉

-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범위에 포함하여 재산을 포괄적으로 파악
- 소액 재산은 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 신고에 편의를 제공

## 3.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조특규칙 §45의5)

### 〈시행령 개정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자녀 기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li> </ul> </li> <li>· 재산 기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 대장 등본, 예금 등의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유가증권의 잔고증명서 또는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li> </ul> </li> </ul> </li> </ul>

### 〈개정이유〉

- 근로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 기준, 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청 편의를 도모

#### 4. 총급여액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조특규칙§45의4)

〈시행령 개정내용〉

-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현행	개정안
〈신설〉	□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세무관리를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

#### 〈개정이유〉

-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제외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가사보조원·자가용 운전원 등) 소득 금액의 검증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

#### 5. 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조특규칙 §45의6)

〈시행령 개정내용〉

-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받은 지급조서에 나타나 있는 근로소득 지급액을 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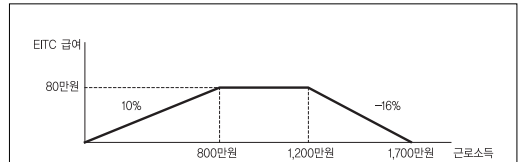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신설〉	□ 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은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함 • 신청자가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신의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편의를 도모 □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함

#### 〈개정이유〉

-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
  -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조서 내역을 근로자가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 6. 근로장려금 산정

- 가구단위 적용 :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 급여 산식

연간 근로소득	EITC 급여액
① 0~800만원	근로소득 × 10%
② 800만~1,200만원	80만원 정액 지급
③ 1,200만~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 16%

-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시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 근로소득 구간별(1만원 단위)로 정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쉽게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도록 함

※ 근로장려금 산정표 (발취)

구 분	부부합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점증구간	이상	미만	∴
	∴	∴	∴
	100만원	101만원	101천원
	101만원	102만원	102천원
	∴	∴	∴
평탄구간	800만원	1,200만원	800천원
	∴	∴	∴
점감구간	이상	미만	
	1,500만원	1,501만원	320천원
	1,501만원	1,502만원	318천원
	∴	∴	∴

- 최대 급여 : 연 80만원
- 예상 수혜가구 31만 가구, 소요예산 연 1,500억원 추정

# | 재정통계 |



■ OECD 국가의 소비세 비중 II

0%

〈표 1〉 OECD 국가의 GDP 대비 일반소비세 비중

(단위: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Canada	4.6	4.5	4.0	3.6	4.3	5.1	5.0	5.1	5.1	5.0
Mexico				2.5	2.7	3.6	2.8	3.5	3.7	3.7
United States	1.2	1.6	1.8	1.9	2.0	2.2	2.2	2.3	2.2	2.2
Australia	1.5	1.6	1.7	1.4	2.2	2.3	2.5	3.7	4.2	4.1
Japan						1.3	1.5	2.5	2.5	2.5
Korea			1.9	3.8	3.5	3.7	3.7	4.0	4.6	4.4
New Zealand	1.8	2.1	2.6	3.1	3.2	8.4	8.3	8.3	9.0	8.9
Austria	6.3	6.3	7.3	7.8	8.6	8.2	7.7	8.0	7.9	7.9
Belgium	6.6	7.2	6.4	7.0	7.0	6.9	6.7	7.3	6.9	7.1
Czech Republic							6.3	6.6	6.4	7.4
Denmark	2.7	7.2	6.6	9.6	9.4	9.5	9.4	9.5	9.6	9.7
Finland	5.6	6.1	5.7	6.2	7.3	8.5	7.9	8.3	8.7	8.6
France	8.0	8.6	8.3	8.5	8.5	7.9	7.5	7.5	7.2	7.4
Germany	5.2	5.5	5.2	6.2	5.9	5.9	6.5	6.8	6.4	6.2
Greece	2.0	3.7	3.9	3.1	4.8	7.6	7.3	8.1	8.6	8.5
Hungary							8.2	10.1	9.9	10.9
Iceland	4.4	6.0	8.6	8.6	9.3	10.0	9.9	11.4	10.1	10.8
Ireland	1.4	3.7	4.2	4.6	7.1	6.8	6.9	7.3	7.1	7.4
Italy	3.3	3.4	3.6	4.6	4.9	5.6	5.5	6.5	5.9	5.9
Luxembourg	3.4	2.5	4.0	4.1	5.0	4.9	5.2	5.6	5.6	6.0
Netherlands	4.1	5.0	5.7	6.6	6.6	6.8	6.3	6.9	7.3	7.3
Norway	6.4	8.2	8.0	7.7	7.8	7.8	8.7	8.7	8.6	8.5
Poland							6.3	7.1	7.4	7.5
Portugal		1.5	2.2	3.7	3.2	5.4	7.1	8.0	8.1	7.9
Slovak Republic								7.4	6.7	7.7
Spain	3.3	3.2	2.8	2.3	4.0	5.2	5.1	6.0	5.9	6.0
Sweden	3.6	3.9	5.0	6.3	6.7	7.8	9.3	8.9	9.2	9.2
Switzerland	1.9	1.7	2.1	2.6	2.8	3.0	3.3	4.0	3.9	4.0
Turkey	1.8	2.5	3.1	5.2	3.6	4.0	7.0	7.8	8.2	7.1
United Kingdom					6.0	6.1	6.7	6.7	7.0	7.0
OECD Total <sup>1)</sup>	3.8	4.4	4.6	5.0	5.5	5.9	6.2	6.8	6.8	6.9
OECD America <sup>1)</sup>	2.9	3.0	2.9	2.7	3.0	3.6	3.3	3.6	3.7	3.6
OECD Pacific <sup>1)</sup>	1.7	1.8	2.1	2.8	3.0	3.9	4.0	4.6	5.1	5.0
OECD Europe <sup>1)</sup>	4.1	4.8	5.2	5.8	6.2	6.7	7.0	7.6	7.5	7.7
EU 19 <sup>1)</sup>	4.1	4.7	4.9	5.7	6.3	6.9	7.0	7.5	7.5	7.7
EU 15 <sup>1)</sup>	4.1	4.7	4.9	5.7	6.3	6.9	7.0	7.4	7.4	7.5

주 : 1) 단순평균 기준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2006.

〈표 2〉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일반소비세 비중

(단위: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Canada	17.8	14.4	12.5	11.5	13.2	14.1	14.0	14.3	15.3	15.0
Mexico				15.7	15.9	20.8	16.9	18.7	19.4	19.5
United States	4.8	5.8	7.0	7.0	7.9	8.0	8.0	7.6	8.4	8.5
Australia	7.4	7.4	6.7	5.3	7.9	8.0	8.7	12.0	13.6	13.1
Japan						4.4	5.4	9.1	9.5	9.6
Korea			12.7	22.0	21.1	19.7	18.9	17.0	18.2	18.0
New Zealand	7.7	8.0	9.0	10.2	10.4	22.4	22.8	24.9	26.1	25.0
Austria	18.7	18.5	19.8	20.1	21.0	20.8	18.7	18.8	18.4	18.5
Belgium	21.1	21.2	16.3	17.0	15.8	16.5	15.4	16.3	15.4	15.8
Czech Republic							16.7	18.3	17.1	19.2
Denmark	9.1	18.8	16.9	22.3	20.1	20.5	19.3	19.3	20.1	19.9
Finland	18.5	19.3	15.6	17.3	18.3	19.3	17.4	17.4	19.4	19.6
France	23.3	25.5	23.4	21.1	20.0	18.8	17.4	16.9	16.8	17.0
Germany	16.5	17.1	14.6	16.6	15.8	16.6	17.4	18.4	17.9	17.9
Greece	10.3	16.8	18.3	13.2	17.2	26.5	23.0	21.8	23.6	24.2
Hungary							19.4	26.1	26.1	28.7
Iceland	16.7	22.0	28.6	28.9	33.0	32.3	31.7	29.8	26.7	27.9
Ireland	5.7	13.1	14.7	14.8	20.6	20.6	21.2	23.1	24.5	24.5
Italy	12.9	13.2	14.3	15.6	14.5	14.7	13.8	15.4	14.2	14.3
Luxembourg	12.4	10.6	12.1	11.6	12.8	13.9	14.0	14.3	14.7	16.0
Netherlands	12.4	14.6	14.4	15.8	16.2	16.5	15.6	17.4	19.7	19.5
Norway	21.5	23.8	20.5	18.2	18.2	18.8	21.2	20.3	20.0	19.3
Poland							17.1	22.0	21.3	21.8
Portugal		8.4	11.2	16.2	12.6	19.6	22.5	23.4	23.0	23.0
Slovak Republic								22.5	21.5	25.5
Spain	22.2	20.3	15.3	10.2	14.7	16.0	15.9	17.5	17.2	17.3
Sweden	10.4	10.3	12.0	13.4	14.0	14.9	19.4	16.7	18.4	18.2
Switzerland	10.6	8.8	8.7	10.3	10.7	11.6	12.0	13.1	13.4	13.6
Turkey					23.3	20.1	31.1	24.2	24.9	22.8
United Kingdom	5.9	6.8	8.9	14.7	15.9	16.8	19.2	18.1	19.7	19.5
OECD Total <sup>1)</sup>	13.6	14.8	14.5	15.4	16.4	17.4	17.7	18.5	18.8	19.1
OECD America <sup>1)</sup>	11.3	10.1	9.7	11.4	12.3	14.3	13.0	13.5	14.4	14.3
OECD Pacific <sup>1)</sup>	7.5	7.7	9.5	12.5	13.1	13.7	13.9	15.7	16.9	16.5
OECD Europe <sup>1)</sup>	14.6	16.1	15.9	16.5	17.6	18.7	19.1	19.6	19.8	20.2
EU 19 <sup>1)</sup>	14.2	15.6	15.2	16.0	16.6	18.1	18.0	19.1	19.4	20.0
EU 15 <sup>1)</sup>	14.2	15.6	15.2	16.0	16.6	18.1	18.0	18.3	18.9	19.0

주 : 1) 단순평균 기준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2006.

〈표 3〉 OECD 국가의 GDP 대비 특별소비세 비중

(단위: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Canada	4.3	4.1	4.3	4.0	4.2	3.7	3.5	3.0	3.2	3.2
Mexico				5.6	8.2	5.9	6.0	6.2	6.1	6.7
United States	3.7	3.2	2.6	2.2	2.1	1.9	2.1	1.9	1.8	1.8
Australia	4.7	4.4	4.9	6.0	5.8	4.4	4.2	4.4	4.2	4.1
Japan	4.6	4.1	3.1	3.6	3.3	2.2	2.2	2.2	2.2	2.1
Korea			7.1	6.8	6.1	4.9	4.3	4.6	4.5	4.3
New Zealand	4.4	4.5	3.9	3.4	3.6	3.4	3.1	2.5	2.4	2.3
Austria	6.1	6.1	5.1	3.9	4.1	3.6	3.2	3.3	3.4	3.4
Belgium	4.0	4.5	3.9	3.7	3.8	3.7	3.9	3.3	3.3	3.4
Czech Republic							4.9	4.0	3.8	3.7
Denmark	8.7	6.9	5.8	5.8	6.0	5.1	5.6	5.5	5.3	5.4
Finland	7.1	6.3	5.9	6.3	6.0	5.7	5.5	5.2	5.3	4.9
France	4.9	3.9	3.2	3.4	3.7	3.7	3.8	3.6	3.5	3.5
Germany	4.6	4.2	3.8	3.5	3.3	3.3	3.5	3.3	3.7	3.5
Greece	6.6	6.0	5.1	5.9	5.8	4.5	5.2	3.8	3.6	3.4
Hungary							8.8	5.4	4.8	4.3
Iceland	11.8	10.4	10.1	8.8	7.5	5.2	4.4	4.6	3.9	3.9
Ireland	10.8	10.3	8.5	8.8	7.6	6.6	5.7	4.4	3.5	3.5
Italy	6.2	6.0	3.5	2.9	3.1	4.0	4.5	4.1	3.7	3.9
Luxembourg	3.1	2.0	2.6	3.3	4.4	3.7	4.5	4.9	4.7	5.3
Netherlands	4.8	3.9	3.2	3.1	3.0	3.1	3.6	3.5	3.4	3.5
Norway	5.5	6.1	6.3	6.8	7.8	6.4	6.4	4.1	3.9	3.8
Poland							6.5	4.6	4.8	4.4
Portugal	6.6	6.2	5.3	6.2	7.3	6.5	5.2	4.1	4.5	4.4
Slovak Republic								4.0	3.8	3.8
Spain	2.7	2.5	1.6	2.4	3.5	3.4	3.3	3.3	3.1	3.0
Sweden	6.7	6.2	4.5	4.3	5.5	4.8	3.8	3.7	3.6	3.5
Switzerland	3.7	3.8	2.9	2.8	2.5	2.1	2.3	2.4	2.3	2.3
Turkey	5.6	6.1	6.5	4.5	1.9	1.5	1.4	5.3	7.2	7.3
United Kingdom	7.7	7.4	5.2	4.7	5.2	4.6	5.0	4.6	4.1	4.1
OECD Total <sup>1)</sup>	5.8	5.4	4.8	4.7	4.8	4.1	4.4	4.0	3.9	3.9
OECD America <sup>1)</sup>	4.0	3.6	3.5	3.9	4.9	3.8	3.9	3.7	3.7	3.9
OECD Pacific <sup>1)</sup>	4.6	4.3	4.8	5.0	4.7	3.7	3.4	3.4	3.3	3.2
OECD Europe <sup>1)</sup>	6.2	5.7	4.9	4.8	4.8	4.3	4.6	4.1	4.1	4.0
EU 19 <sup>1)</sup>	6.0	5.5	4.5	4.5	4.8	4.4	4.8	4.1	4.0	4.0
EU 15 <sup>1)</sup>	6.0	5.5	4.5	4.5	4.8	4.4	4.4	4.0	3.9	3.9

주 : 1) 단순평균 기준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2006.

〈표 4〉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소비세 비중

(단위: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Canada	16.8	13.3	13.6	13.0	13.0	10.3	9.9	8.5	9.6	9.5
Mexico				34.4	48.6	34.0	35.8	33.4	32.1	35.1
United States	15.1	11.7	10.0	8.3	8.4	7.0	7.5	6.3	7.2	7.1
Australia	22.7	20.3	19.1	22.6	20.7	15.3	14.5	14.1	13.5	13.0
Japan	25.0	20.9	15.1	14.1	12.1	7.6	8.3	8.0	8.4	8.1
Korea			47.3	39.5	37.4	25.7	21.9	19.7	17.9	17.3
New Zealand	18.5	17.2	13.8	11.2	11.7	9.2	8.6	7.5	6.9	6.6
Austria	18.0	18.0	14.0	10.1	9.9	9.0	7.8	7.7	7.9	8.1
Belgium	13.0	13.3	9.9	9.1	8.5	8.8	8.9	7.4	7.4	7.6
Czech Republic							13.0	11.0	10.2	9.7
Denmark	29.2	17.9	14.7	13.4	13.0	11.0	11.4	11.1	11.1	11.0
Finland	23.4	19.8	16.0	17.6	15.2	12.9	12.1	10.9	11.8	11.2
France	14.3	11.6	9.0	8.4	8.7	8.7	8.9	8.2	8.1	8.0
Germany	14.6	12.9	10.8	9.3	8.7	9.2	9.5	8.8	10.5	10.2
Greece	33.8	27.4	23.9	25.1	20.9	15.6	16.4	10.1	10.0	9.6
Hungary							20.9	13.8	12.7	11.3
Iceland	45.0	37.9	33.6	29.8	26.5	16.9	14.0	11.9	10.4	10.2
Ireland	43.4	36.4	29.7	28.3	22.0	20.1	17.5	13.9	12.1	11.6
Italy	24.1	23.2	14.0	9.7	9.1	10.6	11.1	9.6	8.9	9.5
Luxembourg	11.1	8.7	8.0	9.3	11.1	10.5	12.2	12.5	12.4	14.1
Netherlands	14.7	11.6	8.1	7.3	7.2	7.5	9.0	8.9	9.1	9.5
Norway	18.4	17.8	16.1	16.1	18.1	15.3	15.5	9.5	9.1	8.6
Poland							17.5	14.0	13.8	12.9
Portugal	41.5	33.8	27.0	27.2	28.7	23.4	16.3	12.1	12.9	12.9
Slovak Republic								12.0	12.2	12.6
Spain	18.4	15.5	8.7	10.5	13.0	10.5	10.3	9.6	9.1	8.8
Sweden	19.2	16.3	10.7	9.2	11.6	9.2	7.9	6.9	7.2	6.9
Switzerland	21.3	19.1	11.9	11.0	9.5	8.2	8.4	8.0	7.8	8.0
Turkey	53.4	48.8	40.9	25.2	12.4	7.3	6.0	16.4	22.0	23.4
United Kingdom	25.2	19.9	14.8	13.3	13.8	12.5	14.4	12.4	11.7	11.3
OECD Total <sup>1)</sup>	24.2	20.6	17.6	16.7	16.1	12.9	13.0	11.5	11.5	11.4
OECD America <sup>1)</sup>	16.0	12.5	11.8	18.6	23.3	17.1	17.7	16.1	16.3	17.2
OECD Pacific <sup>1)</sup>	22.1	19.5	23.8	21.8	20.5	14.4	13.3	12.3	11.7	11.2
OECD Europe <sup>1)</sup>	25.4	21.6	16.9	15.3	14.1	12.0	12.2	10.7	10.8	10.7
EU 19 <sup>1)</sup>	22.9	19.1	14.6	13.8	13.4	12.0	12.5	10.6	10.5	10.4
EU 15 <sup>1)</sup>	22.9	19.1	14.6	13.8	13.4	12.0	11.6	10.0	10.0	10.0

주 : 1) 단순평균 기준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2006.

##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 시장실패적 현상과 정부정책의 색깔

미 연방 50개 주 중 최다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경제 존중이라는 점에서 다른 주에 비해 처진다고 하면 서러워할 만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금년 초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개보험 실시를 천명하였다.

우리에게 영화 '터미네이터'로 잘 알려진 스와즈네거 주지사가 그 주인 공이다. 그는 전임 민주당계 데이비스 주지사를 주재정파탄이라는 죄목(?)을 물어 주민소환으로 물러나게 하고, 2003년 말 새로운 주지사로 선출된 공화당계 인사이다. 그런 그가 이제 12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되는 주민개보험제를 주지사 재선에 성공한 직후 첫 번째 선물보따리로 제시한 것이다.

의료개보험제는 캘리포니아주에서만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내 가장 진보적이라고 알려진 메사츄세츠주에서는 이미 작년 4월 건강

개혁법이 통과되어 금년 7월부터 발효될 계획이다. 이 법안을 주도한 인사 역시 공화당소속인 롬니 전 지사이다. 그는 이 업적을 내세워 공화당 대통령후보로서까지 나서고 있다.

#### 천정부지 의료비 해결책으로서의 개보험제 선택

벌써부터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국가건강보험(NHI: National Health Insurance)이 2008년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회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일환으로서, 약값을 통제하는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

이번 한미FTA의약품 분과 협상에서 미국이 당초 기세등등하게 요구했던 신약의 최저가보장제를 슬그머니 거두어들이는 점도 미국 내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전통적으로 시장경제를 내세우는 미국에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더욱이 클린턴 제1기 민주당

정부 하에서 당시 영부인이었던 힐러리가 의료개혁위원장으로 NHII를 제시했을 때만해도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단칼에 거부했던 바로 그 미국에서 말이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의료시장에 내재하고 있는 시장실패적인 요인 때문이다.

미국의 의료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날로 늘어나는 의료비를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간보험이 이를 메꾸고 있지만,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보험사는 보험대상자를 가려 받을 수밖에 없다. 잠재적 질병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예 보험을 받아주지 않거나, 받아 주더라도 아주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한다.

보험료가 높으니, 개인들, 특히 자영업자들은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도 최근 수년간 무보험자가 20%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바로 경제학교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전국민 개보험제라는 점은 시장경제를 사시(社是)로 하는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도 인정하고 있다.

### 시장실패 현상 치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

시장실패를 친시장적 방법만으로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비단 미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최근 수년간 우리의 부동산 시장도 시장실패적인 현상을 보여 왔다.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된 상황에서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높아져 왔지만, 아파트 신규분양 물량은 매년 감소해 왔다. 한 마디로 말해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도 는다는 시장의 수급 원리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다.

사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최근 사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합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시장에서는 금리가 높을수록 오히려 이용자가 많고 대부잔액도 많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금융시장 이용자 두 명중 한 명꼴로 연이자율로 환산하여 120%를 넘는 초고금리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러한 초고금리 자금을 아주 단기간이면 몰라도 장기간 빌려 쓴 후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업자입장에서는 조금만 연체되어도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채권추심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래도 손실이 날 경우에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 쓰는 사람에게 보다 많은 이자를 물게 함으로써 손실을 벌충하려 한다.

이러한 시장실패적 현상에 대응하여 정부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제, 공공택지 공급확대, 이자제한법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친시장적 정책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다. 심지어 정부정책에 대해 ‘색깔입히기’도 공공연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실패가 있다면 이를 치유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문제는 시장실패의 정도일 것이다. 미국에서의 의료개보험 논쟁은 시장실패적 현상이 친시장적 정책만으로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나타날 때, 그 치유방법에 ‘좌’와 ‘우’가 있을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원동(재경부 차관보)

〈국정브리핑 2007년 4월 11일자〉

### FTA 수혜자는 바로 국민이다

작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을 9회 말 타석에 들이던 4번 타자에 비유하는 글을 신문에 쓴 적이 있다. “대통령의 과거 경제성적표는 실패의 기록이다. 그에게 쇠잔해져 가는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킬 임무가 맡겨진 것이다. 국가대항전에 나가 줄곧 삼진당한 4번 타자의 풀이지만 9회 말 절체절명의 마지막 공격에서 3점 역전홈런을 친다면 사람들은 그의 과거기록을 모두 잊고 우레와 같이 환호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과연 그의 주도하에 ‘KORUS FTA’가 체결됐고 대통령에 대한 미디어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비준의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노 대통령이 내친 김에 비준절차까지 끝내고 임기를 마친다면 그는 결단과 추진력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반면 반(反) FTA집단의 비준저지 활동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들이 정문에 내건 구호는 가당찮게도 “한·미 FTA 원천무효! 이제 국민이 나섭니다”이다. 정말 우리 국민은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줄 만큼 FTA의 피해자인가. FTA는 오히려 경제활동자와 소비자를 위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 국민이 분명한 지지행동으로 스스로의 이익을 지킬 때다.

한·미 FTA 제일의 수혜자는 소비자다. 한국의 쇠고기 값은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생활필수품 20개 중 11개가 비싸기로 세계 5위 안에 든다고 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도입되면 호주산 고기 값이 내릴 것이고 40% 관세가 제거되면 그만큼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시장개방과 경쟁은 우

리 소비재가격을 내릴 뿐 아니라 그 품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서비스 값도 내리게 한다. 이것은 우리 서민생활의 고달픔과 양극화의 아픔을 덜어줄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왜 소비자단체들이 이를 반대해야 하는가.

생활비 상승은 임금인상압력, 산업경쟁력하락, 기업의 투자억감퇴, 고용축소의 악순환을 유발한다. 싼 소비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늘어나고 그만큼 서비스와 제조업의 국내수요기반이 무너진다. 작년에 129억달러에 이른 여행수지 적자는 곧 막힌 한국의 서비스산업 수준을 가리킨다. 이렇게 제 국민도 탈출하는 나라에 외국인들이 특별히 관심을 둘 이유가 있는가. 오늘날 송도의 국제도시, 물류허브, 금융허브, 기타 우리 정부가 그리는 국가설계에 얼마나 외국인이 호응하고 있는가. FTA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근로자는 FTA의 명백한 수혜자다.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에의 수출활로가 열리면 일감, 고용기회, 고용안정이 그만큼 보장될 것이다. 이 FTA를 미국의 노동자나 국내의 일부 피해산업이 반대함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대변한다는 민노당, 민노총이 반대함은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것은 이들이 지극히 무지하거나 노동자 일반보다 조직의 사익(私益)을 우선하는 집단임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농민은 FTA의 피해자이고 따라서 당연히 이를 반대한다. 그 때문에 우

리의 농업은 1992~2004년 85조원의 국민자원을 지원 받았고 2004년 이후 10년간 다시 119조원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2005년 인구의 7.1%인 우리 농민은 국내총생산에 단지 2.9%를 기여했으며 그것도 싼 세계시장이가격을 적용하면 얼마나 작아질지 모른다. 말하자면 다른 산업이 흥해야 우리 농촌의 형편도 개선될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보상을 키우기 위한 시위라면 모를까, “농업은 국방과 같은 것”이라는 논리로 FTA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는 농민과 국민 모두를 패자로 이끌 뿐이다.

한·미 FTA를 통해 우리는 무역과 투자기회를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도, 관례와 사고방식이 세계의 표준에 적응할 것을 기대한다. 바로 시민·노동자·농민, 기타 모든 활동주체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키움으로써 선진사회에 걸맞는 합리적 생각과 행동을 바라는 것이다.

김영봉(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조선일보 2007년 4월 11일자 '시론'〉

### 연금 개혁의 세가지 열쇠

지난 2일 우리는 국회에서 한편의 블랙코미디를 보았다. 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모두 부결된 상태에서 오로지 노인들의 표를 의식하여 기초노령

연금법안만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사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역전의 실마리가 제공되었듯, 이런 희극적 결과를 낳은 뒤에야 연금개혁 동력이 오히려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우리의 연금(年金) 제도를 연금(軟禁) 상태에서 진정 해금(解禁)시킬 기회가 다시 온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해금의 열쇠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연금개혁은 '표를 얻는 과정'이 아니라 '비난을 회피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연금개혁은 정부나 집권세력의 독자적 노력으로 이뤄내기는 어렵다. 오히려 비난을 분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수다. 따라서 첫번째 해금의 열쇠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복구하는 일에 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적 요소가 바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친 점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적도 상기할 만하다.

현재처럼 불안한 다수당 구조, 국회의 정책 생산 능력의 미비, 정부의 편협한 시각, 일정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수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과반수를 겨우 넘겨려는 발상은 정치공학에 물든 사고에 불과하다. 연금개혁을 표 대결을 통해 결정짓자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기존 안을 조문만 바꾸어 내놓는 구태를 그만두고 가입자 단체까지 포함된 사회적 합의의 테이블로 나와 일

치된 결론을 만들어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주어야 한다.

이때 지루하기만 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 드는 시간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안과 한나라당-민주노동당-가입자 단체 '공조안' 사이의 틈은 그리 크지 않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에 동의하였으나, 전체 노인인구 80퍼센트에게 오는 2018년까지 평균소득 10퍼센트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공조안의 내용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원조달 불가로 맞서 있다. 따라서 해금의 두번째 열쇠는 재원조달 가능성의 확보에 있다.

탄력성이 매우 떨어지는 우리 재정구조에서 기초연금의 신규재원 확보가 쉬운 일은 아니다. 결국 증세가 아니라면 연금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사실 연금기금은 가입자가 은행에 넣어둔 사적인 예금잔고가 아니라 공공의 사회기금이다. 그리고 연금급여에 대한 책임은 소멸되지 않는 한 엄정히 정부에 있다. 잘못 설계된 처음의 연금제도 때문에 연금기금은 2030년대 중반 국내총생산(GDP)의 60퍼센트 수준까지 쌓였다가 그 뒤 단 10년 만에 '잔고 제로'로 급격히 소진된다. 이로써 발생할 거시경제의 충격과 혼선은 기금고갈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다. 이것이 국채 형식으로 기금의 일부분을 기초연금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다.

마지막 하나. 사회적 대화를 조율하는 일을 담당할 주체는 정치적, 전략적 목적을 의심받아서 안 된다. 연금개혁의 성과로 정치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협상 마당으로 나올 정치집단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을 조율할 적합한 주체를 세우는 것이 연금 해금의 마지막 열쇠다.

4월은 잔인한 달이지만, 우리에게 연금개혁을 이룰 마지막 희망의 달이기도 하다.

이태수(꽃동네현대사회복지대 교수)  
〈한겨레 2007년 4월 10일자 '객원논설위원칼럼'〉

## 주택법 통과이후 과제

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이 약발을 발휘한 탓인지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 추세가 확연하다. 많게는 수억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원씩 떨어진 가격으로 급매물이 나오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부동산시장의 요즘 분위기다.

'서민들의 피땀어린 목돈을 빼앗아 배불린' 주택업계의 폭리구조를 단절시켜 내 집 마련에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자라고 외친 시민단체들의 일대 승리(?)라고 할 만하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의 수혜계층이 이들 시민단체의 지지기반이라고 믿는 일부 정치인들은 이 같은 안정을 차기총선에서 자당이나 자신의 업적이라고 거만하게 치켜내세울 전리품을 손에 쥐게 된 셈이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제공자라는 비난을 한 몸에 받던 정책당국자들도 이번 기회에 '뱀라. 집 사면 손해볼 것이라는 게 허풍이 아니지'라고 거드름을 피울 만큼 여유로워진 것 같다.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공개, 무주택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청약기회를 제공한다는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실시돼 정말 싼 값에 원하는 지역에 집이 제공된다면 집 없는 설움에 눈물짓던 국민들로서는 더 이상 바랄게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아직 안정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정도의 초강력 부동산대책들을 쏟아 부은 결과물일 뿐이고 어떤 계기가 부각되면 집값 폭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싼 값에 이른 시일 내에 많은 집을 제공하려 한다는 정부의 대책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간과된 현실적인 의문점들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의문은 민간기업들이 내놓을 고급 아파트의 수가 대폭 줄어

들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중장기적인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공급감소는 공공 부문의 공급확대로 메워질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부인한다. 하지만 연초부터 서울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수가 급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물론 정부는 강남대체 신도시 추진을 히든카드로 들고 있지만 정말 강남 수요층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지역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징벌적 부동산세제도 문제다. 국민을 협박하듯이 헌법만큼 고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부동산세제로 말미암아 부동산 거래시장을 끄꽂아 얼어붙게 만든 한편으로 조세저항의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종부세 상한선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담완화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징벌적 세금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전가돼 또 다른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

장기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번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최대수혜자인 무주택자들이 과연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의문도 갖게 된다. 20대는 취업이 안돼 돈 모을 기회도 없고 30대부터 50대까지는 자녀 교육에 소득의 대부분을 쏟아 부어야 한다. 지불해야 할 집값을 저축할 수 없다면 분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전매와 불법매매로 무주

택자들을 전과자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기우가 되기를 바라지만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

결국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는 성장해야 하고 교육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국민인식을 악으로 치부하는 접근법도 문제해결에 과연 도움이 될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저소득 계층에게 정말 싼 값의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안정망 확충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한 계층들의 욕구나 니즈도 어느 정도 허용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강남불패'라는 말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사회적 가치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같은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책당국자들에게 놓인 과제일 것이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장경제 원칙을 부동산시장에서도 복원시켜야 한다.

조희제(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장)  
〈서울경제 2007년 4월 5일자 '데스크칼럼'〉

### FTA 설득노력 체계적으로 추진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정부는 어제 소득보전직불 대상을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확대하고, 또 피해를 보는 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일부 산업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등 한·미 FTA에 따른 부작용(副作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마땅히 서둘러야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당장 급한 일이 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듯 국회 비준의 고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보면,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내부 협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최대 난관이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더 힘든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다.

한·미 간 협상은 타결(妥結)됐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협상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생활에 어떤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 헷갈려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이 자동차 관세 철폐, 쇠고기 관세의 15년에 걸친 점진적 폐지,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 등 당초 예상보다 많이 얻어냈다는 긍정론이 있는가 하면, '쌀만 지키다 미국에 끌려간 꼴'로 정부가 제시한 제조업분야 수출증대 효과도 과장됐으며 극단적으로 협상 성과를 폄하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이런 의구심부터 해소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하는 동시에, 한·미 FTA가 우리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앞으로 협상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피해를 보는 집단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태도로 이해를 구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야기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농업 등 취약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이제는 개방경제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서 FTA를 선택했다는 차원을 넘어, 협상 결과에 따른 산업별 이해 득실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다 현실성 있고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정책이 구체성을 확보하고 설득력을 가지려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들이 과연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피해보상과 함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미 FTA는 체결될 것 자체가 경제성장의 동력일 수는 없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銘心)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 FTA를 정치·사회적 이슈로 삼아 일부 시민단체와 정

치인들이 이념적·정략적으로 접근해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비준저지운동 운운하는 작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는 협상 내용을 제대로 따져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

〈한국경제 2007년 4월 4일자 '사설'〉

### 공무원연금 개혁도 시급하다

인구의 고령화하고 낮은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 장차 기금 고갈이 예상되므로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정하려던 국민연금 개혁법안은 부결되고 내년부터 300만명의 노인에게 매월 8만 9,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안만 통과시킨 이번 국회의 표결 결과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대로 갈 경우 인구의 고령화로 2036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는 기금 고갈로 재정 파탄이 예상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데 대해 국민 대다수는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기에 여러 해에 걸쳐 마련된 국민연금개혁법안이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다. 국민연금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게 됨에 따라 우리 세대는 손해를 보더라도 재정을 건전화하여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화라는 목표로부터는 더 멀어지게 됐고 오히려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으로 인해 내년에만 2조 4,000억원, 2030년에는 19조원의 추가적 재정 지출이 필요하게 됐다. 재정 지출의 염려를 없애자고 연금 개혁을 추진해 온 정부가 개혁은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막대한 재정 지출이 뒤따르는 새로운 기초노령연금법안만 졸속으로 만들게 됐으니 혹을 떼려다 혹을 덧붙인 격이 됐다. 정치권이 노인들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내용의 선심성 졸속 법안만 통과시킴으로써 개혁의 사태를 초래한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세 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세계은행은 공적연금의 개혁을 권고한 바 있다. 그 주된 내용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 60%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너무 높으므로 이를 대폭 낮추고 그에 따라 보험료도 내리는 한편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안이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됨으로써 새로 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하려면 어차피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보험료부담률과 소득 대체율을 절반 정도로 대폭 내리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세계은행이 권고하는 다층 소득보장 체계로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 사이에서는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의 부결 사태 이전에도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운용에 대한 불신 여론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새로운 국민연금개혁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전과는 달리 상당한 반대 여론이 뒤따를 것이다.

한편 급여율이 무려 76%나 되어 2002년에 이미 기금이 고갈돼 연간 1조원에 가까운 국고를 지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는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의 부결 사태와 상관없이 정부가 시급히 개혁법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30년 후 예상되는 적자를 대비한 것이므로 아직은 시간이 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을 미루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개혁법을 시급히 마련, 국회에 상정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하며 급하지도 않은 개헌 논의 등으로 국론을 분열시킬 게 아니라, 솔선하여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시행함으로써 재정

지출을 줄일 때 국민은 다시 정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권오용(변호사)

〈문화일보 2007년 4월 4일자 '포럼'〉

### 한·미 FTA 선진경제 도약 기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쇠고기 자동차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양국의 의견차가 좀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 마감시한을 두 차례나 연장하는 등 그야말로 산고(産苦) 끝의 결과물이다. 그만큼 값진 성과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야기했듯 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한·미 동맹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게 틀림없다.

물론 분야별로는 이해(利害)와 득실(得失)이 엇갈린다. 자동차 섬유 부문 등의 경우는 우리가 얻은 것이 더 많은 반면 쇠고기 농산물 서비스 분야 등에선 시장을 상당 부분 내주지 않으면 안될 처지다. 하지만 부문별 이해득실을 떠나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그 자체만으로도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 물론 위험도 따르겠지만 새로운 기회가 그만큼 많이 열릴 게 분명하다. 게다가 미국과의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앞으로 보다 많은 국가들과 FTA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확보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융틀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구축된 셈이다.

새로운 기회와 동력, 그리고 발전의 토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FTA가 그 자체로 경쟁력 향상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만큼 어떻게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할지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부가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일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일이다. 아울러 협상 이후의 후속 전략 마련에도 만전(萬全)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얻어냈다고 생각하는 업종이나 분야의 경우는 더욱 치밀하게 전략을 다듬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관세 인하 등에 만족할 게 아니라 한·미 FTA를 어떻게 기존 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위상 제고로 연결시킬 것인지 정부와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피해예상분야에 대해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어제 이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가 불가피한 업종이나 분야별로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짜여진 지원 방

안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양보를 했다고 해서 해당 업종이나 분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 장기적 차원에서 오히려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당 분야나 업계 역시 지금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한 시대임을 직시(直視)하고 정부 지원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차제에 제도 선진화의 속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글로벌 스탠더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지고 보면 이런 제도적 측면의 개선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레벨업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각종 기업규제의 혁파, 국내 기업에 대한 역사별 해소, 전투적 노사관계의 개혁과 노사 상생(相生) 기반 확충, 교육·의료·법률제도의 개혁 등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참으로 많다.

정치적으로는 국회 비준이 당면 과제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연말 대선과 맞물려 한·미 FTA를 두고도 심각한 대립과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때문에 협정 비준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얘기마저 나오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안될 말이다. 어렵사리 타결된 협상이 정치권

에 의해 물거품이 된다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실책이 되고 말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전체 국익(國益)을 생각하는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한·미 FTA를 정략적으로 악용해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선 안된다. 오히려 그런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는 일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무엇이 진정 국익을 위하는 길인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더 크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글로벌 경제 시대에 FTA 말고 달리 대안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 보기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하나하나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FTA는 한·미 FTA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한·중, 한·일 등 다른 나라와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開拓)한다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야만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다.

〈한국경제 2007년 4월 3일자 '사설'〉

# 재정포럼

2007년 4월호 통권 제130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간사 / 김응대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 월간 재정포럼

2007년 4월 16일 발행 / 제12권 제4호(통권 제130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